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64400-13700-66-43

'97 충남 새로운 출발

'97民防衛業務推進指針



忠 淸 南 道

644
13110

행정간행물발간등록번호
64400-13700-66-43

'97民防衛業務推進指針



장 서
등록번호
006887
등록일 년 월 일
충청남도행정자료실

忠 淸 南 道

目　　次

1. 民防衛 行政基盤의 鞏固化 ····· 7

1－1 民防衛 弘報活動 展開 ····· 9
1－2 民防衛 行政세미나 開催 ····· 10
1－3 民防衛隊 創設 紀念行事의 內實運營 ····· 11
1－4 民防衛 力點施策 評價 ····· 12
1－5 外國 民防衛制度 比較研修 推進 ····· 14

2. 民防衛 組織의 實用性 强化 ····· 17

2－1 民防衛資源의 合理的인 管理 ····· 19
2－2 地域單位 事態에 대한 共同收拾體系 定立 ····· 21
2－3 民防衛隊의 災難對應能力 補強 ····· 23
2－4 '98民防衛隊 編成業務의 蹉跌없는 施行 ····· 28

3. 住民申告體制의 强化 ····· 31

3－1 現實性있는 住民申告網 組織管理 ····· 33
3－2 災難申告體制로서의 住民申告網 役割確立 ····· 38
3－3 汎國家的 申告基盤 造成 ····· 39
3－4 全住民 申告生活化 雰圍氣 造成 ····· 42
3－5 戰時國民行動要領의 生活化 ····· 44

4. 民防衛教育의 實效性 提高 ····· 45

4－1 中央單位教育 ····· 48
4－2 地方單位教育 ····· 54
4－3 教育의 效果性 提高 ····· 75
4－4 教育負擔輕減 및 便宜增進 ····· 83
4－5 民防衛意識 早期定着을 위한 國民教育 弘報實施 ····· 93
4－6 報償 및 加療 ····· 96
4－7 行政事項 ····· 98

5. 民防衛訓練 內實化 運營 ····· 113

5－1 '97 民防衛訓練의 運營方向 ····· 115
5－2 訓練 內實化를 위한 前向的 施策 ····· 118
5－3 訓練分野別 推進施策 ····· 120
5－4 訓練의 實效性 提高 施策 ····· 175
5－5 行政事項 ····· 185

6. 民防衛施設·裝備 擴充 補強 ····· 191

6－1 民防衛 非常給水施設 ····· 193
6－2 民防衛 非常待避施設 ····· 196
6－3 民防衛裝備 擴充 ····· 197
6－4 民防衛 警報施設運營 管理 ····· 199

6-5 民防衛 警報施設의 擴充 및 現代化 ····· 202
6-6 民防衛 警報運營能力 培養 ····· 206

7. 化生放 防護態勢 確立 ····· 213

7-1 化生放 防護組織의 精銳化 ····· 216
7-2 防護裝備·物資普及 및 效率的 管理 ····· 221
7-3 化生放 敎育訓練의 內實化 ····· 229
7-4 化生放災難 防災對策 强化 ····· 233

8. 人力動員 態勢의 强化 ····· 241

8-1 人力資源의 完璧한 管理 ····· 243
8-2 人力動員計劃의 合理的 樹立 ····· 247
8-3 人力動員訓練의 內實化 推進 ····· 250
8-4 人力動員業務 推進力 補强 ····· 251

'97 基本施策 方向

－ '97년은 『민방위의 재도약』의 해 －

□ **民防衛隊 力量의 强化**

○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제를 보완하여 정예기동조직으로 육성

○ 민방위대 지휘체계를 재정비하여 재난수습조직으로 역할 정립

○ 안보와 안전의식을 확산하여 민방위의 생활화 도모

□ **民防衛 施設·裝備의 全面的 再整備**

○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완벽한 경보체계 구축

○ 재난예방·수습·복구를 위한 민방위대 필수장비 보강

○ 비상급수시설·대피시설의 확충 및 관리·활용 대책 강구

□ **民防衛敎育·訓練의 效率性 提高**

○ 현실성있는 교육기법의 개발로 민방위교육의 실효성 제고

○ 재난대비 전문·기술향상을 위한 실용 교육의 강화

○ 공습 및 재난대비 훈련을 강화하여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향상

□ **化生放 防護態勢의 效率性 增大**

○ 방호장비 확충보강으로 자위방호역량 강화

○ 화생방 재난예방과 주민보호대책 보강 추진

⇒ 명실상부한 『국민자위조직』, 『재난대비조직』으로 역할 정립

1. 民防衛 行政基盤의 鞏固化

1-1 民防衛 弘報活動 展開

1-2 民防衛 行政討論會 開催

1-3 民防衛隊 創設 紀念行事의 內實運營

1-4 民防衛 力點施策 評價

1-5 外國 民防衛制度 比較研修 推進

생활 속의 민방위

재난없는 밝은사회

1. 民防衛 行政基盤의 鞏固化

1－1 民防衛 弘報活動 展開

〔方　　針〕

○ 민방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의 강화

○ 시기별 매체별 중점 홍보사항을 설정, 계획적으로 홍보

〔推進計劃〕

가. 매체별 홍보계획 수립, 계획적 홍보실시

○ 지방신문, 방송사를 대상으로 홍보계획 수립 시행

- 정기 계도사항, 수시 홍보사항을 구분 실시
- 시기별 국민의 관심사항 설정 중점 계도 실시

나. 홍보 및 계도물의 정례적 발간 활동

○ 분기별 중점 민방위활동 계도자료를 제작, 활용

- 리후렛, 팜프렛, 사례집 등 제작·배포

○ 주민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간략하고 신선한 내용 포함

※ 도 발행「민방위 소식」참조

다. 지역소식지 및 교육기회의 적극 활용

○ 지역소식지에 고정적으로 계도자료 게재

○ 주민강좌, 주부교실 등 소양교육시 생활민방위 강화 실시

－ 귀순용사, 저명인사 초청 특강 병행

○ 민방위 수기, 글짓기대회 등 이벤트화 강구

1－2 民防衛 行政세미나 開催

〔方　　針〕

○ 민방위 행정의 구체적인 개선발전방안을 주제로 설정
○ 형식성을 탈피하고 실용성에 중점을 두어 운영
○ 민방위 관계기관·단체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참여 유도

〔推進計劃〕

○ 시　　기 : '97. 6월중(1일간)
○ 장　　소 : 추후 선정
○ 참　　석 : 150명 정도
　－ 민방위담당공무원, 민방위강사, 민방위대장 등
○ 주　　제 : 재난예방 및 수습을 위한 민방위의 역할
　　(읍·면·동기동대의 역할 포함)
○ 운영방법
　－ 발표와 토론을 병행하여 개선방안 도출에 중점
　－ 토론자 이외의 참여자에게도 토론 참가 기회부여 일체감 조성
　－ 주제발표 : 5개시군(천안, 논산, 연기, 서천, 예산)
　－ 토　　론 : 10개 시군(주제발표 이외 시·군)
　－ 진행시간 : 주제발표(30분), 토론(20분)
　－ 주제발표논문제출 : '97. 4월말까지

〔結果措置〕

○ 우수발표 및 토론기관 시상 및 '97 시책 평가에 반영
○ 개선발전 방안 시책반영 및 시·군에 파급 확산

1－3 民防衛隊 創設 紀念行事의 內實運營

〔方　　針〕

○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특성에 맞게 행사 추진
○ 유공자 및 우수민방위대 적극 발굴 포상 실시
○ 다양한 부대행사 및 홍보활동으로 주민의 참여의식 고취

〔推進計劃〕

가. 민방위대 창성기념일의 정부기념일화 추진

○ 총무처와 협의 '97년중 정부기념일 지정 추진 (내무부주관)

나. 민방위대 창설 제22주년 행사개최

○ 행사일자 : '97. 9. 22(월)
○ 행사주관 : 시·군
○ 행사내용
  • 기념행사 : 대통령치사, 기념사, 유공자 시상 등
  • 부대행사
    － 민방위 현장연찬회, 생활민방위 실기경연대회
    － 민방위장비 전시회 및 민방위활동 사진전
    － 유공자 민방위유적지 시찰·간담회
    － 민방위대 활동과 관련한 특강, 사례발표회 등 실시
○ 홍보활동
  • 기념홍보물 (표어, 포스터) 현상공모 확대
  • 민방위 활동상 소개 : 홍보매체, 사례집발간 등

1－4 民防衛 力點施策 評價

〔方　　針〕

○ 연중 수시 평가제를 운영하여 평가의 정확성·객관성 확보
○ 평가결과의 중간공개를 실시 시책의 보완 및 추진효과 거양
○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한 지원 및 우수공무원 표창 실시

〔推進計劃〕

○ 평가시기 : 연중 수시 평가(세부지침 별도시달)
○ 대상기관 : 16개 시·군·출장소(읍·면·동 포함)
○ 평가대상 업무 : 6개분야 20개 세부항목
※ 중점 평가대상
– 민방위시책사업의 적기 추진 여부
– 민방위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 참여 및 지원 실태
– 창의력과 열성, 책임있는 추진태세 등
○ 평가방법
• 서면평가와 현지실사 평가를 병행 운영
• 업무 분야별로 진행시기에 따라 수시 평가하되 수시평가가 부적절한 부분은 연말에 평가
• 평가결과는 분기별로 공개하여 부진분야에 대한 보완 촉구
○ 평가결과 조치
• 우수기관 포상 및 사업비 지원, 유공공무원 포상
• 문제점 및 개선사항은 시책에 반영

※ 自治團體評價
– 평가주관 : 시장·군수
– 대상기관 : 관할 읍·면·동
– 평가방법등 : 도평가계획을 준용하여 실시

民防衛 施策 評價對象 및 時期

평 가 항 목	배 점	시 기
1.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및 유지관리	300	분기 또는 반기 1회
2. 민방위교육 훈련실시 상황	200	반기 또는 분기 1회
3. 주민신고제도 운영상황	100	반기 또는 분기 1회
4. 민방위대 편성·운영상황 및 동원상황	150	반기 1회
5. 화생방방호 대책	100	반기 1회
6. 민방위 행정의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150	반기 또는 분기 1회

1－5 外國 民防衛制度 比較研修 推進

〔方　　針〕

○ 민방위의 생활화 정착을 위한 비교 견학

○ 민방공 경보망의 구성·운영체계 등에 대한 비교연구

○ 현대전의 특징인 화생방공격에 대비한 화생방 방호시설 시찰

〔推進計劃〕

가. 推進槪要

○ 주　관 : 내무부

○ 기　간 : '97. 8월중(7일정도)

○ 지　역 : 이스라엘, 터어키 등 중동 또는 영국 등 유럽

○ 인　원 : 2명 (도1, 시·군1)

○ 예　산 : 소속기관에서 전액 조치

나. 對象者 選定

○ 민방공 경보망 운영과 화생방업무 담당공무원 및 관련 과·계장으로서 민방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자

○ '96 민방위 역점시책 평가결과 우수기관 우선

다. 研修內容

○ 민방공 경보망의 구성체계, 인력, 운용방식 등 민방공경보체제

○ 화생방전에 대비한 대피시설, 보호장비, 교육·훈련상황 등 화생방 방호체계

라. 市·郡 自體計劃에 의한 比較研修

○ 시기, 기간, 지역 등 자체실정에 맞게 추진

○ 대상자는 공무원 및 민방위강사 등을 적의 선정

※ 귀국후 1월이내 귀국보고회(귀국보고서)를 개최하고 교육·훈련등 각종 기회교육 및 민방위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연수효과 극대화

2. 民防衛 組織의 實用性 强化

2-1 民防衛 資源의 合理的인 管理

2-2 地域單位 事態에 대한 共同收拾體系 定立

2-3 民防衛隊의 災難對應能力 補强

2-4 '98民防衛隊 編成業務의 蹉跌없는 施行

설마뒤에 재난있고
살핌뒤에 안전있다

2. 民防衛隊 組織의 實用性 强化

2－1 民防衛資源의 合理的인 管理

〔方　　針〕

○ 사태발생시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관리

○ 재난수습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편제 구성

〔推進計劃〕

가. 災難對備에 重點을 두는 資源管理

○ 특정 민방위자원의 재난대비 중추조직화

• 통·리대 및 직장대의 화생방분대 운영

– 시단위 지역대와 직장대에서의 화생방조직 중점 육성

• 기술지원대의 단위대 구성 운영

– 시·군 기술지원대의 활동을 보강하기 위하여

– 읍·면·동 단위에 기동활동을 전담하는 단위대 육성

○ 민방위대 자원의 체계적 관리

• 기술·기능소유여부를 확인, 기능별로 체계화하여 관리

나. 資源의 合理的 管理를 爲한 點檢體系 確立

○ 민방위자원 일일결산제 철저 운영

- 주민등록 전출입 상황과 대조하여 일과종료전 정리
  (대장비치 정리)
- 주민등록·병사업무담당자간 협조로 편성 누락 방지

○ 주민등록 말소자 관리

- 편성대상자 명부에 말소자포함 관리
  (단, 민방위대 연명부에는 별지관리)
- 편성자중 주민등록말소자는 비고란에 "○년○월○일 주민등록 말소"라고 기재한 후 담당자가 확인 날인

  ※ 재등록시에는 연명부 말미에 "○년○월○일 재등록편성"이라고 기재한 후 담당자가 확인 날인, 본인에게 소속과 임무 통지

○ 자원정리상황 확인 지도

- 현지지도(분기 1회)
  - 대원편성 적정여부, 전출·입자 정리상황
  - 직장대원 신규편성, 퇴직시 14일이내 신고여부 등
- 서류확인(반기 익월 15일까지)
  - 민방위대 편성현황 보고(규칙 제15호 서식)

    ※ 증감사유 별첨(대 및 대원 구분 작성)

2－2 地域單位 事態에 대한 共同收拾體系 定立

〔方　　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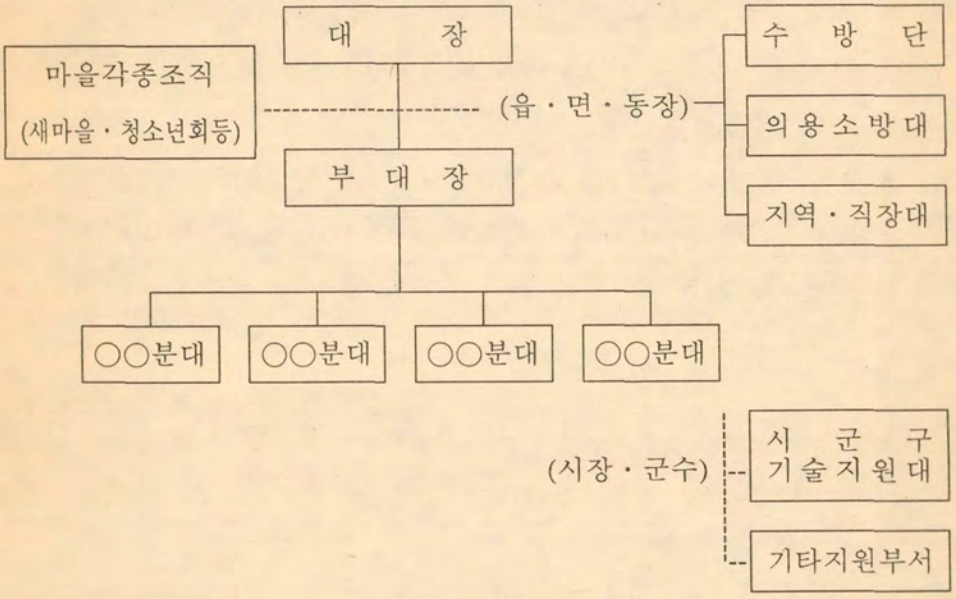
○ 통·리민방위대와 의용소방대·수방단·기술지원대간 원활한 연계체제 구성

○ 지역내 재난대비 제요소와의 공조체제 구축 및 긴밀한 협조유지

〔推進計劃〕

가. 有關組織 支援體制 活性化

○ 민방위대 조직과 지원조직의 연계운영



○ 지역방재 조직편성의 일원화

- 수방기동대와 수방단이 같이 설치된 지역 : 수방기동대중심 운영
- 수방기동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 수방단중심 운영

○ 기술지원대의 기동활동대를 지역특성에 적합하게 편성운영

(예)
- 화재위험지역은 소방활동대
- 산불취약지역은 산불방지활동대
- 화생방위험지역은 화생방활동대 등

나. 災難關聯 組織의 共同 收拾 活動時 指揮權 確立

○ 재난관련 유관조직이 함께 참여하거나 지역을 달리한 민방위대가 함께 활동할 경우 지휘체계는 다음에 의한다.

- 마을 각종 조직체, 수방단 및 자체 민방위대를 동원할 경우
  - 통·리장
- 의용소방대, 2개이상 통리지역, 직장민방위대 동원할 경우
  - 읍·면·동장
- 2개이상 읍·면·동이상 재난수습 - 시장·군수
- 2개이상 읍·면·동의 민방위대 동원 - 시장·군수
- 기술지원대, 군·예비군 참여 수습할 경우 - 시장·군수

2－3 民防衛隊의 災難對應能力 補強

〔方　　針〕

○ 실제적인 지역방재활동이 가능하도록 민방위대장 지휘력 보강

○ 민방위대 검열은 사태시 신속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주로 점검

〔推進計劃〕

가. 統·里民防衛隊長의 指揮力 補強

○ 통·리장이 아닌 자의 민방위대장 임명 활용

- 대　　상 : 65세이상 고령자 및 여자대장 임명지역으로서 현장 지휘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곳
- 방　　법 : 지역내 신망이 두텁고 현장지휘 활동능력이 우수한 자로 임명 (예 : 하사관 출신등)
- 임명권자 : 시장·군수

○ 지역대장의 지휘력보강을 위한 교육실시

- 대　　상 : 신규위촉된 통·리대장, 통·리장이 아닌 민방위 대장, 대장이 결원중인 지역대의 부대장
- 방　　법 : 시·도단위에서 분기별로 파악 일괄, 집합교육 및 종합방재훈련 우선 참관 조치
- 교육내용 : 통·리대장의 임무와 역할, 사태유형별 실기실습 훈련 및 대원 지휘통솔방법

나. 動員 및 活用機能을 補強하는 民防衛隊 編制運營

○ 통솔이 용이하도록 제대편성 운영

- 통·리대의 규모에 따라 기능별 수습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기능별 제대편성
- 산하제대는 지역여건·동원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장 및 각 단위 제대장의 지휘통솔이 용이하도록 편성

○ 민방위대원에 대한 임무통지

- 시 기 : 신규편성 완료직후('97. 1. 10까지)
- 대 상 : 제대장, 신규편성 및 전입대원, 소속·임무가 변경된 대원
- 주 관 : 읍·면·동장

다. 民防衛隊 動員能力 向上

(1) 民防衛 隊員의 非常連絡態勢 强化

○ 재난유형·지역여건에 맞도록 비상연락망의 수시 정비보완

○ 제대장급이상에게는 비상연락망 운영요령의 철저한 교육

○ 재해취약지별 사태수습요령 실습위주로 비상소집훈련 실시

- 도 시 : 주민안전지역대피, 하천, 제방점검 및 정비
- 농 촌 : 산사태위험지역, 하천, 제방점검 및 정비
- 어 촌 : 선박대피, 어구관리, 가옥결박, 정박어선의 결박

(2) 災難發生 憂慮時 能動的 動員態勢 確立

○ 예방차원의 동원기능 보강

- 매스컴 등을 통한 기상추이 파악

• 재난예고 등 기상특보의 주민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신속 전달체계 유지

○ 재해예상지역내 사전 예찰활동 강화

• 기술지원대, 기동활동대의 순찰활동의 강화

• 재해취약지 사전점검으로 대량피해확산 예방

○ 필요시 민방위대원 및 장비·물자의 사전 동원

• 사전대비에 필요한 인원의 부분동원 집행

• 사태예방을 위한 방재장비·물자의 긴급점검

(3) 災難發生時 迅速한 動員 및 事態修拾活動 展開

○ 재해영향권내 민방위대의 신속한 동원령 집행

• 동원권자는 재해유형별 민방위대 동원유형(비상, 일반, 자율참여)을 신속하게 결정시행하여 재난의 조기수습에 만전

– 풍수해등 재난발생시에는 일반동원 확대 시행

• 민방위대 동원요령(동원요건, 동원절차, 방법등)에 의거 적극적인 동원을 통한 재난수습

○ 사태발생지역에 집결, 조직적인 수습활동 전개

• 민방위기술지원대 기동활동조직

– 인명구조활동, 응급복구활동 등

• 통리민방위대조직

– 방재장비운반, 현장질서정리 등 기동활동 지원

○ 기타 효과적인 재난수습을 위한 동원활동 관련조치 강구

• 연합민방위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상호응원 및 재난 공동 대처 활동 전개

• 재난수습에 필요한 장비, 물자 등의 최대 동원
(지역방재조직 협조, 기술인력 지원등)

(4) 民防衛隊員의 動員에 따른 認識轉換을 爲한 行政措置 强化

(가) 動員行政의 合法性 維持로 應所率 向上

○ 응소자와 미응소자에 대한 사후처리의 공정성 확보

• 응 소 자 : 실비변상규정에 의한 급식등 지원 철저

• 미응소자 : 민방위기본법 벌칙 규정에 따른 처벌 확행

○ 지역여건을 감안한 동원령의 신속한 전파

• 도 시 지 역 : 전화, 사이렌 등으로 신속 전파

• 농어촌지역 : 앰프, 통신장비의 최대 활용

(나) 動員應所者에 對한 積極的인 行政支援

○ 급식, 수송 지원 및 긴급대처에 필요한 사항 최우선 조치

○ 동원관련 애로사항 해결, 표창 등 사기진작방안 마련

(다) 動員되어 任務隨行중 死傷者에 대한 事後處理 徹底

○ 국가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가료조치

○ 민방위기본법상의 재해보상금(사망·장애), 휴업보상금 지급

※ 재해보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확행

(라) 迅速·正確한 民防衛隊 動員結果 報告

○ 민방위사태 발생시 또는 우려시 즉시 보고(규칙 제40조)

○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동원과 사후복구를 위한 동원상황 보고

→ 연보 ('98. 1. 10 한)

〈보 고 서 식〉

1997.12.31. 현재

구·분 / 유형별		계					법상동원					자진참여				
		대상		동원		응소율	대상		동원		응소율	대상		동원		응소율
		대수	대원	대수	대원		대수	대원	대수	대원		대수	대원	대수	대원	
계																
풍수해(A+B)																
사전동원활동(A)	소계															
	위험지예찰															
	주민대피유도															
	시설점검															
	기타															
	소계															
사후복구활동(B)	도로·교량															
	하천·제방															
	주택·축대															
	인명구조															
	농작물피해															
	기타															
산화																
설해																
기타																

※ 기타 내역은 별지 작성

※ 보고번호 총 21-31 (즉보 및 연보)

2－4 民防衛隊 編成業務의 蹉跌없는 施行

〔方　　針〕

○ 지역특성 및 예상재난 등을 감안하여 신축성있고 기동성있게 편성

○ 재해영향권별 연합민방위대 확대구성으로 광역재난 공동대처

〔推進計劃〕

가. 整備期間 : '97. 10. 1 ~ 10. 31

※ 대통령선거 일정관계로 변경가능(추후 지침 시달)

나. 整備要領

(1) '98 新規編成對象者 職權編入

○ 신규편성대상자 명부작성 : '97. 10월중

(읍·면·동 및 직장민방위대)

- 대　　상 : 20세해당자, 예비군복무해제자(50세이하), 재심사대상자, 편성제외사유소멸자, 주민등록말소자 등
- 관련공부 : 개인별주민등록표, 예비군편성명부, 병역부, 심사제외자명부 등

○ 신규편성대상자 사실확인 : '97. 10. 1 ~ 10. 10(통·리장)

- 확인사항 : 거주사실, 직업, 학력, 자격, 기술, 편성제외 여부 등

(2) 編成除外對象者 除外 : '97. 10. 1 ~ 10. 20

〈당연제외자〉

○ 대　　상 : 경찰, 군인, 예비군, 공공직업훈련원생, 학생 및 석사과정 주간대학원생

○ 제외요령 : 본인, 소속 직장장의 신고를 받아 제외
단, 국회의원, 군인, 예비군, 의용소방대원, 현역병입영대상자, 방위소집대상자,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은 직권제외

〈심사제외자〉

○ 대　　상 : 만성허약자 및 심신장애자

○ 제외요령 : 방위협의회심의를 거쳐 제외

※ 영구제외자, 병역면제처분자, 장애인 수첩소지자는 심사불필요

(3) 支援者 編入 및 解除 : '97. 10. 1 ~10. 20

구　분	편　　입	제　　외
대　상	17세이상 남·녀 (본인의사 확인)	전출, 퇴직, 2년경과, 생업지장자
절　차	읍·면·동장(직장대장) 에게 신고	본인 신청

(4) 義務解除者 職權 整理 : '98년도 51세 자

3. 住民申告體制의 强化

3-1 現實性있는 住民申告網 組織管理

3-2 災難申告體制로서의 住民申告網 役割確立

3-3 汎國家的 申告基盤 造成

3-4 全住民 申告生活化 雰圍氣 造成

3-5 戰時國民行動要領의 生活化

한발앞선 나의신고
재해예방 초석된다.

3. 住民申告體制의 强化

3－1 現實性있는 住民申告網 組織管理

〔方　　針〕

○ 주민신고망 정비보강 및 관리체계 정형화

○ 지역재난 조기 전달체제로서의 주민신고망의 역할 강화

〔推進計劃〕

가. 住民申告網 整備體系 確立

○ 기　　간

- 정기정비 : 2회
  - 2월 (기본정비)
  - 6월 (6.25계기 집중홍보기간)
- 수시정비 : 분기 1회 이상

○ 대　　상

- 지역실정에 맞지않는 신고망과 임무에 부적절하거나 부적합한 신고원
- 신고망간 중복위촉된 신고원이나 전·출입자

나. 申告網 管理强化

(1) 地域特性에 맞는 基本申告網 構成

(가) 組織單位

○ 도시(읍이상)지역 : 반단위를 기본요소

※ 아파트지역, 공단 등 특수지역은 생활권역 단위로 구성

○ 농·어촌(면)지역 : 자연부락단위를 기본요소

※ 산간·오지·해안지역 등은 촌락단위, 농공단지 등 신규집단 시설을 추가 보강

○ 직　　장

• 직장민방위대 및 예비군편성 직장과 신고망이 필요한 직장 단위

(나) 管理責任者 中心 運營體系 誘導

○ 통·반장, 자연부락책임자, 직장장 등을 책임자로 지정하여 운영하되

○ 지역여건에 따라 책임감있는 자로 적임자를 선정하여 관리

(2) 構成目的에 맞는 特別管理網 補完

(가) 구　성 : 특별관리망의 축소·정예화

○ 대공취약지역 : 군·경에서 대공취약지로 지정한 지역만을 집중 관리

○ 집단하숙지역 : 윤락촌, 집단하숙촌, 공단 등 사회불안요소 잠재지역

※ 기존의 특별관리망에 포함되어 있는 대중이용업소 및 다중 집합장소는 고정신고원으로 통합관리

(나) 管理 및 敎育 强化

○ 관리책임 : 시장 · 군수

• 대공취약지는 군 · 경과 반드시 협의하여 확정하고 대상별로 관리카드 작성 비치활용

• 분기 1회 정기 지도 확인

○ 업소관련 부서 · 단체를 통한 교육홍보 (분기 1회 이상)

• 관련부처의 업소교육 등 기회를 활용, 주민신고 교육 · 홍보실시

(3) 業務類型에 맞는 多樣한 移動申告員 選定 管理

(가) 構成－읍 · 면 · 동 단위 (10～20명 이내)

○ 대　　상 : 지역실정과 지리에 밝은 자를 우선 선정(집배원, 전기 · 수도검침원, 외판원, 택시운전기사, 경비용역업체 종사자 도로 · 하천 · 산림감시원, 미화원 등)

○ 역　　할 : 거동수상자, 각종범죄, 민방위사태, 새생활질서 저해사범 등의 신고 및 주민계도요원

○ 위 촉 권 자 : 시장 · 군수(방위협의회 의장)

○ 관리책임자 : 읍 · 면 · 동장

(나) 管理 및 敎育强化 : 정기교육기회 운영 (분기 1회)

〈예　시〉

- 경찰서 : 자율방범대
- 한　전 : 전기검침원
- 수도과 : 검침원
- 재무과 : 운전원
- 우체국 : 집배원
- 소방서 : 의용소방대원
- 상공과 : 외판원
- 청소과 : 환경미화원

○ 사명감 부여 및 적극적 활용대책 강구

- 주민신고 홍보물, 신고요령 책자, 전단 등 우선 배포
- 신고원에 대한 표창 및 격려금 지급(자치단체별 예산확보)
- 행사지원을 통한 격려, 간담회 개최 (연1회 이상)

(4) 地域實情에 맞는 固定申告員 運營

(가) 構 成

○ 선정기준

- 교통관문지역의 업소중 지역실정에 맞게 위촉
- 범인성 위해업소를 신고원으로 위촉, 사회분위기 건전화 유도

○ 대 상 : 업소의 대표 또는 종사원(요식업소, 숙박업소, 이·미용업소, 다방, 매점, 약국, 대중집합장소, 기타 등)

○ 위촉권자 : 시장·군수 (방위협의회 의장)

○ 관리책임자 : 읍·면·동장

(나) 管理 및 敎育强化

○ 신고원에 대한 혜택부여 및 편의 지원

- 주민의견 수렴 숙원사업 우선해결
- 사소한 위반의 자체보완 유도 등

(다) 敎育弘報 强化 : 특별관리망에 준함

다. 申告員 平素管理

(1) 申告員 委囑行事 開催

○ 시 기 : 매년 3월 (추가 위촉시는 수시)

○ 수여자 : 시장·군수 직접수여 (지역방위협의회의장 명의)

○ 행사내용 : 위촉장 수여, 임무 및 활동요령교육, 표창 등

(2) 敎育·訓練 및 激勵

○ 정기교육(관련부서, 협회, 단체 등과 협조)

- 시·군 주관 : 연 2회 소집교육
- 읍·면·동 주관 : 분기 1회 소집교육
- 통·리·반장 주관 : 분기 1회 간담회

○ 기관장 서한발송 : 6.25계기 홍보기간중

○ 주민신고 모의훈련 참여 : 6.25계기 홍보기간중

(3) 活動實績 點檢

○ 망별 신고망도 및 신고원 명단 비치

- 시·군, 읍·면·동 사무실에 신고망도 비치(신고요원표시)
- 신고원명단은 읍·면·동에서 디스켓 관리

○ 개인별 활동실적 유지 및 우수사례 수시 제출

○ 신고원 행사지원 : 산업시찰, 체육대회 등

(4) 活動狀況 報告 : 연보 ('98. 1. 10 한)

3－2 災難申告體制로서의 住民申告網 役割 確立

〔方　　針〕

○ 전국민의 주민신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 유도
○ 주민신고 유관기관간 긴밀한 사전협조 및 사후관리체제 유지

〔推進計劃〕

가. 住民申告員 弘報要員化

○ 각종 주민신고 관련 홍보물 및 신고정보 우선 전파
○ 반상회 등 주민모임시 신고대상 및 요령등 교육홍보 기회제공
○ 지명수배자등 긴급 신고사항 수시 전파활동
※ 신고망 관리책임자 집에 신고망도 및 신고원명단 비치활용

나. 住民申告 對象範圍의 擴大

○ 간첩·거동수상자, 강·절도, 집단폭력 등 범죄신고
○ 각종 재난발생 위험요소 및 시민건전생활 위해요소 신고 등

다. 住民申告 事項의 事後 管理體系 維持

○ 경찰등 유관기관과 협조, 신고자비밀유지, 방문조사등의 신변보호책 강구(경찰제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 참고)
○ 행정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의 신고사항을 종합 파악관리
○ 신고 접수처리대장 비치활용 : 행정기관 및 경찰, 유관기관 등
○ 신고사항중 타기관에 이첩한 사항은 처리결과 파악관리
○ 처리결과를 신고인이 원하는 경우 통보하는 등 신고사항의 명확한 처리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우수신고사례는 사례집발간 및 각종교육자료로 활용조치

3－3 汎國民的 申告基盤 造成

〔方　　針〕

○ 대대적인 주민신고운동 전개로 신고의식의 생활화 유도

○ 신고정신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기법 개발 보급

〔推進計劃〕

가. 大大的인 住民申告運動 展開

(1) 弘報物 製作活用

○ 중　앙 : 중앙매스컴의 생활드라마를 통한 홍보물 제작·배포 (V.T.R용)

○ 시도 및 시·군 : 지역방송사, 유선방송사와 협조하여 홍보물 제작 활용(1종 이상)

(2) 地域放送매체·有關機關등을 通한對住民弘報

○ 신고요원·사회봉사단체를 활용한 신고의식 확산운동

○ 대중이용시설 안내방송 및 계도물 부착 홍보

○ 지역매스컴 유선방송토론회, 캠페인등을 통한 계도활동

나. 住民申告 敎育方法의 多樣化

(1) 機會敎育

○ 대　상 : 민방위·예비군교육, 직장단체교육, 영농·새마을교육 등

○ 방　법 : 교육주관기관과 협조, 필수과목으로 채택 유도

※ 교육에 필요한 교재, 보조자료 지원 및 강사 초빙 협조

(2) 召集教育 (반기 1회)

○ 대　상 : 특별신고망 관리책임자 및 이동·고정신고원

○ 주　관 : 시장·군수 (경찰서장 협조)

○ 방　법 : 업소별, 계층별로 실시되는 직업교육시 주민신고 교육을 포함 실시

(3) 巡廻教育 (반기 1회)

○ 대　상 : 대공취약지 주민

○ 시　기 : 시장·군수

○ 방　법 : 행정기관 주관, 군·경 역할분담 교육실시

- 행정기관 : 주민소집, 교재지원 등
- 군·경찰 : 위문공연, 대민진료, 농기구 및 가전제품수리, 장비전시, 반공·주민신고영화, V.T.R 상영 등

(4) 學校教育

○ 대　상 : 초·중·고등학교

○ 시　기 : 도덕, 국민윤리, 사회 등 교육시간 및 조회시간

○ 방　법 : 시·군(읍면동)에서 교육자료 제공

※ 귀순자의 북한실상 및 생활체험 강연회와 병행실시

(5) 民防衛 核心要員 敎育

○ 대　상 : 통·리대장, 기술지원대 기동활동대장, 직장대장, 기술지원대 분대장, 민방위담당공무원 및 교관요원

○ 주　관 : 중앙민방위교육관

○ 방　법 : 교과목에 주민신고를 필수과목으로 지정

다. 6.25契機 住民申告 弘報活動强化 期間 運營

(1) 시　　기 : '97. 6월중 (10일간)

(2) 주　　관 : 내무부, 지역방위협의회(시·도, 시·군·구, 읍·면·동)

※ 협　조 : 국가안전기획부, 교육부, 국방부, 경찰청등 유관부처

(3) 주요내용 : 주민신고 적극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홍보 시책 시행

○ 지역실정에 따라 다양하고 특색있는 각종홍보물 제작 배포 및 활용

○ 지역군·경 및 유관기관합동 주민신고 모의훈련 실시

○ 교육부와 협조하여 주민신고 표어, 포스터그리기대회 활성화

○ 기타 지역유선매체 등을 이용한 생활주변 홍보실시

3－4 全住民 申告生活化 雰圍氣 造成

〔方　　針〕

○ 신고자에 대한 포상확대로 자율적 신고활동 유도

○ 신고로 인한 생활불편해소 및 신변보호조치의 확행

〔推進計劃〕

가. 住民申告 補償制 施行 徹底

(1) 報償對象

○ 범인검거, 재난예방에 직접적 공헌이 있다고 판단되는 신고자

○ 주민신고활동이 현격한 유공업소 또는 개인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 참조 적용

(2) 報償方法

○ 신고보상금 지급(예시)

• 간첩신고보상금 (근거 : 국가보안유공자 보상금 지급규정)

－ 간첩선 : 최고 1억5천만원이내

－ 간　첩 : 1억원이내

－ 보로금 : 5백만원

• 유흥업소 심야영업신고 보상금 : 신고 1건당 3만원

○ 각종 혜택부여(예시)

• 신고에 협조적인 대중음식적, 유흥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 우수신고자 및 주민신고시책 추진 유공자에 대한 표창실시

나. 申告에 따른 不便 및 不利益 解消對策 樹立 (檢·警察廳 協助)

(1) 申告段階에서 保護對策

○ 신고자가 요청하는 장소등에 현지출장하여 신고내용 조사

○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대리청취하는 방안 강구

○ 통·반에 신고용 엽서를 배포하여 우편사서함(전국 경찰서 112호)을 통하여 신고접수

(2) 搜査段階에서 保護對策

○ 공익상 필요에 의해 신분을 공개하는 경우에도 가명으로 공개

○ 본인조사가 불가피한 경우

• 본인피해가 없도록 1차적으로 간접조사를 실시하되 가명 사용등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변안전보호

○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담당요원을 행정기관에서 지정하여 사건발생후 부터 일정기간 신고자 보호대책 강구

(3) 申告者의 身邊露出 防止 및 安全措置

○ 보도자료 작성시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히 조치

○ 신고자에 대한 인터뷰 또는 상세한 신변보도 자제

○ 경찰공무원의 직무상 취득한 신고자에 대한 비밀누설금지의무 이행 철저

○ 신고자에 대한 생명·신체위해의 염려시 신변안전조치 강구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규칙」(경찰청 제정) 적용

3－5 戰時國民行動要領의 生活化

〔方　　針〕

○ 장기적 안목으로 차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 실시
○ 전시분위기 고조로 인한 주민생활 부작용 최소화

〔推進計劃〕

가. 教育·弘報强化

○ 초·중·고 교육을 통한 조기·연계교육실시
○ 민방위학교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채택

나. 各種 會議 및 集會 活用

○ 예비군·새마을교육 등 주민 교육
○ 공무원교육 및 공공단체 직장연수 등
※ 교육자료 적극제공 : 전시국민행동요령 V.T.R 및 책자

다. 地方刊行物 등 活用弘報

○ 반상회회보, 시(군)정소식 등에 민방위 고정란 설정
○ 업무용수첩, 안보관련 간행물 등에 전문게재 유도
○ 마을회관, 공동건물, 지하대피시설 등에 행동요령 게첨

라. 事後 管理强化

○ 교육홍보 효과 측정을 위한 정기설문조사 실시 (연1회)
○ 계도홍보상황 점검 및 우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표창제도 신설

4. 民防衛敎育의 實效性 提高

4-1 中央單位敎育

4-2 地方單位敎育

4-3 敎育의 效果性 提高

4-4 敎育負擔輕減 및 便宜增進

4-5 民防衛意識 早期定着을 위한 國民敎育 弘報實施

4-6 補償 및 加療

4-7 行政事項

예방앞에 재난없고

훈련뒤에 위기없다.

4. 民防衛教育의 實效性 提高

〔目　　標〕

○ 국가안보의식 제고 및 통일대비 민방위교육의 내실화
○ 재난예방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민방위 교육으로 개편
○ 교육방식을 다양한 실기실습과 참여식·토론식 교육으로 전환

〔基本方針〕

○ 민방위교육 운영의 내실화

- 환경변화에 부응한 생활민방위 교육
  - 지역실정에 맞는 실기교육 : 재난예방등 실기교과목 개발운영
  - 생활민방위 교육내용 보강 : 응급처치(인공호흡, 소화기사용등)
- 적정 교육반 편성 운영
  - 과밀반(300명이상) 해소→반당 100명 내외로 편성(2001년까지)
  - 전용교육장 연차별 확대추진 : 5개년 기본계획수립 등
- 민방위강사의 정예화
  - 생활민방위 전문인사 발굴 신규위촉등 실기강사 재정비
  - 강사평가제 및 각종 강의정보 제공등으로 자질향상

○ 지역별(시·군) 동시 민방위보충교육 실시

- 지역별(시·군) 동시 보충교육 기간설정 운영(연 2회)
- 각 시·군에서는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로 참석율 제고

○ 주민등록말소자 민방위 재교육 실시

-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교육제외등으로 고의적인 교육회피 우려
- 41세이후 주민등록 재등록시 미이수 교육기간 추가이수 조치

4－1 中央單位敎育(民防衛敎育館)

가. 總 括 : 12개과정 3,002명

(공무원 6개과정 1,242명, 민간인 6개과정 1,760명)

교육과정		교육대상	인원	기당인원(기수)	기수	방법
			3.002	33기		
공무원과정<6>	민방위재난관리자과정	· 시도민방위(교육훈련)과·계장 · 시군구 민방위과장	160	80(2기)	3일	비합숙
	민방위실무자과정	· 시도, 시군구 6급이하 민방위담당공무원	400	80(5기)	1주	〃
	방재관리자과정	· 시도 방재담당 과·계장, 구건설국장, 시군구 건설(하수)과장	142	71(2기)	2-3일	〃
	방재실무자과정	· 시도, 시군구 6급이하 방재담당공무원	320	80(4기)	1주	〃
	재난안전실무자과정	· 시도, 시군구 6급이하	150	150(1기)	〃	〃
	민방공경보요원	· 시도, 시군구 6급이하	70	70(1기)	〃	〃
민방위요원의과정<6>	민방위소양강사강사과정	· 시군구 소양교육강사	240	120(2기)	3일	〃
	민방위실기강사강사과정	· 시군구 실기교육강사	600	100(6기)	〃	합숙
	지역민방위대장과정	· 시군구, 통리 민방위대장	300	75(4기)	〃	〃
	여성민방위대장과정	· 통리 여성민방위대장	100	100(1기)	〃	〃
	직장민방위대과정	· 직장민방위대장 및 간부	320	80(4기)	4일	비합숙
	안전관리책임자	· 재난위험시설 및	200	200(1기)	3일	〃
기타	하계청소년	· 청소년민방위학교(중·고)	300	150(2기)	3일	합숙
	1일 민방위학교	· 중·고생(충청지역)	600	600(1기)	1일	〃

나. 課程別 重點運營計劃

(1) 公務員敎育 － 6개과정 1,242명 계획

(가) 民防衛災難管理者 課程

○ 교육대상 : 시·도 민방위(교육훈련)과·계장, 시·군·구 민방위과장

○ 교육인원 : 2개기 160명 (기당 80명)

○ 교육기간 : 3일 (비합숙)

○ 교육중점

- 민방위행정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 제고
- 민방위대 요원의 정예화로 민방위사태 예방과 발생시 위기관리 능력 확충

(나) 民防衛實務者 課程

○ 교육대상 : 시·도, 시·군·구 6급이하, 민방위·화생방 담당 공무원

○ 교육인원 : 5개기 400명 (기당 80명)

○ 교육대상 : 1주 (비합숙)

○ 교육중점

- 민방위담당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
- 민방위기능의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실무능력 향상

(다) 防災管理者 課程

○ 교육대상 : 시·도 방재담당과장·방재담당계장, 시·구 건설(도시)국장, 시·군·구 건설(도시·하수)과장

○ 교육인원 : 2개기 142명 (기당 71명)

○ 교육기간 : 2~3일 (비합숙)

○ 교육중점

• 방재관리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의식 제고

• 재해예방 및 신속한 수습, 복구를 위한 지도。관리능력 확보중점

(라) 防災實務者 課程

○ 교육대상 : 시·도, 시·군·구 6급이하 방재담당공무원

○ 교육인원 : 4개기 320명 (기당 80명)

○ 교육기간 : 1주 (비합숙)

○ 교육중점

• 재해예방 및 복구계획수립 등 실무처리요령 중점

• 종합적인 방재역량 축적을 위한 전문교과 운영

(마) 災難安全實務者 課程

○ 교육대상 : 시·도, 시·군·구 6급이하 재난안전 실무운영요원

○ 교육인원 : 1개기 150명

○ 교육기간 : 1주 (비합숙)

○ 교육중점

• 재난안전실무요원의 실무능력 배양

• 전문실기·실습교육훈련을 통한 전문가 양성

(바) 民防空警報要員 課程

○ 교육대상 : 시·도, 시·군·구 6급이하 민방공경보요원운영

○ 교육인원 : 1개기 70명

○ 교육기간 : 1주 (비합숙)

○ 교육중점

• 민방공 경보요원의 정예화 및 새로운 기술의 습득

• 전문실기·실습 교육훈련을 통한 경보요원의 능력향상

(2) 民防衛要員課程 － 6개과정 1,760명 계획

(가) 民防衛 素養敎育講師 課程

○ 교육대상 : 시·군·구 민방위소양교육강사
(통일연수원 입교대상자 제외)

○ 교육인원 : 2개기 240명(기당 120명)

○ 교육기간 : 3일 (비합숙)

○ 교육중점

• 민방위소양강사로서의 자질과 능력강화를 위한 소양과목 중점

• 국가 주요시책과 연계한 민방위역할의 활성화 방안 역점교육

(나) 民防衛 實技敎育講師 課程

○ 교육대상 : 시·군·구 민방위실기교육강사

○ 교육인원 : 6개기 600명(기당 100명)

○ 교육기간 : 3일 (합숙)

○ 교육중점

• 민방위 대원교육에 필요한 기술습득 및 사태별 대응능력 제고

• 실기강사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실기·실습 위주 교육

(다) 地域民防衛隊長 課程

○ 교육대상 : 시·군·구, 통·리 민방위대장, 수방·화생방기동대장

○ 교육인원 : 5개기 300명(기당 60명)

○ 교육기간 : 3일 (합숙)

○ 교육중점

• 지역단위 민방위사태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생활민방위 실천의 선도자 육성

- 일선 지역민방위대의 사태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전문 실기·실습 훈련 집중

(라) 女性 民防衛隊長 課程

○ 교육대상 : 통·리 여성 민방위대장

○ 교육인원 : 1개기 100명

○ 교육기간 : 3일 (합숙)

○ 교육중점

- 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여성민방위대장의 지휘능력 향상
- 생활민방위의 정착 실천을 위한 지도·관리요령 중점

(마) 職場民防衛隊長 課程

○ 교육대상 : 직장민방위대장 및 간부(총무부장, 비상계획관등)

○ 교육인원 : 4개기 320명(기당 80명)

○ 교육기간 : 4일 (비합숙)

○ 교육중점

- 직장민방위대장의 지휘·통솔능력 배양
- 산업현장의 재난대비 전문기술의 습득으로 직장단위 대처능력 확보

(바) 安全管理責任者 課程

○ 교육대상 :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의 관리책임자

○ 교육인원 : 1개기 200명

○ 교육기간 : 3일 (비합숙)

○ 교육중점

-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위험시설관리자의 책임의식 제고

• 각종 재난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전문기술능력 배양

(사) 夏季青少年 民防衛學校 運營

○ 교육대상 : 중·고생 (수도권지역)

○ 교육인원 : 2개기 300명(기당 150명)

○ 교육기간 : 3일 (합숙)

○ 교육중점

• 지역단위 민방위사태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생활민방위 실천

(아) 1日 民防衛學校 運營

○ 교육대상 : 중·고생 (충청지역)

○ 교육인원 : 1일 600명

○ 교육기간 : 1일

○ 교육중점

• 생활민방위(화재, 전기, 가스등)와 관련한 실기·실습

• 수영 강습·등산·레크레이션 등

4－2 地方單位 教育

가. 教育計劃 總括

(1) 教育概要

○ 교육대상 : 민방위대 편입후 1~5년차대원
('93~'97년 민방위대 편성자)

※ 41세이상은 교육대상 제외하되, 주민등록 말소자가 재등록시 미이수 교육기간 추가이수 조치(50세까지)
: 주민등록 재등록시 시점부터 적용

○ 교육시간 : 년 8시간

- 신편대원, 일반대원 : 상·하반기 각 4시간
- 민방위대요원(기술지원대, 수방기동대 등) : 1일 8시간

○ 교육시기 : 2.1~6.30(상반기), 8.1~11.20일(하반기)

※ 11.26~12.18(23) : 선거운동기간

- 혹한기, 혹서기, 농번기, 성어기를 피하고
- 각종 선거일정, 교육대상인원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자체선정

금년은 하반기 교육기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서 (선거기간 '97.11.25~12.17)민방위 교육을 조기완료 (10월)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선거실시 전후 실시토록 교육 일정 자체 조정(민방위기본법 제21조 6항 참조)

○ 또한 2월, 8월을 초·중·고 교사, 농번기, 성어기등 정상기간 (3~6월, 9~11월)에 교육이 곤란한 대원에 대하여 자체기간 선정실시 (※ 사전 교육청과 협조)

예) 초·중·고 교사 ⇒ 봄방학 및 여름방학기간중에 교육실시

○ 교 과 목 : 실기·실습교육 위주로하되 소양교육 병행

(2) 教育方法

(가) 素養教育

○ 국가안보태세 확립과 민생안전 위주의 소양교육 실시 • 국가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인식의 전환 • 통일역량 결집의 선도 조직으로서 통일안보교육 강화

○ 교육시간 : 년 2시간(상·하반기 각 1시간)

○ 교육내용 : 상·하반기 여건과 년차별 대원수준을 고려 다양한 교과목 개발운영등 생활민방위 교육 실시

상반기 : 국가안보태세 확립(안보교육) 강화, 자연재해예방 등

하반기 :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전기안전관리, 지역특성과목 등

※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노동법개정의 의의 및 이해, 음주문화·교통안전교육 등 사회교육과 관련된 교과목의 탄력적인 운영

○ 교육방법

• 일반대원교육 : 시·군별 시범대 선정운영(강의 VTR활용등)

• 민방위대장·전문요원교육 : 각 과정별 참여의식교육 병행운영

※ 시범교육 : 지역실정에 맞게 세미나, 토론, 사례발표 등 참여식교육 운용

○ 교육강사 : 소양강사는 '96년도 위촉강사를 활용하되, 문제가 있는 강사에게 대해서는 강사평가제를 실시, 다음 위촉시 반영

(나) 實技敎育

- 지역실정에 맞는 실기실습교육을 위주로하여 재난발생시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생활민방위교육 강화
- 재난유형별 실기교과목 기본체계의 확립
- 지역·직장별 특성에 맞는 실기교과목 운영

○ 교육시간 : 년 6시간(상·하반기 각 3시간)

○ 교육내용

구 분	'97 상 반 기	'97 하 반 기
일반대원	• 자연재해예방 및 대처 • 지역특성과목 (예, 산업재해예방)	• 전기안전관리 • 지역특성과목 (예, 농기계 안전관리)
	• 지역·직장별 특성에 맞는 재해대비교과목 또는 생활민방위분야 교과목 (추가 또는 교체) – 도시지역 : 교통사고, 쓰레기 처리문제, 환경공해예방 고층건물 화재예방과 진화 등 – 농촌지역 : 집중호우, 산불방지, 농약안전관리, 농기계 수리 – 직 장 : 산업안전관리	
민방위대원 요원	• 일반대원 교과목 • 요원별 임무·역할수행에 필요한 전문교과목	

○ 교육방법 : VTR시연에 의한 대원별 실기실습 및 전문요원 시범 실습 등

○ 교육강사 : '97 실기강사 신규위촉시 분야별 권위있는 인사를 적극 발굴 활용하고 강사위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강사를 최대한 억제

○ 교육소집 : 교육훈련통지서를

[기본교육 : 교육실시일 7일전
  보충교육 : 교육실시일 48시간전] 까지 전달

나. 實技敎育의 體系的 運營

(1) 實技敎育敎材 製作活用

(가) VTR 敎材

○ 제 작

- 수량 : 4편 ('97 실기교육 4개 교과목)
- 규격 : VHS, 20분품
- 주관 : 내무부, 인천, 전북, 경북 (각 1편)

○ 활 용 : 시·군별로 복제하여 대원 실기교육시 활용

(나) 講師用 敎材

○ 내무부가 교안을 작성하여 도·시·군에 배부

○ 시·군은 복제발간하여 강사용·대원용 교재등으로 활용

(2) 實技實習場 確保

○ 기존시설·주변공지·각종 구조물 등을 실기실습에 적합토록 개수 활용

○ 전용교육장은 시설물의 부분적 개수등으로 실기실습장 확보

○ 실기교육여건이 열악한 겸용교육장은 실습여건이 우월한 다른 시설로 교체

○ 민방위교육장으로 겸용할 공공청사등을 신축할 때에는 실기실습장 확보계획을 반영

(3) 實技敎育 運營 能力 提高

○ 기존교육장별 여건을 감안한 운영방법 연구활용

○ 상·하반기 교육개시전 실기강사 교육등을 통하여 운영능력 배양 (년 2회)

○ 실기과목별 실습요목은 시·군별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적정수를 자체선정

– 과다한 실습요목 선정으로 인한 형식적 운영 지양

(4) 實技實習用 機資材 確保

○ '97 확보대상 기자재 : 붕대, 삼각건, 구명환, 소화기 등

○ 확보단위 : 시·군 교육장

○ 확 보 량 : 교육장의 수용인원·실습조 편성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군에서 충분량을 확보

〈科目別 實習組 編成基準〉

- 자연재해예방 및 대처 (상반기 1교시) : 20인 1조
- 지역특성과목 (〃 2교시) : 〃
- 전기안전관리 (하반기 1교시) : 〃
- 지역특성 과목 (〃 2교시) : 〃

〈실기·실습기자재 확보 기준〉 - 수용인원 300명 기준

구 분	기자재명	규 격	수량(개)	비고
상반기	붕 대	길이 540cm, 폭 7.5cm	30	
	삼각건	1변이 105~110cm의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른 삼각형	30	
	반창고	길이 330cm, 폭 1cm	30	
	구명환		30	
	로 프		30	
	손전등		30	
하반기	붕 대	길이 540cm, 폭 7.5cm	30	
	삼각건	1변이 105~110cm의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자른 삼각형	30	
	반창고	길이 330cm, 폭 1cm	30	
	소화기		30	

※ 실기·실습기자재는 실기교과목별로 지역별 특성 감안 충분량 확보

○ 확보시기 : 각 반기 교육개시전

○ 활용 및 관리

- 기확보된 기자재에 대한 평시관리 및 점검정비 철저
  - 관리대장비치, 정기 및 사용전 점검정비
- 각종 교육기회시 적극 활용

다. 地域單位 自律教育運營體制 確立

(1) 職場民防衛隊 自體教育委任

(가) 教育委任

○ 위임기준

- 교육대상 30명이상인 직장대
- 전년도 검열성적이 70점이상인 직장대
- 민방위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거나 전담요원이 확보된 직장대

○ 위임권자 : 시장 · 군수

- 위임시 민방위 교육위임지정서 교부 (별첨2 서식)

○ 위임시기 : 상반기 교육개시전 (1월중)

○ 위임범위 : 기본교육의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운영 전반

(나) 教育運營

○ 교육계획 및 실시결과보고 : 민방위대장→시장 · 군수

○ 교과목 및 교육방법등은 일반 직장대원 교육에 준하여 운영

— 필요시 직장별 특성에 맞는 교과목(산업안전 · 보건등) 편성

○ 교육운영상 2개 직장대 통합교육실시가 합리적인 경우에는 유사 직종을 통합하여 집합교육 실시

○ 기본교육소집은 공문서 회람 · 게시공고 · 직장방송 등을 활용하여 통지

(다) 敎育運營 指導·監督

○ 시장·군수는 교육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감독

- 실기실습기자재 자체확보, 강사운영등 중점지도
- 교육운영 우수대의 사례를 발굴하여 직능별 유사 직장대에 파급 확산

○ 교육운영 부실 직장대 : 1차 경고, 2차 위임해제

※ 상급 감독관청이 있는 직장대는 상급기관에 통보 병행

○ 교육실시상황 확인지도

- 확인관임명 : 시장·군수는 직장별로 임명
- 확인관의 임무
  - 교육계획 사전심사 및 보완
  - 교육현장에서 교육내용·교육시간 및 강사운영·출석관리 등을 책임지도
  - 직장대원 연명부. 교육운영일지등 일일결산내용을 확인 서명
  - 교육운영관련 문제점. 조치사항등 보고

※ 교육운영상황을 내무부 현지확인 시책평가에 반영

(2) 地域民防衛隊長에 대한 隊員敎育委任

(가) 敎育委任

○ 위임대상

-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의 민방위지휘자과정을 수료한 통·리대장(부대장)중 지휘통솔력과 민방위대 운영 능력이 탁월한 자
- 대해 통리민방위대가 자율교육실시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임권자 : 시장 · 군수

※ 위임시 민방위 교육위임지정서 (별첨 2서식)

○ 위임범위 : 기본교육이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운영 전반

○ 위임시기 : 정기 (1월중) 또는 수시

(나) 教育運營

○ 교육계획수립보고 : 민방위대장 → 시장 · 군수 (읍 · 면 · 동장 경유)

○ 교과운영 : 실기교육위주, 소양교육 병행

○ 강　　사 : 민방위대장이 담당

예외) · 부대장이 민방위지휘자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그 부대장이 담당

· 소양교육강사 필요시 위촉강사를 활용

○ 교육실시결과보고 : 민방위대장 → 시장 · 군수 (읍 · 면 · 동장경유)

※ 교육운영에 관한 기타사항은 일반대원 교육에 준함

(다) 教育運營 支援 및 運營狀況 指導 · 監督

○ 지도 · 감독 : 시장 · 군수

○ 원활한 교육운영을 적극 지원

- 교육장, 교육용 교재, 소양강사, 실시실습기자재등 지원
- 강사(대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위촉강사에 준하여 실비지급

○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 감독실시

- 교육계획 심사 · 승인 또는 미비점에 대한 보완지도
- 교육운영상황 확인 지도 : 확인관을 배치 · 현지지도

○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 및 조치

- 평가시기 : 수시평가(매교육종료후) 및 종합평가(년말) 실시

•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 교육운영 우수 민방위대 : 재위임

– 교육운영 부실 민방위 : 1차 경고, 2차 위임해제

(3) 地域單位 民防衛教育 研究研鑽活動 推進

○ 연구분야 :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과목 및 교육운영방법 중심

○ 연구과제 : 내무부와 협의하여 1개 과제를 자체선정

○ 연구방법 : 도(시군)별로 자체연구(필요시 전문가등에게 의뢰)

○ 연구결과활용 :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교재제작, 시도간 교환활용

라. 民防衛隊員別 教育運營

(1) 一般隊員 教育

(가) 教育主管

○ 지역민방위대 :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

○ 직장민방위대 : 시장·군수

(나) 教育時間 運營(상·하반기 각 4시간)

〈예 시〉

구 분	교육시간	교 육 방 법			비 고
		강 의	VTR	실기실습	
계	210분	50	40	120	
소양교육 (1시간)	50	50	–	–	1교시
실기교육	80	–	20	60	2교시
(3시간)	80	–	20	60	3교시

(다) 講師運營

○ 소양강사 : 덕망과 자질을 갖춘 각계의 저명인사 등을 대상으로 위촉

○ 실기강사 : 각분야의 전문적 자격소지자 및 유경험자

※ 공무원강사는 최대한 억제

(라) 敎 育 班

○ 연차별(1~5년차) 적정반 편성

• 적정표준반 평성기준 : 100명 내외(2001년 까지)

• 교육시설 감안 과밀반 우선 해소 : 300명 이상 과밀반

• 교육자원 과소지역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통합운영

– 예시 : 1~5년차 합반 또는 1~3반, 4~5년차, 분반 도서·낙도·산간·오지는 통합운영

• 교육자원 과다지역의 교육장 과밀현상 해소

– 교육운영일수 연장 : 교육대상 4만명의 경우 80일이상

– 교육장 과밀기간중에는 별도교육장 확보 및 과대교육반 분반 편성운영

※ 지역별 특성을 감안 직능별 반편성 : 대도시 및 중소도시

• 유사직종반(의사+약사). 교사. 자영자반 등으로 편성

○ 지역별 편성기준

• 대도시 : 200~300명, 중소도시 : 100~200명,
읍·면 : 50~100명

(2) 專門要員 敎育

(가) 技術支援隊

○ 교육주관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교육시기 :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선정, 1일 8시간 실시

※ 기능별(전기통신·토목건축·의료구호·화생방등)로 교육시기 조정

○ 교과목(실기)

- 분야별 기능(전기통신·토목건축등)에 맞는 교과목
- '97 민방위대원 실기교과목등

○ 교육반 편성

- 기능별 편성 : 전기·통신, 토목·건축, 의료구호, 인명구조반등
- 실습기자재 확보량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반 편성운영

○ 강 사 : 관련분야 전문가, 실기강사등 활용

(나) 水防機動隊

○ 교육주관 : 시장·군수(인명구조대 : 도지사)

○ 교육시기 : 상반기 우기전, 1일 8시간 실시

○ 교과목(실기)

- 수해취약대상지역 사전점검, 응급대책, 복구요령 등
- 수방장비사용법, 집중호우시 행동요령·인명구조요령 등

○ 강 사 : 수방전문가 활용

※ 지역실정에 따라 순회교육반 편성, 현장실습 병행

(다) 化生防分隊

○ 유독가스 방재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확대

○ 화생방 분대원 교육을 지역 군부대와 사전협의하여 위탁 또는 훈련장 활용, 실습교육 강화

※ 소집교육에 따른 사기진작조치 : 전문요원 소집교육시 가급적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식비 지급

(3) 特別敎育

(가) 民防衛隊長 敎育

○ 교육주관

- 통리대장 : 시장 · 군수
- 직장대장 : 도지사

○ 교육시기 : 상반기중 적정시기 (1일 8시간)

○ 교육소집

- 도 · 시군별 실정에 맞게 2-3개 권역으로 분할소집
- 대장참석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부대장 참석
- 비상계획부가 설치되어 있는 직장은 비상계획부장 참석

○ 교 과 목

- 소양교육, 민방위대 지휘통솔 및 운영, 민방위대 임무와 역할 등
- '97일반대원 실기교과목

○ 강 사 : 저명인사, 사계전문가, 최근 귀순용사(특강), 민방위 위촉강사, 민방위간부공무원

(나) 新編隊員 敎育

○ 교육주관 : 시장 · 군수

○ 교육대상 : '97 신편대원 (20세, 예비군의무해제자)

○ 교육시간 : 8시간 (상 · 하반기 각 4)

○ 교과목 및 교육방법

〈上半期 敎育〉

○ 교육내용

- 교육반은 지역 · 직장대로 구분 편성하되 교육인원 과소시에는

통합운영

- 교과목은 신편대원의 사명감 고취. 소양함양. 민방위제도 및 운영안내 위주로 편성

(교과목 편성 예시)

교 과 목	교 육 시 간	교 육 방 법	
		VTR	강 의
계	210분	60	150
· 민방위대원의 임무와 역할	50	—	50
· 민방위기본법 해설	50	—	50
· 민방위제도 및 통일안보	50	—	50
· 실기교육 (2과목)	60	60	—

〈下半期 敎育〉

- 일반대원으로 교육반 편성
- 일반대원과 동일한 내용·방법으로 교육실시

○ 강 사 : 민방위 간부공무원 및 위촉 민방위강사

(라) 職場民防衛 擔當要員 敎育

○ 교육주관 : 시장·군수

○ 교육대상 : 직장민방위 업무담당자

○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시기 : '97 상반기 교육개시전

○ 교 과 목 : '97 교육훈련지침, 민방위기본법 해설, 교육훈련 실무

○ 강 사 : 민방위 간부공무원

(4) 自體敎育認定者 敎育

(가) 根　據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9호 내지 제3항

(나) 對　象

○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1호 내지 9호 해당자 (9종)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과 1회 출어기간이 15일이상인 어민
  ※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년 6월이상 승선자는 편성 제외
- 주한 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육기관에서 3월이상 피교육중인 자
- 항로표시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 해안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 철도종사원(기관사 · 검차승무원 · 열차승무원 · 선로원에 한함)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 일반폐기물을 수집 · 운반 · 처리하는 환경미화요원이나 청소차운전자(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폐기물관리조례 등에 지정된 자)

○ 동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10호에 의거 내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18종)

- 각종 갱내종사자
- 징병검사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 민방위소양강사 및 실기강사
-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대원 및 공무원
- 지원 민방위대원
-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 포함)
- 차관급 또는 동급이상의 국가공무원
- 우편집배원
-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 용역경비업법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 혼혈인
-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 중학교·전수학교·고등공민학교·실업학교 학생
-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 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시범훈련 참여대원

(다) 認定節次

○ 대상자 또는 소속직장의 장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제출

- 제출시기 : 교육훈련 통지서 발부전
- 제 출 처 : 통리대원은 읍·면·동장(통리대장경유) 직장대원은 시장·군수

〈示範訓練 參與隊員〉

- 인정절차 : 훈련실시후 훈련현장에서 참석확인서를 발부하고 훈련참여자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교육이수 인정조치
  단, 훈련실시기관과 교육훈련 담당기관이 다른 대원의 경우에는 훈련실시 기관에서 해당기관에 일괄통보하여 직권 인정토록 함
- 인정내용 : 상·하반기 교육중 연1회(4시간)에 한해서 교육인정

○ 자체교육 실시

- 교육실시책임자(직장장등)는 자체계획 또는 해당 시·군 교육계획에 따라
-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년 8시간)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 교육실시확인서 제출

- 제출시기 : 년2회 (상·하반기 교육종료 즉시)
- 제출절차
  - 통리대원 : 교육실시자 → 해당 통·리대장 → 읍·면·동장
  - 직장대원 : 교육실시자 → 해당 시장·군수
- 제출서식 : 별첨 1

(라) 教育實績 記錄維持

○ 실적기록 : 직장. 선박의 업무일지등에 기록

○ 기록확인 : 교육실시책임자

(마) 教育運營 支援 및 運營狀況 指導·監督

○ 시장·군수 및 읍·면·동장은 자체교육이 성실히 실시되도록 확인지도

– 자체교육인정대상자 명부를 별도 작성 및 관리

○ 교육교재·기자재는 시장·군수의 지원하에 교육실시 책임자가 준비

○ 대상자의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자체교육실시자는 즉시 읍·면·동장(통리대원) 또는 시장·군수(직장대원)에게 신고

(5) 補充敎育

〈民防衛補充敎育 同時 實施〉

○ 민방위대원 개인사정으로 민방위교육에 불참한 대원이 지역별(시·도별) 어디에서나 보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부여

○ 지역별 동시 민방위보충교육 기간을 설정·운영함으로써 민방위대원의 편의도모 및 교육참석율 제고

○ 주 관 : 도지사·시장·군수

○ 회 수 : 2회

○ 대 상

• 1차 : 기본교육 불참자 및 교육면제 유예된 자중 그 사유가 소멸한 자

• 2차 : 1차 보충교육 불참자 및 교육면제 유예된 자중 그 사유가 소멸한 자

• 실시방법

• 1차 보충교육은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되

〈郡地域〉

– 대상인원에 따라 읍·면단위로 편성 또는 수개 읍·면을 통합 편성

- 대상인원이 과소한 때에는 인근 시·군 통합편성

〈市地域〉

- 동단위로 편성 또는 수개 동을 통합편성
- 대상인원이 과다한 때에는 보충교육 운영기간을 연장 또는 별도 교육장을 확보하여 과대 교육반을 분할운영

• 2차 보충교육은 시도별 지역실정에 맞게 동일한 날짜에 자율 실시

- 시도에서 주관, 시·군별 교육대상 파악 결정
- 중앙 및 지방언론매체를 통한 시·도별단위 홍보
- 교육대상자를 사전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제 시도권역별 실시

예) 서울은 강남·강북 또는 생활권역이 같은 시를 중심으로 2-4개권역 설정

- 도에서 주관 시·군별 교육대상 파악 결정
- 강사 및 교육장은 교육대상자 판단 선정

○ 교육운영

• 교육훈련통지서를 반드시 전달하고 수령증을 징취

- 교육훈련통지서 하단여백 또는 이면에 불참시의 과태료부과에 관한 안내문 삽입(과태료 부과대상·근거법규·부과내용등)

※ 교육장약도, 시·군·읍·면·동 전화번호 필히 기재

- 수령증은 교육불참시의 조치를 위한 증빙자료로 보관

• 교육시간은 5시간으로 운영 (소양교육을 1시간 연장)

※ 단, 교육면제. 유예된 자중 그 사유가 소멸한 자는 기본교육(4시간)만 이수

• 교육반은 기본교육에 준하여 적정반 편성운영

(6) 住民登錄抹消者 民防衛敎育

무단전출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민방위교육훈련 불참 인정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여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의 형평성과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

○ 대 상 : 민방위대원으로서 주민등록 재등록 자

○ 운영방법

•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나 교육에 불참한 자는 현행대로 40세까지 매년 과태료를 부과하고, 41세부터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는 교육연차 적용 중지(1~5년차)

– 주민등록 재등록시부터 미이수한 교육기간을 연장이수 조치

• 교육제외대상(41세이상)에 대한 예외적용 중지(단, 50세까지)

예시) 33세에 민방위에 편입 35세까지 3년차의 교육을 이수하고 36세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가 교육제외대상인 41세인해에 재등록하는 경우 교육잔여 4·5년차(2년)기간의 교육을 이수토록 함

○ 주민등록 말소자의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시행령 별지 제2-1호 서식) 기록관리 철저

○ 41세이후 재등록할 경우 미이수 교육시간에 대한 추가 이수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현 행		개 선
	41세부터 교육대상에서 제외		41세부터 교육대상 제외규정 개선
	민방위대 편입 1년차 이수		민방위대 편입 1년차 이수
	2년차 이수	⇨	2년차 이수
	3년차 이수		3년차 이수
40세	주민등록 말소		주민등록 말소
41세	교육대상제외	주민등록재등록	교 육 대 상 (불참시과태료 부과)

〈適用方法〉

① 당해년도(상·하반기) 교육시간 전부 이수할 수 있는 기간에 재등록시 : 당해년도 교육이수

② 교육시간 일부 이수할 수 있는 기간에 재등록시
(하반기중 등록) : 다음년도부터 교육이수

4－3 敎育의 效果性 提高

가. 講師運營 및 資質向上

(1) 講師運營

(가) 素養敎育講師

○ 권역별로 운영

• 도단위는 생활권이 같은 시를 중심으로 2~4개 권역을 설정 권역내 시·군이 협의 운영

－ 강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권역별 상호교환제 실시방안 강구 추진

○ 동일 강사가 동일 교육반에 연속 출강하지 않도록 도 또는 권역별 주관 시·군 순환 출강제 수립운영

• 교안내용 및 자체연구내용은 사전 협의하여 최대의 교육효과 거양

○ 위촉강사외에 특별현안과제별로 대학교수, 저명인사, 귀순용사 등으로 강사활용을 다양화

○ 강의자료 제공 및 정보제공 정례화

• 내무부등 중앙부처간행 자료 (중앙 → 도 → 시·군)

－ 민방위제도, 통일안보자료등 수시 배포되는 책자·팜프렛, VTR 테이프 등

• 중앙단위 저명인사 VTR 녹화보급 (내무부 → 도 →시·군)

－ 강의보조자료로 활용

• 지방단위 간행자료 (시·도 → 시·군)

－ 도, 시·군시책·지방단위 현안과제·각급 교육기관 및 연

• 자료대장 비치 및 기록유지

(나) 實技敎育講師

○ 강사활용 : '97년도 실기교과 4개 분야별 전문가위주로 강사를 운영하고 일반공무원은 외래강사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실기강사를 활용하되 최대한 억제

※ 실기교과 4개분야 : 자연재해예방 및 대처, 전기안전관리, 지역특성과목(2)

○ 시·군별로 자체교육계획에 의거 운영

○ 각반기 교육개시전 실기교과목에 대한 교육일정협의 등 사전교육을 반드시 실시

○ 강사별 담당교과목에 대한 전문교재를 시·군에서 구입배부

〈優秀 民防衛隊長의 實技講師 委囑活用〉

○ 위촉대상 :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 민방위지휘자과정을 수료한 통리대장으로서 지휘통솔력·교수능력 등을 갖춘 자

※ 교육평가결과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에서 도에 통보

○ 위촉권자 : 시장·군수

○ 위촉분야 : '97 실기교과 4개분야

○ 위촉기간 : '97년까지

○ 위촉방법 : 기존 실기강사와는 별도로 추가위촉

(2) 講師敎育

(가) 素養敎育講師

○ 통일연수원 교육

- 교육시기 : '97. 2월중
- 교육기간 : 3일 (비합숙)
- 교육인원 : 180명
- 교육내용 : 통일안보문제 전반

○ 중앙단위교육(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

- 교육시기 : '97. 2월중
- 교육대상 : 소양강사 240명(통일연수원교육 대상자 제외)
- 교육기간 : 3일 (비합숙)
- 교육내용 : 소양교육(민방위대의 임무와 역할,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노동법개정 의의 및 이해 등), 강의기법 토의

※ 교육종료후 연찬회, 토론회, 간담회 등 개최

(나) 實技敎育講師

○ 중앙단위교육

- 교육주관 :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
- 대　　상 : '97 실기교과목 해당강사(600명)
- 교육회수 : 6회(상·하반기 교육개시전－'97. 2월. 7월)
- 교육기간 : 3일
- 교육내용

- '97. 2월 :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강화, 상반기 실기교과목 (자연재해예방 및 대처, 지역특성과목), 교수법등 집중교육
- '97. 7월 : 국가안보 및 국가경쟁력강화, 하반기 실기교과목 (전기안전관리, 지역특성과목), 교수법등 집중교육

○ 지방단위교육

- 주　　관 : 도
- 대　　상 : 전 실기강사(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 교육이수자 제외)
- 회　　수 : 2회(상·하반기 교육실기전 각 1일)
- 교육내용 : 중앙단위 교육내용의 동일

(3) 民防衛講師 研究研鑽活動 開催

○ 주　　관 : 도

○ 대　　상 : 민방위소양강사, 실기강사

○ 시　　기 : 년중 1회 하반기 교육개시전

○ 내　　용 : 민방위제도의 발전적 운영 교과목. 교육운영기법 등에 대한 교육연찬

(4) 講師의 士氣振作

○ 간담회 개최

- 주　　관 :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 회　　수 : 년 2회 (상·하반기)
- 운　　영 : 노고치하·건의사항 청취·시범강의 실시등

○ 각종행사 참여확대 : 도, 시·군정보고회, 시군 자문위원, 민방위협의회 위원등으로 위촉활용 등

○ 강사수당 지급 : 시간당 7만원 기준 (초과시 시간당 30,000원)

※ 타권역 등 원거리 출강시 강사료외 교통비 등 실비 별도지급

○ 강사 위·해촉상황 보고 : 위·해촉 즉시

○ 민방위강사 연구연찬활동 계획보고 : '97. 3월말까지

나. 敎育場 施設擴充

- 교육효과를 높이고 대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본시설 및 편의시설과 교육기자재등을 꾸준히 확충
-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년차적으로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1개소 이상 건립토록 추진

(1) 敎育場 確保

○ 추진방향

- 전용교육장이 없는 시·군중 교육대상인원이 많은 시·군을 기준으로 년차적으로 건립 ('97년도는 논산시에 건립)
- 시지역은 상설교육장을 확보하여 임차시설 완전대체
- 시·군지역은 각종 주민교육장으로 겸용할 수 있는 시설확보
- 공공청사·회관등의 신·증축과 연계추진
-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확보하고 건축비 일부를 중앙에서 지원

※ 민방위전용교육장 확충계획 별도 시달

○ 교육장 확보기준

구 분	전용교육장	겸용교육장
대상지역	시지역	시·군지역 읍·면소재지중심
확보기준	교육대상 2만명당 1개소	1개소
규 모	1회수용 400명 정도	1회수용 100~200명 정도

○ 교육장 운영 및 관리

- 상설교육장(전용·겸용교육장 중 상설운영하는 교육장)에는 전담 운영 및 관리요원 배치
  - 운영요원 : 행정직 (교육장 점검. 피교육자 통제등)
  - 관리요원 : 기능·고용직 (기계설치·조작, 청소, 난방등)
- 지정교육장(겸용교육장중 상설운영하는 교육장)은 교육기간중 일용인부 확보

  ※ 교육대상 2만명을 초과하는 인구과밀 시지역은 1개소 추가 지정

○ 전용교육장의 활용도 제고

- 민방위교육 미실시기간중에는 영농교육 및 생활스포츠센터등 주민이용시설로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

(2) 教育 및 便宜施設 擴充

○ 대상시설

- 기본시설 : 의자·냉난방·제습·환풍·조명·차광막 등
- 편의시설 : 휴게실·공중전화·음료수대·화장실·쓰레기통 등
- 교육기자재 : VTR·TV·마이크·칠판·괘도걸이 등

○ 확보기준 : 별첨 3

○ 추진방법 : 예산과 관련된 실습장비 편의시설 확충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예산확보

(3) 弘報展示板 및 展示臺 設置

○ 홍보전시판 : 국가발전상 · 국정방향 · 각종 시책등을 홍보

※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수시 교체

○ 전시대 : 민방위장비 · 화생방장비등 전시

다. 教育紀綱 確立

(1) 教育雰圍氣 造成

○ 출석관리의 엄정

- 교육참석표 · 연명부 · 주민등록증 등에 의한 개인별 출석점검 확행
- 대리참석 · 지참 · 중도퇴장사례 등 예방철저

※ 교육 소집통지서와 주민등록증 등 본인여부 확인 철저

○ 참신하고 질서있는 교육분위기 조성

- 음주소란등 교육자세 불량자 퇴장조치
- 민방위 복장. 모자. 완장착용 권장
- 금품징수(성금 · 각종모금). 상품선전 및 판매행위 등 금지
- 핸드폰, 호출기 등 교육시는 사용자제
- 교육장 입장시 신문 · 잡지 등 지참 통제

(2) 無斷不參者 管理 徹底 : 과태료 부과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1항, 제21조 제2항, 제21조의 2, 제2항 제34조

○ 목　　적

-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행정질서벌적 제재로서
- 종전의 벌금으로 인한 범법자 양산을 지양하는 한편
-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하여 업무수행의 원할을 도모하는데 있음

○ 대　　상

- 제 2차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
  - 민방위교육훈련 불응자
  - 민방위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 및 담당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 본인이 부재중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수령후 지연 또는 미전달자

○ 부과권자 : 시장·군수

○ 시　　기 : 당해 반기교육 종료직후

○ 방　　법

- 시장·군수·출장소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10일이상의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이의가 없도록 함
-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신중을 기하고 그 경감 및 가중은 과태료부과 기준을 적용
-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고 부과된 과태료는 체납이 없도록 함

※ 과태료 부과후에는 과태료 수납부에 의거 관리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과정에서 무단전출이 확인된 때에는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개인별 주민등록 카드에 교육 미이수자로 표시관리

※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시행규칙 참조)

4－4 敎育負擔輕減 및 便宜增進

가. 敎育負擔輕減

(1) 敎育免除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2 제1항 및 제2항

○ 면제대상 및 면제되는 교육 (5종)

- 금고이상의 형의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
  : 재소중 실시되는 교육
- 3월이상 외국에 여행·체류중인 자
  : 여행·체류중 실시되는 교육
  ※ 영주권 취득시 외무부 → 거주지 도지사에게 영주권 취득사실 통보
- 재해발생 또는 발생우려시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 참여시간 상당
  － 재 해 : 화재·풍수해·산불등 자연적·인위적 재난, 각종 사고, 전염병, 적의 침공등 민방위사태
  － 활 동 : 취약지 예찰, 대피유도, 주민·교통통제, 소화, 인명구조, 의료, 응급복구, 노력지원 등
  － 참 여 : 동원에 의하여 참여한 자

- 수 방 기 동 대 : 6, 7, 8, 9월
- 산화방지기동대 : 3, 4, 10, 11월
- 설해방지기동대 : 12, 1, 2월

(연4시간 이상시 1회 4시간 인정)

• 전기·통신·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 해당 특수기능분야에 관한 교육에 대해서 면제

• 교육유예된 자로서 당해 교육계획기간 종료시까지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아니한 자 : 당해 교육

○ 절 차

• 면제신청 : 통리대원 → 읍면동장 (민방위대장 경유), 직장·기술지원대원 → 시장·군수 (민방위대장 경유)

서 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첨부서류 : 재소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사유존속증명등

※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8호 서식

• 면제여부결정 및 통지 : 읍면동장 또는 시장·군수

• 면제사유 소멸신고 : 면제신청을 한 대원이 7일이내에 신고(구두)

※ 동원에 의하여 재해예방·복구활동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직권면제

○ 해외취업자 교육면제신청절차 간소화

• 대 상

- 3월이상 해외취업중인 대원의 가족이 교육훈련면제신청을 할 때
-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면제신청서만 제출하는 경우

• 면제절차

- 읍면동장(지역대원인 경우) 또는 시장·군수(직장 대원인 경우)가 출입국관리소등 해당기관이나 소속 직장의 장으로 부터 해당사유 증빙서를 발급받아 면제조치

(2) 敎育猶豫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3조 제4항

○ 대 상

- 신체장애로 교육훈련명령에 응할수 없을때
- 관혼상제·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3월미만의 해외여행·일시수감등)가 있을때

○ 절 차

- 유예신청 : 통·리대원 → 읍·면·동장 (민방위대장 경유)
  직장·기술지원대원 → 시장·군수 (민방위대장 경유)
  - 서 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의사, 통·리장, 관계기관장이 확인 날인)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 (유예사유소멸시 재소집)
  - 해당 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교육 면제

※ 教育免除·猶豫事由消滅者 教育時間 短縮

○ 교육면제와 유예혜택을 받은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어 기본교육을 받지 못하고 보충교육을 받을시 5시간 교육이수토록 하던 것을 4시간(1시간 단축) 운영

○ 대　　상

- 교육면제자 : 형집행중에 있는 자, 3월이상 외국여행 체류중인자 등
- 교육유예자 : 신체장애, 관혼상제, 재해, 기타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교육주관 : 시장·군수

○ 교육운영

- 기본교육(4시간)이 종료한 후에는 보충교육시는 5시간으로 운영 (소양교육 1시간연장)

⇒ 단, 교육면제 유예된 자중 그 사유가 소멸한 자는 기본교육(4시간) 이수

(3) 中小企業 經濟活力回復 支援

중소기업활동의 교육훈련 부담과 애로를 덜어줌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국가경제의 활력회복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체중 생산·수출산업체로써
- 시장·군수가 당해업체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회복을 위

하여 민방위교육

- 민방위교육 훈련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 중소기업체의 구분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의 별표와 동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 참조

○ 지원사항

- 교육위임직장대는 기업활동에 부담이 없는 시기에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
- 시·군 소집교육은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은 시기를 선정하여 실시
- 교육위임직장대 및 시·군의 지정교육일자에 교육을 실시함이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게 될 경우에는 당해교육을 유예

– 유예조치대상 : 지원대상 기업체에 종사하는 지역 및 직장대원

○ 지원기간 : '97년

○ 교육유예절차

- 유예신청 : 본인·기업주 → 업체소재지 또는 대원거주지 관할 시장·군수

– 서　　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26호

– 첨부서류 : 중소기업체 및 수출산업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당해업체가 증빙자료를 첨부하거나 소재지 시장이 확인 발급)

- 유예조치 :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

나. 教育便宜 增進

(1) 常設教室運營

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교육참석율을 제고

○ 대상지역 : 시, 인구 3만이상의 읍 및 기타 필요한 지역

○ 운영주관 : 시장 · 군수

○ 운영장소 : 기존 교육장 또는 별도 교육장을 지정

○ 운영요령

- 참석예상인원을 감안하여 교실별로 적정기간을 자체설정
- 교육장 과밀방지를 위하여 운영기간을 동 또는 권역별로 분할 지정
- 동 또는 권역별 운영일정을 대원에게 사전안내
- 일일참석 예상인원을 감안하여 여유좌석 확보
- 일요교실 및 야간교실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

  – 평일 및 주간에 교육참석이 어려운 대원을 위하여 상설교실 운영기간중 적정일수를 지정 운영

(2) 現地教育

장기출타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 대　　상 : 장기출타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교육훈련통지서에 지정된 일시·장소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대원

○ 교육운영 : 현지교육 신청서 제출방법 간소화

• 현지교육훈련 신청서를 ⇒ ┌통리대원⇒체류지 읍면동장 또는 상설교실┐
　　　　　　　　　　└직장대원·기술지원대원⇒시장·군수┘

⇒ 시·군교육장에 제출

– 서　　식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 교육실시 : 체류지 읍·면·동장 등이 현지대원으로 간주하여 교육실시

○ 교육주관 : 체류지의 읍·면·동장, 시장·군수

○ 교육참석통보 : 체류지 읍·면·동장 등은 실시결과를 지체없이 거주지 읍·면·동장 등에게 통보

– 서　　식 :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거

※ 대원교육 편의조치 : 현지교유신청서는 읍·면교육장 및 시·군교육장에 비치하여 이수 즉시 당해 읍·면 및 시·군에서 처리조치

(3) 巡廻敎育

읍·면단위 지정교육장과 원거리에 있거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대원의 교육편의를 위하여 순회교육단을 편성운영

○ 대상지역

• 대원의 거주지가 읍·면단위 지정교육장에서 원거리인 지역

- 도서·낙도·산간·오지등 교통이 불편한 읍·면지역
- 교육대상이 최소교육반 편성인원이상인 지역

○ 교육주관 : 시장·군수

○ 교육운영

- 시·군에서 소양 및 실기강사, 교육용 기자재 운영요원등으로 순회교육단을 편성 운영
- 마을·도서단위 또는 인근 마을·도서를 통합하여 실시
- 지역특성에 맞는 교과목 중심으로 운영
- 강사 1인에 의한 전시간교육 또는 시청각교육만하는 사례 지양
- 이동민원실·순회진료·간염건강진단·음주문화·교통안전교육등 병행운영

(4) 生活圈單位 敎育

농어촌지역 대원의 편의를 위하여 교육참석에 편리한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교육장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대상지역

- 지정된 교육장이 원거리이거나 교통이 불편하여 행정구역이 다른 인근 지역의 교육장에서 교육받는 것이 편리한 지역
  - 예시 : 시지역과 인접한 읍·면지역, 읍지역의 인근 면지역

○ 교육운영

〈인근 시교육장 참석〉

- 도에서 대상지역을 지정 및 운영계획 수립시달
- 교육장 관할 시장은 운영일정을 수립하여 거주지 읍·면·동장

에게 통보

- 거주지 읍·면·동장은 인근 시의 교육일정을 대원에게 안내

〈인근 읍·면교육장 참석〉

- 군에서 대상지역을 지정 및 운영계획 수립시달
- 거주지 읍·면장은 인근 읍·면교육장의 교육일정을 대원에게 안내

○ 교육참석 및 통보

- 대원은 교육받고자 하는 인근 행정구역 교육장에서 교육신청 및 참석
- 교육을 실시한 시장·군수(읍·면·동장)는 대원관할 읍·면·동장에게 교육참석을 통보

(5) 民防衛就業銀行 運營

기업체등으로 부터 구인정보를 수집하여 민방위대원에게 취업을 알선함으로써 민방위교육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함

○ 대상지역 : 인구 20만이상 시지역 및 국가. 지방공단이 있는 지역

○ 운영요령

- 취업창구 설치 : 교육장, 시·군 민방위재난관리과, 읍·면·동사무소
- 구인정보 수집 : 시장·군수가 노동부 지방사무소, 관내 기업체등에 협조서한 발송
- 구인정보 안내 : 구인정보 안내판 설치, 취업안내서 유인 배부
- 구직신청 접수 및 취업알선 : 시장·군수가 적극 추진

(6) 隊員民願處理

○ 대상민원 : 각종 민원증명 발급, 고충해결

○ 민원처리

- 민원증명발급등은 교육개시전 접수하여 가급적 교육시간내 처리
- 장기소요민원은 민원실에 이관
- 대원의 고충사항 적극 해결

다. 行政事項

○ 교육편의 증진시책 홍보

- 각종 대중매체 활용(지방신문 · TV · 라디오 · 유선방송 등)
- 민방위교육장, 읍 · 면 · 동사무소등에 게시
- 교육훈련통지서 전달시 상설교실 운영, 현지교육제도등에 대한 안내 유인물을 첨부하여 배부
- 각종 교재, 교육안내용 유인물등에 수록배포

○ 민방위교육장에 편의시책 이용서식 비치

- 교육훈련신청서(현지교육. 생활권단위 교육등), 구직신청서, 각종 민원신청서 등
- 구인 · 구직정보접수대장, 민원접수처리대장, 고충상담기록부등

4－5 民防衛意識 早期定着을 위한 國民教育·弘報 實施

가. 青少年 生活民防衛教育 運營

○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여 일상재난대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사회 공동체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생활민방위 확산·정착

○ 학생민방위교육을 담당 실시한 교사는 당해 민방위교육 대상에서 제외

○ 교육실시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상재난 및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위주

○ 주　　관 : 시·군

○ 교육회수 : 년간 4회 (상·하반기 각 2회)

※ 학교실정에 따라 필요시 반기 1회로 통합실시

○ 교육시간 : 매회 30분내외 (통합실시할 경우는 50분)

○ 교육내용 : 화재·풍수해·물놀이·등반·교통사고·마약퇴치 등 일상재난 및 사고발생시 대처요령 등

○ 교육운영

• 교재는 VTR·만화·팜플렛등을 활용

－ VTR교재 : 기제작된 민방위교육용 교재를 시·군에서 관내 학교에 복제배부 또는 일정기간 대여

－ 만화·팜프렛내무부가 제작(2면내외), 시·군에서 발간배포

• 각 학교는 교내 VTR교육시설을 활용하여 실정에 맞게 자율적

으로 실시

- 예시 : 전교생 일제교육, 학년·학급별 교육등

※ 소화기·완강기·방독면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에서 지원

• 학생 민방위교육 담당교사의 교육대상 제외

- 학생교육을 매반기 2회(통합실시한 경우는 1회)담당 실시한 교사는 당해반기 민방위 교육대상에서 제외

나. 民防衛教材를 活用한 國民教育 實施

○ 주　　관 : 시·군

○ 활용교재 : 민방위대원 교육용 VTR교재

○ 실시방법

• VTR교재를 민방위대원 교육실시후 직장·각종 사회단체·다중집합 장소등에 제공(대여)

• 소속직장·단체원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교육. 홍보실시 권장

• 역·터미널대합실 등 다중집합장소에 VTR 상영·홍보

다. 家庭災難對備를 위한 女性生活 民防衛教室 運營

○ 주　　관 : 시·군

○ 활용교재 : 민방위대원 교육용 VTR중 생활재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재

○ 실시방법

•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기간에 교육운영

• 여성통장, 부녀회장, 여반장 및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역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VTR상영·홍보

• 민방위교육장, 집단거주지역 공간활용(노인정, 복지회관등)

라. 地域特性 施策推進

○ 주　　관 : 도지사, 시장·군수

○ 시책분야 : 교육운영전반에 관하여 대원의 관심과 호응을 유발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시책

○ 시책추진 : 시범운영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 측정

○ 평가활용 : 우수시책을 파급확산하고 '97 역점시책평가에 반영

4－6 補償 및 加療

가. 国家有功者등禮遇및支援에관한法律에 의한 報償 및 加療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4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 대　　상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
- 상이자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

※ 등외판정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하여 가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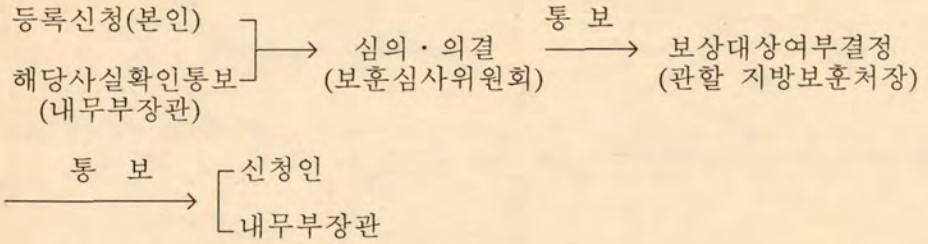
○ 보상 및 가료방법

- 보　　상 : 년금, 가료・보철구등 수당, 사망일시금 지급등
- 가　　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 비용부담 :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의 가료는 일부 국가부담)

○ 시　　기 :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 절　　차



나. 民防衛基本法에 의한 報償 및 加療

(1) 報　　償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의 2

○ 대　　상 :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중 또는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

○ 보상금의 종류

- 재해보상금 :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때
- 휴업보상금 : 가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때

(2) 加　　療

○ 근　　거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

○ 대　　상 :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중 상이를 입은 자

○ 의료시설 :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 부득이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이나 국가 또는 군 의료시설을 지정가능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국가·지방자치단체·군 의료시설외에서의 응급 가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7일이내에서 가능

○ 가료비부담 : 지방자치단체 (전부 또는 일부의 국가보조가능)

4－7 行政事項

가. 教育計劃 樹立報告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 내　　용

- 당해년도 교육목표 및 기본방침
- 교육시간 및 교과목
- 교육대상별 세부추진계획
  - 교육일정 · 교육장　확보(별첨4　서식) · 교육반편성 · 교육방법 · 강사운영등
- 실기교육운영계획
- 교재제작활용계획
- 교육편의시책추진
- 민방위대장에 대한 교육위임
- 교육시설 확충 개선등

○ 보　　고 : 각반기 교육개시전 (1월 및 8월)

나. 教育資員連名簿 作成

○ 민방위대원연명부를 대별 · 연령별로 작성 활용

- 서　식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별치 제19호
- 대　별 : 통리대 · 직장대 · 기술지원대 · 화생방분대 · 수방기동대 등
- 연령별 : 1.2.3.4.5년차, 6년차이상

○ 교육자원현황 보고

- 작성기준 : '97. 1. 1 및 6. 30 현재
- 서　　식 : 별첨 5
- 보　　고 : 년간교육계획 및 하반기 교육계획 보고시 (2회)

다. 出席管理

(1) 出席確認

○ 시　　기 : 매 교육개시전 및 종료시

○ 확 인 자

- 지역대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직장·기술지원대등 : 시·군 담당공무원

○ 확인방법 : 교육훈련통지서. 주민등록증등에 의거 확인

○ 확인사항 : 본인여부, 참석여부, 지참·조퇴등

(2) 出席狀況 整理

○ 연명부 : 출석확인자가 정리

- 반기별 해당란에 참석일자 기록 날인
- 교육면제·유예자는 그 사유를 주서

○ 개인별 주민등록표 : 읍·면·동 교육훈련담당공무원이 정리

- 교육년도, 교육구분, 참석여부등을 기록 날인

○ 교육면제·유예자 및 불참자 명부 작성

(3) 出席管理狀況 確認

○ 확인자

- 지역대 : 읍·면·동장
- 직장 및 기술지원대등 : 시장·군수

○ 확인방법 : 연명부에 의거 확인

라. 轉出入管理

○ 전출자관리

- 거주지 읍·면·동장은 대원연명부와 개인별 주민등록표(민방위란)의 출석상황을 대조한 후 선거주지에 이송

○ 전입자관리

- 읍·면·동장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대원연명부 작성
- 교육참석자, 교육대상자, 보충교육대상자, 면제자, 유예자, 고발대상자 등으로 구분하여 별도명부 작성

마. 教育運營(監督) 日誌備置 및 記錄維持

○ 비치장소 : 시·군 교육장 및 읍·면·동

○ 서　　식 : 별첨 6 및 별첨 7

○ 기록내용 : 출석상황, 교육시간, 교육내용, 강사, 특기사항 등

○ 활　　용 : 교육상황을 분석·평가하여 차기교육계획 수립시 자료로 활용

바. 教育準備推進狀況 指導

○ 주　　관 : 도

○ 시　　기 : '97. 2월중

○ 내　　용 : 교육추진계획수립 및 교육운영준비상황 전반

○ 지도요령

- 도 간부급 및 교육관계공무원으로 편성

- 교육개선 발전시책 추진상황 중점점검
- 기관장 관심촉구, 문제점 발굴·개선 등

사. 教育推進實績 및 決算報告

○ 월중교육추진실적보고 : 다음달 2일한
○ 반기별 교육결산보고 : '97. 7. 10 및 '98. 1. 10한
○ 내　　용 : 교육실시결과, 문제점 및 발전방안 (기록사진 등)

아. 民防衛教育訓練評價討論會 開催

○ 주　　관 : 내무부
○ 대　　상 : 도, 시·군 민방위담당공무원, 민방위대장
○ 시　　기 : '97. 9월중 (년중 1회)
○ 내　　용 : 민방위 교육훈련지침 개선방안 주제발표, 수범사례, 개선·건의사항 발표, 종합토론 등

자. 民防衛教育教材編纂委員會 構成·運營

○ 구　　성 : 내무부
○ 위　　원 : 5명 내외
- 공무원(2) : 민방위담당공무원 및 민방위교관
- 전문가(3) : 관련분야 교수 등 전문가

○ 운　　영 : 연 2회(상·하반기)
○ 활동내용
- 민방위교육용 VTR교재 심의자문
- 민방위교육훈련 교재발간

• 주요재난사례집 발간

– 성수대교, 대구도시가스사고,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등 사고원인 수습과정과 교훈 등

• 국민교육 홍보자료 발간 등

차. 民防衛敎育擔當者 巡廻敎育

○ 주　　관 : 내무부

○ 교육대상 : 시·도, 시·군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 교육내용 : 교육관계법령, '97 민방위교육훈련 추진지침 등

○ 교육일정 : '97. 2월중

○ 교　　관 : 교육훈련과장 등

〈별첨1〉

자 체 교 육 실 시 확 인 서

①성 명	②주 민 등록번호	③주 소	④소 속	⑤교 육 훈련과목	⑥교 육 훈련일시	⑦비 고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훈련을 실시하였기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 ○ (선장, 기타 기관명) (인)

귀 하

〈별첨1-1〉

훈 련 참 석 확 인 서

성 명	주 민 등록번호	주 소	소 속	훈련내용		비 고
				일시·장소	종 목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민방위의날 시범훈련에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시장·군수, 읍·면·동장 및 직장민방위대장)

〈별첨2〉

민방위교육위임지정서

제　　호

대 명

소재지

위 민방위대는 자체운영능력이 우수하여 교육위임 민방위대로 지정함

19　　년　　월　　일

○ ○ 시장·군수　　(인)

〈별첨3〉

시설 및 기자재확보기준

인/개

구 분	시설·기자재명	기 준
기본시설 (6종)	냉난방	자하대피호
	제습	〃
	환풍	〃
	의자	300개
	조명	필요시
	차광막	〃
편의시설 (6종)	휴게실	—
	휴지통	50/1
	화장실	50/1
	음료수대	150/1
	재떨이	150/1
	공중전화	100/1
교육기자재 (7종)	V T R	300/2
	TV수상기	50/1
	흑판	300/1
	마이크	300/3
	확성기	50/1
	VTR테이프	—
	괘도걸이	300/2

〈별첨4〉

민 방 위 교 육 장 확 보 현 황

유 형	확 보	유 형	확 보
계	개소		개소
○ 전용교육장		○ 겸용교육장 • 공공대피소 • 시(군)민회관 • 시(군)청사 – 회의실 – 지하대피소 • 읍면동사무소 • 학 교 • 마을회관 • 복지회관 • 예비군교육장 • 극 장 • •	

※ 겸용교육장은 실제 활용중인 시설 유형별로 열거

〈별첨5〉

교 육 자 원 현 황

년 월 일 현재

구분 / 대별			편성 인원	6년차 이상	교육 면제	자체 교육 인정	소 집 교 육 대 상						
							소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민방위 대장등
총 계													
일반대원	소 계												
	통리대	소 계											
		시지역											
		군지역											
	직장대	소 계											
		시지역											
		군지역											
전문요원	소 계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수방기동대												
대장	소 계												
	통·리대												
	직 장 대												

〈별첨6〉

교 육 운 영 일 지

계	계장	과장	시장·군수

년 월 일

대 별		계획인원	참 석	불 참	조퇴·지참등
당일계	계				
	통·리대원				
	직장대원				
	수방기동대원				
	기술지원대원				
	화생방분대원				
	통·리대장				
	직장대장				
	신편대원				
누계	계				
	통·리대원				
	직장대원				
	수방기동대원				
	기술지원대원				
	화생방분대원				
	통·리대장				
	직장대장				
	신편대원				

※ 시·군 비치용

〈별첨7〉

일 일 결 산 일 지

계	계 장	과 장

교육대상 (지역·대별)	계획인원	참 석	불 참	조퇴·지각
/	명	명	명	명
/	명	명	명	명
/	명	명	명	명
/	명	명	명	명
소 계				
누 계				
과 목		강 사		
특기사항				

※ 교육장 비치용

〈별첨8〉

교 육 훈 련 소 집 통 지 서

〈앞면〉

수 령 증

주 소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함

수령인 (인)

(본인의)

년 월 일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상기자를 민방위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32항의 규정에 의해 아래와 같이 소집함.

구 분	교육
소집기간 (우천시)	1997. ~ 1997. ~
소집장소 (우천시)	연 번

년 월 일

○○읍면 · 동장 (인)

교육참가증

주 소	
소 속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 사항에 대한 교육훈련소집참가를 인정함

년 월 일

〈뒷면〉

※ 교육장 위치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육훈련에 참가합시다.

1. 이 통지서는 본인을 대리하여 받은 때에도 즉시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2. 신체장애, 관혼상제·재해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유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교육장에 오실때에는 간소복과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주민등록증과 이 통지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상설(일요.야간)교실제도와 현지 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이 통지서를 수령후 본인에게 미전달한 자와 교육훈련에 불응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6. 본 교육에 관하여는 ○○시(군)민방위재난관리과(000-000) 또는 ○○읍·면·동사무소 (000-0000)로 문의하시 바랍니다.

5. 民防衛訓練 內實化 運營

5-1. '97 民防衛訓練의 運營方向

5-2. 訓練 內實化를 위한 前向的 施策

5-3. 訓練分野別 推進施策

5-4. 民防衛訓練의 效率性 提高 施策

5-5. 行政事項

말로하는 훈련보다

행동하는 민방위

5－1. '97民防衛訓練의 運營方向

가. 與件展望과 對應方向

《 安保支援 側面 》

□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탈북자 증가등 불확실한 안보상황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범국민 총력방위태세 확립 필요

□ 안보 환경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로 안보의식 미흡

⇒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계기로 국민 안보의식을 확고히 정립

□ 부담경감 위주의 민방위운영으로 민방위에 대한 인식 퇴조

⇒ 민방위훈련등 민방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 安全管理 側面 》

□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각종 재난의 대형화·다양화 추세

⇒ 국가적 재난예방을 위한 방재능력확충 및 재난대비훈련 철저

□ "삶의 질"의 향상에 비하여 안전 불감증불안감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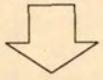
⇒ 국민복지와 안전문화 정착을 뒷받침할 민방위역할 증대

나. 目的 및 重點推進課題

目　　的

□ 안보의식과 유사시 대응능력 제고로 총력방위태세 확립

□ 지역단위의 재난예방 및 대처능력 향상으로 생활민방위 구현



重點 推進 課題

□ 기관장 주도하에 원리원칙에 입각한 각론적인 훈련실시

□ 비상시 대비능력 향상을 위한 민방공훈련 강화

□ 재난대비·전문성·기술성 제고를 위한 생활민방위훈련 내실화

□ 도단위 시범훈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실효성 증대

□ 학교훈련의 활성화로 청소년에 대한 민방위의식 확산

□ 직장·단체 훈련의 선도적 운영으로 지역단위훈련 촉진

□ 민방위대원의 응소율 제고로 비상대비태세 확립

다. 推進方針

○ 훈련회수 : 9회(민방공 4회, 방재 4회, 비상소집 1회)
○ 훈련일자 : 15일에 실시함을 원칙
  - 15일이 토요일이면 금요일, 15일이 공휴일이면 다음날 실시

□ 기관장 적극 참여 및 적용 가능한 각론적 훈련운영

○ 기관장 직접참여 지휘체계확립 및 활동상황 유지관리
○ 민방위복·모자착용, 비상계단 대피, 소화기사용법등 실기·실습

□ 유사시 대응력 향상을 위한 민방공훈련을 실제감 있게 실시

○ 불시훈련은 훈련성격·분위기에 맞는 시기선택·효과성 제고
○ 정기훈련은 지역 직장대별 다양한 사태수습훈련 병행 실시

□ 생활민방위와 관련된 실질적 재난대비훈련 실시

○ 계절·지역별 특성·실정에 맞게 현실감있는 훈련운영
○ 민·관·군 공조를 통한 예방적 차원의 방재능력 확충

□ 도 단위 시범훈련의 참관범위확대 등 파급효과 극대화

○ 도단위 훈련으로서의 역할·기능에 맞게 참관범위 확대
○ 훈련상황전파 및 부대행사 개최 등으로 파급효과 증대

□ 교육기관의 장학지도 사업과 병행하여 학교훈련 활성화

○ 수용규모에 맞는 윤번제 대피 및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강화

□ 직장훈련의 실질적운영으로 지역단위훈련 촉매기능 강화

○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장등 적극 참여유도 다양한 훈련운영

□ 훈련의 효율성제고를 위한 다양한 운영방법 강구

○ 대국민 훈련홍보, 유도활동 및 현지확인, 유관기관 공조 강화

5－2. 訓練의 內實化를 위한 前向的 施策

가. 原則爲主의 實際的·各論的인 訓練實施

○ 범국민적 참여속에 절도있고 실제감 넘치는 훈련다운 훈련운영
○ 외형보다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실기·실습 훈련실시

〈그동안의 運營實態〉

○ 대피훈련시 잡담, 엘리베이타 활용등 느슨하고 산만한 훈련자세
○ 훈련시간을 단순한 대기휴식 등 형식적, 소극적 운영

〈前向的 推進方向〉

□ 훈련기간 확립 및 실제대피

○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장, 단체등의 선도적 참여
○ 대피훈련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신속한 실제대피 확행
○ 취약지역에 유도요원을 확대배치하여 절도있는 훈련유도

□ 대피시간중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현장교육 실시

○ VTR을 통한 안보, 안전 관리에 대한 시청각 교육
○ 방독면, 소화기 사용법, 응급처치·사태시 행동요령등 실기, 실습
※ 지역, 계절, 직장별 특성에 맞는 사태수습(방재)훈련 실시

□ 민방위 표상등을 활용한 분위기 조성

○ 직장, 단체 및 유도요원은 반드시 민방위복, 모자, 완장착용
○ 민방위기, 입간판, 현수막 설치 및 홍보활동 강화

나. 機關長의 訓練直接 參與 指揮强化

○ 기관장이 안보, 안전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면서 훈련에 깊은 관심을 갖고 솔선참여

○ 훈련과정을 직접 지휘하고 훈련결과를 평가, 분석 보완

〈그동안의 參與實態〉

○ 훈련당일 각종 행사참석등을 이유로 불참사례가 많음

○ 훈련 참석시에는 간단한 의식행사에만 참석하는 등 형식적 미온적으로 행동

〈前向的 推進方向〉

□ 기관장의 자율적 훈련참여를 통한 유관단체등의 참여유도

○ 기관장의 일정 수립시 훈련일자와 중첩되지 않도록 조정

• 훈련시간에 여타 행사에 참석하거나 방문하는 사례지양

○ 유관기관장 협의회 개최등을 통한 원만한 훈련운영 체제 확립

• 훈련내용 설명,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강화, 관심촉구 등

□ 기관장의 훈련과정 직접 지휘, 통제 및 평가분석

○ 훈련과정 전반을 기관장이 장악하고 직접지휘, 통제

○ 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미흡한점 보완

□ 기관장의 활동상황 관리강화

○ 매훈련시 기관장 훈련참여 상황 불시점검등 체계적 관리

• 내무부 → 광역단체장　　도 → 기초단체장

○ 기관장 활동실적을 시책평가시 반영 및 언론보도등

5－3. 訓練分野別 推進施策

가. 推進總括

□ 訓練運營 : 9회

○ 민방공훈련 3회 : 읍이상 전국일원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및 사태수습훈련 병행실시

○ 불시훈련 1회 : 날짜지정, 시간미지정, 불시경보발령

○ 방재훈련 4회 : 시군별 재해취약지역 선정, 유관기관 합동실시

○ 비상소집훈련 1회 : 전 민방위대원, 응소능력점검, 임무고지 등

□ 訓練 活性化 施策

○ 도단위 시범훈련의 참관확대로 파급 효과 증대(2회)
- 시군 담당자 참관, 재난관련 유관기관·부서 참관
- 훈련상황전파, 강연회등 부대행사 개최

○ 학교훈련 활성화로 청소년의 민방위의식 확산
- 윤번제 실제대피, 대피중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실시
- 시군별 시범학교운영(초·중·고 1개교) 홍보 및 행정지원

○ 직장·단체 훈련의 선도적 운영으로 지역훈련 촉진
-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직장·단체의 적극참여 분위기조성
- 훈련계획 감안 직장별 업무계획 조정, 다양한 실제훈련

□ 訓練의 效率性 提高 施策

○ 평가기능 강화 : 매 훈련시 현지점검, 미흡점 개선보완

○ 홍보계도 강화 : 안내·실황·평가방송, 지역·기관별 다양한 홍보

○ 지도요원 활성화 : 기동성 있는 요원확보, 취약지역 중점배치

○ 유관기관간 협조 : 중앙기관 및 산하단체별 지원 기능강화

月別 訓練計劃

월별	일자·시간	훈련종목	훈련내용
1월		연간 민방위훈련 운영준비	• 연간 민방위훈련(세부)계획 수립 유관기관과의 협의·계획시달 등
2월		비상소집훈련	• 응소능력 점검, 제대편성, 임무고지등
3월	14일 (금) 14 : 00-14 : 20	민방공훈련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 • 방재훈련 병행 다양한 사태수습훈련 – 화생방, 산불진화 등
4월	15일 (화) 14 : 00-15 : 00	방재훈련	• 지진(소방·단전·단수·통신두절 등) 대비훈련
5월	15일 (목) 14 : 00-15 : 00	방재훈련	• 풍수해, 해일등 자연재해 대비훈련
6월	16일 (월) 14 : 00-14 : 20	민방공훈련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 • 사태수습훈련 병행(화생방·화재 등)
7월		하반기훈련준비	• 상반기 훈련평가 • 하반기 훈련운영 준비
8월	을지연습 기간중	불시민방공훈련	• 경보전파·주민대피·교통통제 등 – 불시경보발령(날짜지정, 시간미지정)
9월	19일 (금) 14 : 00-15 : 00	방재훈련	• 건축물 및 교량붕괴, 대형교통사고 등 각종 인위재난 대비훈련
10월	15일 (수) 14 : 00-15 : 00	방재훈련	• 겨울철 화재·산불·설해·유독가스 등 위험물 대비훈련
11월	14일 (금) 14 : 00-14 : 20	민방공훈련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 • 사태수습훈련 병행(겨울철 재난)
12월		'97 훈련결산	• 훈련실시결과 종합평가 분석 • 보완·발전사항 차기계획에 반영등

○ 앞으로 여건변화등 상황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일자·훈련종목등 조정운영

○ 9월은 추석절(9.14~9.17) 다음날인 9.18일 실시될 경우 훈련준비 등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원만한 훈련운영을 위하여 9.19일로 조정 운영

나. 民防空訓練의 强化運營

民防空 定期待避訓練

○ 전시국민행동요령의 생활화로 비상시 대비능력 향상
○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범국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는등 총력방위태세 구축

〈方　　針〉

○ 정기대피훈련은 일정·시간을 사전 예고하여 실시
○ 대피훈련은 전국에 걸쳐 전국민·차량등을 대상으로 실시

〈推進計劃〉

□ 訓練槪要

(1) 훈련운영회수 : 연 3회(3, 6, 11월)
　○ 민방공대피훈련은 전국공통훈련으로 일원화 운영

(2) 훈련지역
　○ 읍이상의 도시지역 중점
　○ 면단위 주요직장, 교통요충지, 항만, 해안, 도서지역 포함

(3) 훈련시간
　○ 민방공대피훈련 : 20분(훈련공습경보15 ⇒ 경계경보5 ⇒ 해제)
　○ 사태수습훈련 : 30~60분 정도(지역실정과 재난규모에 따라 훈련시간 적의조정)

(4) 훈련대상

○ 주민(직장, 업소 포함)

○ 교통통제(차량, 선박, 열차 등)

※ 긴급사태로 출동중인 군작전차량 경찰, 소방, 구급, 긴급 복구차량, 고속도록에서 주행중인 차량 제외

(5) 훈련내용

○ 적기식별, 대공감시, 직장방호

○ 경보전파 및 대피소산(주민대피, 차량통제)

(6) 훈련경보 발령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 공습경보 15분 ⇒ 경계경보 5분 ⇒ 해제

○ 경보취명 및 전파체계

① 경보단말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지방경보단말 ⇒ 경보전파

② 방송전파 :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 ⇒ KBS 본사 ⇒ 각 방송사별 수신중계 ⇒ 경보전파

※ 경보취약지역은 사이렌, 종 등 경보대체수단을 이용하여 경보전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 戰時國民行動要領의 實際行動化

(1) 주 민

○ 행동요령

• 건물내 또는 지하대피시설에 안전대피 원칙

• 노상이나 야외에서 대피시설이 없을 때는 지형지물이용 대피

○ 행정기관에서 주민대피를 위하여 조치해야 할 사항

• 주요가로변 및 인구밀집지역 주변의 지하대피소 확대지정

• 지정된 대피소에는 대피소표지판·안내표지판·유도표지판 등 부착, 훈련당일에는 대피소입구에 입간판 설치

• 가로변 건물 등의 지하시설 개방협조, 훈련 실황방송 청취유도

– 시설주와 관리인을 명예유도요원으로 위촉활용

• 대피시설로 활용되는 지하시설 등에는 방송청취시설 마련

(2) 가 정

○ 실내에서 방송청취

○ 비상용품 휴대, 지하실등으로 대피

– 의약품, 비상식량, 라디오, 손전등, 성냥, 방독면 등

〈경보(사이렌)취명시〉

○ 라디오청취 생활화하기

○ 불필요한 전화안하기

○ 화기 단속 및 전열기코드 뽑기

○ 비상식량·비상약품 준비하기

(3) 직　장(직장장 책임하에 실시)

○ 훈련지역내 모든 직장·단체 솔선참여, 지역단위훈련 선도

○ 전 종사원은 업무을 중단하고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전원대피

※ 다만, 생산공장에서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옥내종업원에 대하여는 생산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훈련참여

○ 대피시에는 비상용품 반출

- 비상용품지정 – 중요문서 또는 물품
- 반출순위지정 – 목록표 작성비치
- 훈　련　시 – 목록표와 라디오만 휴대대피

○ 개인별로 방독면 및 대체장비 휴대대피

○ 대피소내에서 교육실시

- 훈련중점 방송청취(라디오)
- 방독면 및 대체장비 사용요령
- 전시국민행동요령
- 소화기·소화전 사용요령
- 응급처치 및 각종 사태수습요령
- 기타 민방위에 관한 교육

○ 직장예비군은 직장 사주경계(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

○ 민방위대원은 직원의 대피를 유도하고 제대별 임무수행

○ 수개의 직장이 있는 2층이상 고층건물에서는 층별대피계획을 수립하여 방송실에 항시 비치하고, 대피유도방송 실시

○ 각급 학교에서는 경보발령과 동시에 정규수업을 중단하고 대피시설 수용가능인원만큼 매월 교대로 대피, 대피시간 중에는 청소년민방위교육 실시

※ 세부적인 사항은 학교훈련·직장훈련 활성화분야 참조

(4) 차 량

○ 빈터나 도로우측에 질서정연하게 안전정차 대피

○ 승객을 하차시켜 대피소, 인근건물 지하시설등으로 안전대피 유도

○ 도지사가 지정한 차량혼잡지역에서 대피소 부족등으로 대피하지 못한 일부차량승객은 차내에 대기하면서 훈련실황방송 청취

- 대피차선은 도로 우측차선으로 대피토록 유도

○ 대피훈련도중 차량신호가 작동함에 따라 운행차량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시 해당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훈련 시간중 차량신호 통제방안 강구

〈승차대기구간－도내 5개 시 20개소 30.3KM〉

교통요충지 도로변에 운행차량과 승객이 과다하고 공공대피소등 대피시설이 부족하여 전원대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별첨1〉
(주요로타리·자동차전용도로·순환도로·교량위 등)

(5) 철도·고속도로운행차량·선박

○ 경보 및 방송전파(차량, 선박내 방송)

○ 공습경보중일때 각종 운송수단 운행통제

□ 有關機關·團體의 參與活性化 및 役割分擔體制 確立

경찰, 군부대, 소방등 유관기관, 단체의 적극 참여
기능별 역할 분담·수행으로 지역방위체제의 구축

(1) 군 부 대

○ 군작전로 차량통제

- 대 상 : 시, 군지역내 주요 군작전로 1개소(교체지정 운영)
- 요 령 : 훈련시간중 지역군부대 현역 및 예비군 배치
- 임 무 : 군작전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차량 주민통제

○ 기동장비 출동

- 대 상 : 시, 군청 소재지의 주요도로 구간 지정
- 요 령 : 제독차·장갑차등 출동, 국가보안 목표시설 경계

○ 전투기 발진

- 발진 지역 : 종전37개도시→48개주요 도시로 확대
- 발진전투기 구분 : 가상적기, 아군대항기

〈전투기운용 주요도시 : 48개〉

- 종전 37개도시 :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인천·안양·성남·춘천·당진·온양·천안·태안·대천·군산·이리·전주·목포·여수·진주·마산·창원·포항·경주·울산·안동·구미·원주·충주·청주·영주·정선·영월·태백·강릉·동해·삼척
- '97 추 가 : 부천·수원·고양·안산·광명·평택·의정부·남양주·군산·김해·순천

(2) 경 찰

○ 주민 및 차량통제, 주요시설 장비지원 및 출입통제

(3) 민방위대원

○ 주민대피유도, 인명구조, 응급복구 및 군작전지원

(4) 전기·통신·소방·의료기관

○ 소방, 응급복구, 긴급구조장비 및 인원 적극참여

○ 훈련참여 직원외 인원·장비는 비상대기

(5) 운송사업 관련 단체

- 차량통제·대피훈련에 자발적 참여유도·홍보

不時民防空訓練

○ 한반도 안보상황 감안, 안보의식 고취 및 총력방위태세 확립
○ 훈련을 통한 행동요령 습득으로 불시상황에 대한 대응력 제고

〈背　景〉

○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사건등으로 안보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유사시에 대비한 안보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정서 증폭

〈方　針〉

○ 을지연습기간과 연계, 연 1회(8월) 실제훈련 실시
○ 경보발령 일자는 사전예고, 시간은 미지정(불시경보 발령)

〈推進計劃〉

□ 訓練槪要
○ 일 시 : 8월 을지연습 기간중(20분간)
○ 지 역 : 전국 읍이상 도시지역 중점(면단위 주요직장 등)
○ 대 상 : 주민, 차량(자동차, 선박, 열차 등)
○ 내 용 : 경보전파, 주민대피, 교통/통제 등
○ 경 보 : 훈련공습경보(15분) ⇒ 경계경보(5분) ⇒ 해제
□ 行動要領 : 정기 민방공훈련에 준하여 실시
□ 住民不便 解消對策 講究
○ 유관기관, 단체 등 협의강화, 불시훈련에 따른 불편, 문제점 최소화
○ 훈련의 필요성 실시요령등에 대한 다각적인 계도・홍보
– 중앙단위 : 기획홍보(TV, 라디오), 지역단위 : 지역별, 기관별 홍보등
○ 다양한 훈련분위기 조성(민방위기, 가로기 게양, 입간판부착 등)

事態收拾訓練

○ 안보·안전관리를 위한 지역단위 유관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

○ 각종 사태발생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처능력 제고

〈方　　針〉

○ 정기 민방공대피훈련 실시후 지역·직장 실정에 맞게 실시

○ 유사시 실제로 적용 가능한 각론적인 훈련 중점 실시

〈推進計劃〉

□ 訓練槪要

(1) 훈련운영회수 : 연3회(3, 6, 11월)

(2) 훈련시간 : 대피훈련 종료후 30~60분정도

(3) 훈련주관 : 시장·군수 책임하에 실시

(4) 훈련참관 : 시·군당 직장·지역 각 1-2개소 지정실시

(5) 훈련대상

○ 전시기능 유지가 필수적인 주요직장(국가보안목표시설, 방위산업체 등)

○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산업체(공장, 제조업체 등)

○ 위해업소(유독가스·도시가스·화공약품 취급업체 등)

○ 다중집합장소(역, 터미널, 백화점, 대형상가지역 등)

○ 상가시설·주요직장·유독가스공장등 위험시설 인근지역

○ 대공취약지등 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6) 훈련내용 : 실제상황대비 종합훈련

○ 주민·차량통제훈련, 응급복구 및 인명구조훈련

○ 단전·단수·통신두절 대비훈련, 소방훈련

○ 화생방 방호훈련, 기타 피폭시 사태수습훈련

(7) 훈련방법

○ 지역 및 직장단위로 지역주민과 유관기관·단체 참여하에 실시

○ 개별직장·지역단위 단일훈련종목을 지양하고 실제상황에 부합되도록 다양하고, 종합적인 훈련실시

○ 유관기관, 단체의 공동참여와 효과적인 훈련통제로 방호능력 제고

□ 共通事項

(1) 비상탈출 및 인명구조

○ 인명구조와 긴급조치에 필요한 줄사다리·구명장비·비상약품 붕대·삼각건·각목등 자재준비

○ 고립자 구출과 후송을 위한 인력·장비 동원과 운용절차 숙달

○ 대량사상자 발생상황을 부여하여 구급조치 및 후송요령 습득

(2) 응급복구

○ 복구용 장비 및 물자 사전준비 점검

○ 방호복구분대의 편성과 임무 재확인

○ 건물 및 주요시설물이 피폭등으로 파괴되는 것을 가상하여 긴급 복구훈련 실시

○ 유관기관 지원사항을 점검하고 실제복구능력 숙달

(3) 지역정리

○ 파괴된 시설주변 정리 및 고압가스·유류등 위험물을 안전하게 소산·정리

○ 시설의 파괴가 우려되는 곳과 불안전한 요소 제거

○ 조난·강우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조치

(4) 훈련계도

○ 시장·군수 책임하에 직장장, 주민 사전계도

○ 지역·직장별 특성에 맞는 훈련요령 지도

□ 地域防護訓練

(1) 도시지역

○ 훈련대상 : 읍이상 도시지역 통·리민방위대

○ 훈련내용

• 민방공사태시 대피소산훈련

- 가정별 비상물품점검 및 전시국민행동요령 숙달
- 보행인·운행차량 훈련참여 유도, 다중이용시설, 변두리·뒷골목 등 대피훈련 철저

○ 훈련종목

- 민방공대피·화생방방호·주민신고·차량통제·소방훈련
- 지역별 취약재난방지 및 응급복구훈련등

○ 훈련방법

- 훈련유도요원에 대한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한후 배치
- 명예유도요원 위촉을 확대하여 지하대피시설 소유주, 지하상가 업주등의 자율참여분위기 조성
- 가정내 또는 인근대피시설로의 대피훈련과 방송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훈련종료후 재난예방점검 실시
- 유사시 대피장소의 지정 및 실제대피훈련 실시

(2) 농촌지역

○ 훈련대상 : 면단위 주요직장과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차량요충지

○ 훈련참여 범위

- 직　　장 : 전종사원, 유관기관·단체
- 차량요충지 : 전차량 및 인근주민

○ 훈련내용·방법

- 직　　장 : 경보전파 및 대피, 직장방호, 화생방방호, 소방, 인명구조, 시설·장비 안전점검, 응급복구, 주민합동 훈련

• 차량요충지 : 차량 및 주민대피, 작전차량을 위한 도로소통

○ 경보전파

• 직　　장

– 직장방송·사이렌·종등 자체 경보장비 활용

– 사이렌 취명시는 인근주민에게 훈련을 위한 경보취명임을 사전 홍보

• 차량요충지

– 자체 사이렌 확보

– 자체 사이렌이 없을시는 마을앰프·전자메가폰등 활용

○ 훈련계도

• 시장·군수책임하에 직장장·주민 사전 계도

• 직장별 특성에 맞는 훈련요령 지도

(3) 항만지역훈련

○ 훈련대상 : 도내 주요 포구

○ 훈련내용

• 경보전파 및 선박대피소산, 승객 및 부두종사원의 대피

• 화재진압 및 응급복구 등 사태수습, 항만방호

○ 훈련방법

• 실제훈련 : 항내에 정박하고 있는 전 선박이 훈련에 참여하여 대피·소산·사태수습 실제훈련 실시

• 모의훈련 : 지정된 선박만 훈련에 참여하되 실제대피는 하지 않고 인원 및 기타 시설은 실제훈련과 동일한 훈련실시

○ 훈련실시요령

• 경보전파

– 자체보유 경보장비(사이렌, 고동, 마이크)를 이용 신속히 전파

– 모든 행동을 중단하고 안전대피를 위한 협조내용 방송

• 통　　제

– 육상계도요원을 배치, 부두내에 있는 인원과 차량의 대피유도

– 해상에는 지도선을 배치하여 선박의 안전소산 지도

– 외항에서 입항하는 선박 통제

• 선박대피 및 소산

– 대피 우선순위

• 전략 및 군수물자 적재선박, 위험물 적재선박

• 대형선박, 기타 선박순으로 대피

– 여객선에 승선한 승객은 하선하여 대피

– 우선순위로 유도선의 유도에 따라 지정된 장소로 대피

– 위험물 적재선박은 일반선박과 격리 소산

–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선박간의 거리유지

– 선원은 안전을 고려하여 구명동의 착용

– 대피하면서 라디오방송 계속 청취

• 해상구조

– 구호용 선박으로 피해선박에 접근, 실종자 구출

– 상황파악후 승선, 환자를 색출하여 응급처치

– 피해선박 견인 및 내부 해독

(4) 기타 해안지역 훈련

○ 훈련대상 : 시장, 군수가 지정하는 어촌단위 해안지역, 도서지역

○ 훈련참가범위

• 직 장 : 전종사원, 유관기관 · 단체(해양경찰, 군부대, 예비군등)

• 어촌 · 도서지역 : 지역주민, 유관기관 · 단체(〃)

○ 훈련내용

• 직 장 : 경보전파 및 대피, 직장방호, 화생방방호, 소방, 인명구조, 시설·장비 안전점검, 응급복구, 주민합동훈련

• 어촌 · 도서단위 : 지역특성에 따라 주민신고, 주민대피, 해안선방호, 어선 · 선박대피훈련

○ 훈련요령

• 실시 단위별로 자체계획수립 실시

• 훈련기관 및 시간은 지역별 · 계절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

□ 職場防護訓練

(1) 훈련대상 : 민방위대가 편성된 전직장

○ 훈련주관 : 직장장 책임하에 실시

○ 훈련참여 : 전종사원 및 외래방문객

(2) 직장별 공통방호훈련

○ 훈련참여 : 가능한 전종사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부서별로 책임분담 편성하여 참여

○ 훈련종목 : 직장방호, 화생방방호, 유독가스·화공약품누출 대비 훈련등 직장특성에 맞는 훈련

○ 훈련요령

- 직장종합훈련은 민방위사태 발생단계에서부터 사태수습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훈련실시
- 유독가스등의 위험물 설치직장은 피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읍·면·동장 및 지역민방위대장과 사전협의후 실시
- 지역주민과의 연계훈련 실시시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훈련 내용을 충분히 홍보하여 인근 주민의 훈련참여 유도
- 각급 유관기관 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3) 병 원 : 환자보호, 대피훈련

○ 환자 및 보호자의 이동을 통제하고 비상구를 개방

○ 2층이상 환자의 층별대피훈련과 안내원 배치계획·안내 방송문(안) 작성 항시 비치

○ 층별 대피계획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 환자 및 보호자가 유사시 대피에 응할 수 있도록 계도

(4) 생산공장 : 인원·시설보호 대피훈련

○ 직접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을 제외한 사무요원·경비요원 등은 직접훈련 참여

※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운동과 연계추진

○ 유사시를 대비한 부서별 대피순서 및 대피장소를 지정한 대피계획과 안내방송문안 작성 활용

□ 化生放防護訓練

'97 화생방 방호업무 추진지침(화생방방호)편 참조

다. 內實있는 防災訓練 運營

○ 평소 재난대처기능 총점검을 통한 긴급구조, 구난태세 확립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습득 및 사태수습능력 제고

〈方　　針〉

○ 보다 실효성 있는 방재훈련으로 생활민방위 뒷받침

○ 도 시범훈련과 연계추진하여 실효성 제고

○ 방재 유관기관간의 공조체제 및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

〈推進計劃〉

□ 訓練槪要

(1) 훈련회수 : 연 4회(4, 5, 9, 10월)

○ 4월 : 지진(단전, 단수, 통신두절등) 대비훈련

○ 5월 : 풍수해, 해일 등 자연재해 대비훈련

○ 9월 : 건축물, 교량붕괴, 대형차량사고등 대비훈련

○ 10월 : 화재, 산불, 설해 대비훈련

※ 직장단위 훈련은 월별구분 없이 취약재난 대비훈련 실시

(2) 훈련주관 : 도(대형재난), 시군(지역·직장특성훈련)

(3) 훈련시간 : 30~60분 정도

○ 훈련내용과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적의조정 실시

(4) 훈련참관 : 관내 방재유관기관 총참여

○ 민방위대, 경찰, 소방, 군부대, 한전, 대한적십자사, 보건소

○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기타 유관기관, 단체 등

(5) 훈련진행순서

① 훈 련 상 황 부 여	(통제관)	• 재난상황을 메세지 형식으로 부여 – 일시, 장소, 재난규모, 기상제원 등
↓		
② 재난초기단계조치	(기관장)	• 상황접수즉시 사태장악 및 수습체계 확립 – 상급기관 보고 유관기관 지원 요청, 재해대책본부 가동 – 기관장 현장출동 – 공무원 비상소집 및 민방위대원 동원령 발동 – 병원의료진 비상근무조치 등
↓		
③ 재 난 수 습 · 복 구	(유관기관 · 단체)	• 인력 · 장비 · 물자동원 실제 투입 – 헬기, 중장비, 진료요원, 앰브런스 등 망라 – 인명구조 및 재난현장 복구 등
↓		
④ 훈 련 종 료 선 언	(기관장)	• 재난수습 완료확인, 종료선언 – 참여기관 · 단체, 민방위대원 격려
↓		
⑤ 훈 련 강 평	(통제관)	• 훈련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 총평, 잘된점, 미흡한점, 개선대책

〈防災訓練 參與隊員 自體教育 認定〉

○ 대상훈련 : 재난대비 방재훈련(도 및 시군단위), 사태수습훈련 (시범훈련)

○ 운영방법 : 시범훈련 실시후 참여대원 자체교육 실시

○ 인정절차

• 훈련현장에서 참석확인서를 발부하고 직권교육 인정조치

※ 상 · 하반기 교육중 1회 인정(4시간)

□ 圖上訓練實施要領

(1) 훈련중점항목

○ 재난발생 연락체계 점검정비

• 주민신고체계, 유관기관간 상호통신체계, 통신수단활용 및 이용상 문제점 등

○ 유관기관 업무배분 및 전담부서 지정

• 훈련참여 범위지정 및 업무배분, 업무전담부서 사전파악

○ 인명구조활동체계 점검

• 전담부서 및 조직지정, 전문인력, 장비확보, 수송수단, 치료약품, 수용병원(의료진)의 사전파악 지정등

○ 인력, 장비, 물자 동원체제 측정

• 재난수습 필요인력·장비·물자 확보상태점검 및 민관군 동원체계 구축

(2) 段階別 實施 要領

① 훈련상황 부여(기관장 → 훈련주관부서장)

○ 부여방법 : 메세지 형식

문서번호 제 호 월 일 시
·수신 : ○○실·과장
·제목 : ○○호텔 화재발생통지
○월○일 ○○시 ○○분에 ○○소재 ○○호텔에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신속한 조치를 하기 바람.
기 관 장 서 명

② 재난발생 초기단계 조치

○ 공무원 비상소집 및 민방위대 동원령 발동

• 비상소집일시, 집결지, 집결시 준비사항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 및 필요인력, 장비지원 요청

• 재난관련기관 연락처, 장비 보유현황, 지원인력 현황파악

○ 지역재난대책협의회 소집

• 협의회 참여인원, 개최일시, 협의내용, 구성원 연락처등 점검

○ 기관장의 재해현장지휘소 설치

• 지휘소에 비상전화등 필요행정장비 설치, 참여공무원 지정등

○ 상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보고

• 보고부서, 보고내용, 보고일시 등

③ 사태수습 및 복구

○ 긴급출동 및 대응조치

• 출동기관, 장비, 인력, 소요시간 및 응급조치내용

○ 사상자의 신속한 수송, 가료대책 추진

• 병원수용능력, 의료진현황, 재난현장과 병원과의 거리, 소요시간, 사상자 수송순서 및 차량통제방안 등 강구

○ 이재민 수용 및 현장복구대책 강구

• 이재민 수용시설 활용사항, 재난현장 조기복구조치 등

④ 평가 및 문제점 보완조치

○ 재난단계별 행동요령 전반에 걸쳐 자체평가

○ 훈련과정상 나타난 문제점 및 보완대책, 성과 등

□ 地域特性訓練

(1) 훈련주관 : 도 및 시군

(2) 훈련대상

○ 재해취약요인이 많은 지역 및 피해 상습발생지역

○ 재난발생시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보호 및 보안을 요하는 국가주요기관·시설

○ 화재, 가스사고 등 대형사고 우려기관·업체

(3) 훈련중점

○ 재난상황별 대처 및 주민행동요령 교육

○ 안전시설등 재난대비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 민방위대 및 기관·단체 지원체제 확립 및 응급구호

○ 주민대피, 인명구조, 이재민수용, 구호 및 방역

○ 재난수습 및 응급복구, 복합적 재난에 대한 대응력 배양

○ 재난상황별 성격에 따라 경보전파 및 재해대책본부 설치 운영

(4) 지역별 중점훈련내용

구 분	중점훈련종목	발생시기	비고(훈련시기)
도심·공단지역	화재, 지진, 유독가스 등 위험물 대비	연 중	4, 10월
하천·해안지역	태풍, 해일, 집중호우 등 풍수해 대비	6-9월	5월
산간·대설지역	산불예방 및 진화, 설해대비	11월-익년 5월	10, 11월

(5) 훈련방법

○ 시군 단위로 재해위험지역 1개소이상 선정 실시하되, 예상되는 재난규모에 따라 2~3개 시군과 읍면동이 공동참여 하는 광역방재훈련을 실시하여 공동대처능력 배양

○ 복합적인 재난사태발생에 대비하여 재난상황 설정은 주된 재난 이외에 부수적인 사고상황도 가상하여 훈련시나리오 구성

○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관계기관협의회 개최로 구체적인 계획수립 등 관련 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종합방재훈련 실시

○ 민방위대원 특히 기동대 중심의 현장훈련 실시와 지역주민의 자율참여 유도로 지역단위 자율방재체제 확립

○ 시, 군별 재해 발생사례를 감안하여 발생빈도가 가장 높게 예상되는 재해를 선정, 새로운 훈련모델 및 기법을 개발하고, 우수사례는 시범훈련을 통하여 여타지역에 확산 파급

○ 훈련내용이 실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흥미있는 내용이 되도록 지역 및 대상별 다양한 주제선정, 훈련 및 홍보교육 병행실시로 생활민방위 정착 및 자발적 참여 유도

※ 고객안전을 위한 평소안전조치사항, 차량점검방법 및 고장시 응급조치요령, 산행시 유의사항 등 평소 알아두면 유익하고 실제생활에 많이 접하는 내용

□ 職場單位 防災訓練

(1) 훈련시기 : 매월 민방위의 날 훈련시 자체운영

(2) 훈련주관 : 직장민방위대(관련부서 적극협조)

(3) 훈련대상 :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되고, 직장특성훈련이 요구되는 재해위험직장 위주

(예) ○ 염소, 포스켄, 기타 화공약품등 위험물 취급업소

○ 터미날, 백화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

(4) 중점훈련내용

○ 사고발생에 대비한 유관기관 경보전파 및 지원체계 점검

○ 직장단위별 관련취약재해에 대한 대응력 제고

○ 재난발생시 고객질서유지 및 안전대피요령 습득

○ 자체방재시설 및 장비활용 초동재난수습능력 제고

○ 소방·경찰등 방재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5) 훈련요령

○ 직장민방위대 주관하에 전직장부서와 직원이 총참여, 종합 실제훈련 실시

○ 고객 및 인근지역주민 안전대피를 위한 경보전파 및 주민통제 훈련 실시

○ 주요물품 반출, 위험물 안전조치 및 피해확산 차단, 관련시설물 점검, 정비

○ 재난발생시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후송, 방역활동등 재난수습요령

○ 실제훈련을 실시하되, 실제훈련이 곤란한 직장은 도상훈련 병행하여 실시

(6) 직장단위별 중점훈련내용

구 분	중점훈련종목	훈 련 내 용	비 고
다중이용시설 (호텔, 백화점, 상가등)	화재, 독가스 등 위험물대비	• 고객질서 및 안전대피 • 인명구조등 자체수습 • 관련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수습체계 점검	직장민방위대주관
위험물취급업소 (염소, 포스켄등 화공약품 취급업소, 가스업소 등)	유독가스누출시 대피요령 및 재난수습훈련	• 가스누출경보전파훈련 • 누출가스중화 및 제독 • 인근주민 보호대책 • 관련시설물 안전점검등	〃
개인업소 (노래방, 다방, 도서관등)	화재 및 유독가스대비	• 자체안전점검 위주로 훈련실시 – 고객대피 체계점검 및 초동진화요령 등	업소별 자체운영 유도

※ 직장민방위대가 편성된 직장은 관련재해요인에 대한 특성훈련개발, 민방위의 날 훈련시 전종업원 참여하에 지속적으로 훈련실시

□ 訓練種目別 實施方法

山불豫防 및 鎭火訓練

(1) 훈련대상

○ 산불이 자주발생하는 지역으로 마을과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입산자가 많은 지역

○ 도립, 군립 공원 등 등산객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

○ 보호를 요하는 중요한 산림(시험림, 채종림등)

(2) 훈련중점

○ 순찰 및 산림감시요령 교육

○ 산불감시용 시설물 및 계도표지판 점검

○ 산불반견신고 및 민방위대원 긴급동원 태세 확립

○ 모의산불진화 및 고립지역주민 인명구조훈련

(3) 훈련실시요령

○ 민방위대를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예찰조를 편성 운영

○ 산불발견신고 및 신속한 경보전파와 지휘계통에 따른 조치

○ 산림보호 관계기관, 단체와의 사전 충분한 협의 이행

• 훈련실시지역, 훈련시간, 규모, 참여기관, 기관별 담당임무, 동원장비등

○ 훈련참여는 가급적 훈련지역 인근 2~3개 읍·면과 합동으로 광역훈련 실시

○ 훈련전개는 신고 → 접수 → 상급, 관계기관 비상연락 → 민방위대원동원 → 헬기등 장비지원, 수급 → 훈련강평 등 단계별 조치 이행

○ 훈련종료후 산불예방에 대한 대국민 홍보계도활동 실시

風水害 對備訓練

(1) 훈련대상

○ 하천, 강변지역으로서 풍수해 상습발생 지역

○ 저지대 침수지역, 기타 집중호우시 피해우려 지역

(2) 훈련중점

○ 영농·어업용 시설물·방파제등 방재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 민방위대 및 유관기관·단체 긴급동원 및 사태수습

○ 주민대피, 인명구조, 이재민수용, 구호 및 방역

○ 댐 배수문 개문대비 주민대피훈련(별첨)

(3) 훈련실시요령

○ 훈련지역은 실제 수해상습지나 수해우려지역을 선정하여 실시

○ 방재관련 기관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사전 세부계획 수립

○ 훈련진행은 기상예보 발령에 따라 한단계 앞서서 사전대비조치

• 수해우려지역 예찰 → 위험지역주민 대피 → 필요인력, 자원의 총동원수습 → 이재민 위로 및 구호대책등 재난단계별 표준 행동요령에 의한 행정조치

○ 훈련종료후 관내 취약지역의 점검 및 수방기자재 관리요령 교육

댐 排水門 開門對備 住民待避訓練

(1) 훈련대상

○ 댐관리기관과 배수문 개문시 피해예상지역 주민

(2) 훈련내용

○ 댐배수문 개문 경보전달체계 확립 및 전파요령 숙지

○ 주민대피 소산 및 수용구호

○ 인명구조, 응급복구, 방역등 사태수습

(3) 훈련방법

○ 실시단을 편성하여 도상훈련 실시

○ 실제훈련이 가능한 사항은 실제훈련 실시

(4) 훈련중점

○ 댐수계를 중심으로 행정구역 경계인접 기관간에 공동방재 권역을 설정하여 사태별 임무분담 및 협조체제 유지

○ 사태별 인력 및 장비동원체계를 수립 점검

○ 댐수계별 경보전파체계를 구성하여 댐관리사무소에서 담수 방류전 해당지역의 시군 상황실에 경보전파

○ 댐방류시 피해예상지역 주민대피 및 소산

○ 재난수습 지휘통제소 설치, 복구자재, 장비 지원 및 수용구호

(5) 훈련시 검토사항

○ 훈련시 적용하는 일체의 자료가 실제상황시 적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훈련의 실제성 제고

○ 피해예상지역의 마을별 주민현황 파악 및 소산·대피대책

○ 댐관리사업소와 피해예상지역 마을간의 경보체제 확보

○ 주민대피에 따른 수용구호·방역·홍보·교육대책

海溢對備訓練

(1) 훈련대상

○ 해안지역(어촌, 도서, 낙도등)

(2) 훈련중점

○ 해일피해가 예상되는 해안선 예찰

○ 경보전파 및 주민행동요령 교육

○ 주민과 어선 대피소산, 이재민수용, 구호 및 방역

○ 민방위대 및 유관기관 지원체제확립 및 응급동원

(3) 훈련실시요령

○ 기상예보 청취, 지역민방위대 순찰조 편성, 해안선 예찰활동

○ 훈련현장에 수방중장비등을 최대한 동원하여 방파제복구 등 훈련실시

○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응급구호 및 방역, 응급복구활동 병행실시

○ 훈련진행은 기상예보에 따라 사전조치할 사항을 체계적으로 전개

• 해안지역 경보전파 → 대피지역 사전점검 →대피준비(노약자 우선대피, 필수 가재도구준비등) → 피해응급복구 → 이재민 구호 → 방역소독

○ 훈련종료후 해일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

雪害對備訓練

(1) 훈련대상

○ 농어촌 산간대설지역, 빙설등으로 인한 인명·시설피해 예상지역

○ 도심지역, 교통혼잡 및 사고다발 지역

(2) 훈련내용

○ 위험지역 예찰 및 방재점검

○ 주민 및 차량통제, 고립지역주민구조 및 구호

○ 도로변정비, 눈사태, 붕괴위험요소 점검보수

○ 모래함 설치, 제설용장구, 물자 점검확보

○ 도심지역 차량소통대책 강구 등

(3) 훈련실시요령

○ 훈련지역은 대설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실시

○ 주요 차량요충지에 모래함, 염화칼슘등 비치여부 점검

○ 고립지역 인명구조 및 피해지역 응급복구훈련 병행 실시

○ 재난상황은 고갯길등에서의 차량사고 훈련과 아울러 축사, 비닐하우스등 붕괴, 고립지역 대책, 선박침몰등 재난상황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함.

○ 종합적인 설해에 대한 동시대응 훈련이 어려울 경우 도상훈련 병행실시

○ 경찰 및 도로관리기관과 인근지역, 직장 민방위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

斷電·斷水·通信杜絶 對備訓練

(1) 훈련주관

○ 시군 업무주무부서 및 공급시설 등 유관기관

○ 민방위부서에서는 종합지원

(2) 훈련대상

○ 국가보안 목표시설, 주요기관 및 시설(가입자)

○ 대량수용시설(제조업체, 고층건물, 호텔등)

○ 공급시설

- 단전 : 한전, 발전소, 변전소 등 전력공급시설
- 단수 : 수원지, 정수장, 수도사업소, 배수장등
- 통신두절 : 한국통신(지사), 전신전화국(통신기관실)

(3) 훈련참가

○ 수용시설 전종사원, 가입자, 공급시설

○ 인근 민방위대원, 경찰, 소방, 의료등 유관기관·단체

(4) 훈련실시요령

○ 지역, 시설규모등을 고려하여 실제 및 도상훈련 병행실시

○ 훈련시간은 수용시설, 공급시설 상황을 고려하여 자체결정

○ 훈련대상 지정은 훈련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

- 생산업체는 그 업체의 성수기를 감안 훈련시기 조정
- 통신두절훈련은 한국통신과 사전 긴밀한 협조하에 훈련실시

○ 지역주민에게 단수대비훈련을 실시하여 비상급수시설의 위치 확인 및 사용요령을 숙달시켜 유사시에 대비

(5) 훈련절차

○ 훈련상황 부여 (통제관)

• 민방위대장 또는 대원, 공급시설 관련자, 대량수용시설주에게 메세지에 의한 가상재난상황 부여

※ 직장의 경우 일부 부서 실제 단전, 단수, 통신두절 등 훈련

○ 대응방법

① 수용시설

• 피해시설, 피해상황을 관련기관·단체와 행정기관에 신고

• 비상대체자가시설 가동

– 자가발전기를 가동하여 컴퓨터·냉방시설 공급과 주요장비의 긴급 제공

– 비상급수시설을 이용하여 지하수 취수 및 정수저장

– 무선통신망 활용 통신소 등 중앙부처 행정통신망 활용 체제 점검

② 공급시설 (한전, 한국통신 등)

• 피해상황 파악, 해당지역에 전파

• 비상공급시설 가동, 대체공급시설 활용 필수수용부서에 공급

• 피해시설 응급복구

– 복구용 장비, 물자 확보, 관리상태 점검

– 복구절차 요령 숙달, 민방위 기술지원대 활용

– 복구계획수립 등 단계별 대책 강구

· 단전·단수·통신두절시 주민행동요령 홍보계도

地震對備訓練

(1) 훈련대상

○ 전국 일원

○ 지진다발 지역 및 도시지역 중점실시

(2) 훈련중점

○ 지진시의 초동조치

• 정확한 징후포착 및 신속한 전파, 주민행동요령 사전숙지등

○ 안전대피유도 및 주민통제

○ 재난수습 및 응급복구

○ 복합적인 재난 대응능력 배양

• 인명피해, 건물붕괴, 단전·단수·통신두절, 화재 등

(3) 훈련진행(예시)

○ 훈련개요 및 지진의 특성설명

○ 약진상황 부여

• 약진발생 전파(마을·직장단위 앰프방송 활용)

• 약진발생시 행동요령 홍보(강진발생 사전대비 사항등)

○ 강진상황 부여

• 안전한 곳으로 긴급대피 및 개인보호 행동요령 홍보

• 피해상황 : 인명피해 및 건물파괴, 화재발생, 가스누출, 단전·단수사태등

○ 지진피해 수습

• 현장지휘소 설치 → 비상연락망 가동 → 인력, 장비투입 수습 → 훈련종료 → 강평 및 격려

○ 전단배포등 지진대비 기본행동요령 대국민 홍보전개

(4) 훈련실시요령

○ 지진발생 초기에 신속한 경보전파와 효율적인 주민대피 방안 강구

○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응급복구훈련등 병행실시

○ 다양한 사태발생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처방안 모색

○ 관내 유관기관·단체와 긴밀 협조, 인적·물적자원의 총체적 참여

○ 재난단계별 표준행동요령에 의한 사태수습체계의 정립

○ 대국민 지진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대대적 홍보계획 수립

○ 행정기관이 취해야 할 기본적인 사태수습절차의 체계화 및 훈련모델 개발 반복훈련 실시

有毒가스·化工藥品등 危險物 對備訓練

(1) 훈련대상

○ 산업용 유독가스, 화공약품 취급업체 및 업소

○ 유독가스, 유류공급업체 및 업소

○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지역주민

(2) 훈련주관

○ 가스, 화공약품등 취급업체, 업소

○ 시, 군의 업무주무부서

○ 민방위부서에서의 종합관리

(3) 훈련내용

○ 피해시설 예방대책 점검

○ 경보전파 및 재난대책본부 설치운영

○ 대피, 소산, 응급구호등 긴급방재조치

○ 경보전달요령 및 주민행동요령 교육

(4) 훈련실시요령

○ 위험물취급 관련업체와 사전협의 및 적극 참여하에 추진

○ 피해예상지역 주민에 대한 대피 및 이재민 구호대책 강구

○ 훈련현장에 위험물사고수습 장비, 물자의 적극동원

○ 훈련종료후 가스등 위험물 안전사용요령, 방호용 방독면 사용 요령등 홍보교육 실시

消 防 訓 練

(1) 훈련대상

○ 시장, 백화점, 지하상가, 대형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 호텔, 여관, 병원, 공연장, 다중집합장소

○ 대형 고층건물, 복합건물, 건물밀집지역등

(2) 훈련내용

○ 소방기구·장비등 점검정비

○ 화재발생 상황보고 및 경보전파

○ 자위소방활동 및 대피, 인명구조

○ 화재진화·응급복구활동

(3) 훈련실시요령

○ 훈련장소는 화재시 대량 인명사고 발생우려가 있는 도심지 고층건물과 아울러 재래시장, 지하상가, 건물밀집지역등 화재 취약지역 선정 실시

○ 재난상황을 규모있게 설정하여 인명구조 헬기, 고가사다리차 등을 동원하여 입체감과 실제감 있는 훈련 실시

○ 소방대원 위주의 훈련보다는 경찰, 민방위대원등에 대한 역할을 부여하여 지역단위의 총체적인 훈련 실시

○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비 철저

大型交通事故 對備訓練

(1) 훈련대상

○ 지리적 여건상 육상·해상사고가 빈발하는 지역

○ 차량사고발생시 대형사고가 우려되는 지역

○ 차량사고예방 및 수습을 위하여 민방위의 역할이 필요한 지역

(2) 훈련중점

○ 차량사고대비 도로, 안전시설 일제점검 보수

○ 차량사고발생시 효율적인 인명구조활동 및 사고수습훈련

○ 민방위대원의 참여역할개발 및 장비물자 지원방안 강구

○ 유관기관 상호지원 협조체제 강구

(3) 훈련실시 요령

○ 육상차량사고대비

- 사고수습훈련은 대형재난 또는 민방위대원의 역할이 요구되는 훈련상황을 설정하여 실시
- 육상차량사고예방 및 수습에 따른 관계기관, 단체의 적극 참여 유도(경찰·소방 119구조대, 운수업협회, 자동차보험사, 의료기관, 차량견인업체 등)
- 차량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응급조치, 긴급후송, 차량통제, 사고수습대책반 활동 등 필요행정절차의 체계적 운용 등

○ 유도선 사고대비

- 유도선 안전점검, 인명구조장비, 승선정원점검, 운항시간 준수 등 사전 재난대비사항 점검

- 유도선 사고를 가상하여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신속한 연락·지원협조체제 확립
- 선박사고대비 인명구조훈련과 사고수습대책반 가동 등 필요 행정절차의 체계적 운용 등
- 훈련종료후 관내 전유도선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해상차량사고대비

- 여객선, 유조선 등 인명 및 오염사고등을 가상하여 신속한 연락·지휘체계 확립
  - 해양경비정등에 긴급연락, 구조헬기 요청, 필요장비의 신속지원등
- 사고대비 인명구조훈련과 사고수습대책반 가동등 필요 행정 절차의 체계적 운용
- 해상차량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훈련시 민방위대원의 사고수습 역할 분담
  - 수상인명구조대원 참여, 필요 민방위장비·물자지원 등

라. 道單位 示範訓練의 內實運營으로 效果 提高

〈민방위와 재난관리기능 공조, 종합적 활성화〉

○ 읍, 면 단위에 국한된 지엽적·미시적인 시범훈련 탈피
○ 도 단위 시범훈련으로서의 역할기능에 부응한 거시적훈련 시연
○ 훈련참관 확대등으로 훈련분위기 조성 및 파급효과 극대화

〈方　針〉

○ 민방위의 날 사태수습 및 방재훈련시 1개 시·군 선정 윤번제 실시

○ 도 단위 시범훈련대상 시·군은 시범훈련 총력지원체제 운영

○ 시범훈련 효과 실질적 파급확산 및 민방위에 대한 인식 제고

〈推進計劃〉

□ 訓練 槪要

(1) 훈련운영 : 연 7회 (3, 4, 5, 6, 9, 10, 11월)

○ 민방위의날 사태수습훈련 및 방재훈련시 60분 정도 실시

○ 월별·계절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종목 선정 실시

(2) 훈련주관 : 시·군

○ 훈련지역의 해당 시·군 자체 추진, 도 적극 협조

○ 전국 훈련에 비례한 훈련규모 및 참관범위 확대

(3) 훈련참여

○ 민방위대원·주민·경찰·소방·군부대

○ 한전·적십자사·보건소·유관기관·단체등 공동시연

□ 各 市·郡 輪番制 實施

(1) 취약재난등을 감안 시범훈련 대상 시·군 선정

○ 가급적 '96년도에 도단위 시범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시·군 선정

○ 훈련시기별 취약재난과 관련있는 시·군 선정

□ 示範訓練 運營을 위한 總力支援體制 確立

(1) 시장, 군수의 깊은 관심 속에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시장, 군수가 도 단위훈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 필요한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지원

○ 훈련준비 및 운영상황을 직접지휘하고 참관

(2) 시범훈련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98민방위 관련예산 배정과 연계

○ 민방위 시책평가시 가점부여 등

(3) 방재유관기관 및 인접 시·군 등의 지원 협조

○ 소방, 경찰, 통신, 전기, 가스등 각급 방재기관·부서간 긴밀한 협조체제 확립

○ 인접 시·군은 훈련지역내에서 확보가 어려운 인력장비 지원

□ 參與·參觀範圍 擴大로 道單位訓練으로서의 役割機能 活性化

(1) 시범훈련 최대한 참관

○ 각 시·군의 방재 유관기관·단체 관계관, 민방위대 간부 등

○ 시범훈련 종목과 유사한 재난관련지역 중점참관

□ 示範訓練 效果의 實質的 波及 擴散

(1) 재난상황에 맞는 새로운 훈련기법 개발

○ 지역실정·재난상황에 맞는 현실감 있는 훈련시나리오 개발

○ 실제감 있는 효과음향 사용으로 입체감 있는 훈련 시연 등

(2) 훈련상황을 녹화하여 기록유지

○ 훈련진행과정을 녹화하여 전 시·군에 배포

• 해당 시·군 녹화 제작

○ 유사훈련의 모델, 표본 및 민방위교육훈련 교재 등으로 활용

□ 各種 附帶行事 開催 民防衛 意識 擴散

(1) 민방위의 날에 맞는 토론회 등

○ 안보, 안전관련 특별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등

(2) 민방위관련 장비·작품전시 등

○ 장비전시회, 사진, 미술작품전, 웅변대회 등

마. 學校訓練의 活性化를 통한 民防衛意識 擴散

○ 초·중·고 대학의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피시간에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육실시

○ 학교에서 부터 민방위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국가안보의식과 안전문화 정착 기반조성

〈그동안 運營實態〉

○ 민방공훈련시 각급학교별 수용인원을 감안하여 자율대피토록 운영해 왔으나, 교실내에서 대기하거나 훈련중에 수업을 하는 예도 있음.

○ 대피시간중 전시행동요령 등을 교육하면서 알차게 운영하는 학교도 있으나, 무의미하게 보내는 예도 많음.

○ 대체로 성인중심의 획일적인 훈련인식으로 실정에 맞는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方　針〉

○ 교육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각급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병행하여 추진

○ 실제대피 및 대피시간중 청소년 생활민방위교육 실시

○ 훈련시범학교 지정운영 및 홍보강화로 분위기 조성

○ 훈련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지원 강화

〈推進計劃〉

□ 待避要領

○ 경보발령과 동시에 학생과 전교직원이 대피함을 원칙으로 함

○ 대피시에는 대피시설 수용규모감안 학년별, 반별 윤번제 실시대피

○ 다만 대피시설이 없는 학교는 강당·체육관등을 훈련목적의 대피소로 지정 활용

○ 대피전담교사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피유도

□ 待避中 青少年 生活民防衛教育 實施

○ 교육대상 : 전 교직원과 학생

• 실제 대피한 학생은 대피소에서, 교실내 잔류학생은 교실에서 교육

○ 교육내용 : 안보·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청소년 생활민방위 교육

- 안보측면 : 전시행동, 주민신고, 생활민방위 강의, VTR상영
- 안전측면 : 화재, 풍수해, 물놀이, 차량사고 등 예방수습요령

○ 교육방법 : 각 교실과 대피시설내 시청각 교육시설 활용

- VTR상영, 강의, 실기·실습 등

○ 교육강사 : 민방위 담당교사, 관계전문가, 119구조대원 등

○ 교육시간 : 20분간

□ 民防衛訓練 示範學校 指定運營

○ 시범학교 선정

- 각 교육청, 학교와 시·군이 협의하여 선정, 시·군별 초·중·고 1개교 이상

○ 시범학교 운영방법

- 카-드화 하여 학교·읍면동·시군 단위에서 비치관리

  ※ 카-드 양식은 추후 통보

- 민방위 전담교사가 훈련운영 상황 책임기록 관리

□ 關係機關의 體系的인 支援·協調

○ 지원 추진체계

구 분	행 정 기 관	교 육 기 관
중앙단위	내무부 : 교육훈련과	교육부 • 대 학 : 대학지원 총괄과 • 초중고 : 초중등 교육실 지방교육지원과
도 단 위	도 청 : 민방위 비상대책과	도교육청 : 중등 장학과
시군단위	시군청 : 민방위 재난관리과	시군교육청 : 중등 장학과

○ 지원·협조사항

- 시·군과 교육청간 협의, 각종 교육교재 제작
- 관계분야 전문가, 교재, VTR, 정보·자료, 상호지원 협조
- 기타 원만한 훈련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지도·지원

※ 도, 시·군 교육청에서는 매 훈련시 훈련운영 상황파악 관리

□ 訓練專擔 敎職員 選定 및 인센티브 提供

○ 훈련전담 교직원 선정

- 대 상 : 이론·실기 전담교사, 대피유도전담교사
- 선정기준 : 이론·실기교사(청소년 민방위강사 활용)
  대피유도교사(실제대피 학생 100명당 1명)
- 선정방법 : 학교장이 시군, 읍면동과 협의하여 선정

○ 관계직원 및 우수민방위훈련 시범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 훈련전담 교직원에 대한 자체 민방위교육 인정(연간 4시간)
- 각종 표창수여, 선진지시찰, 시범학교 민방위 활동 테잎 제작, 배부

□ 學校 民防衛訓練 弘報 强化

○ 민방공훈련시 시범학교 훈련상황 현장실황중계, 생방송(전국방송)

○ 지역단위 각종홍보매체 활용, 우수사례 홍보전파

바. 職場·團體訓練의 先導的運營으로 地域單位訓練 促進

○ 우리사회의 핵심층으로서 분위기조성과 여론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각급 직장·단체등의 훈련을 선도적으로 운영

○ 직장·단체부터 안보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면서 지역단위 민방위훈련을 이끌어 가는 촉매역할 담당

〈그동안 運營實態〉

○ 민방위훈련 모습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주요도로변등은 상당한 수준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 대형건물, 직장·단체등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은 소극적·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아

○ 전반적인 훈련분위기를 위축시키고 있어 유사시 안보·안전 관리상에 문제가 있음.

〈方　針〉

○ 각급 직장·단체등의 훈련참여 범위와 행동요령등을 체계화

○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직장·단체들이 민방위훈련에 솔선수범하고 선도적으로 운영

○ 직장·단체의 실정을 감안하여 필수근무요원을 제외한 전임직원이 훈련에 참여

○ 실제대피·실기실습 교육과 실정에 맞는 재난대비 훈련을 지역과 직장실정에 맞게 특색있게 운영

〈推進計劃〉

□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직장·단체의 훈련참여 확대

訓練參與 基準

○ 현행 대피훈련은

- 전국 읍단위 이상지역과 면단위 주요지역의 전주민과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러므로 훈련지역내의 모든 직장·단체는 훈련에 참여해야 함

○ 사태수습 및 방재훈련은

- 지역·직장 실정에 따라 자율실시 하되 해당 시군과 협의 추진함으로써 훈련효과 제고
- 특히 화생방·화재·위험물 등에 대비한 자체특성훈련 중점추진

待避訓練 參與範圍 및 行動要領

— 모든 직장이 참여하되 특성에 맞게 원만한 운영 —

분 야 별	행 동 요 령
○ 지방의회가 개회중일 때	○ 민방공대피훈련은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므로 개회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다만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의사일정 시간조정
○ 법원에 재판중일 때 (사법부)	○ 재판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다만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재판일정 시간조정
○ 방송사 방송중일 때	○ 라디오 방송은 훈련실황방송을 각 방송사별로 실시 ○ TV방송사는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게 방송시간 조정 ※ 연간 훈련일정 사전통보, 방송프로그램 작성에 반영
○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중일 때	○ 응급환자와 병상에 있는 환자는 실내 안전보호 ○ 응급환자를 진료중인 의사를 제외한 의사·보호자·기타 병원관계자는 참여

분 야 별	행 동 요 령
○ 운동경기 중일 때	○ 경기중이라도 대피훈련에 참여 예) 축구·야구·농구·핸드볼·럭비·경마·복싱·태권도·육상·유도·역도·수영등 ○ 다만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시간조정
○ 학교에서 수업중일 때	○ 수업을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 ○ 학교별 대피소 수용인원만큼 학년별 윤번제 대피 • 대피시설이 없는 학교는 강당·체육관 등을 훈련대피소로 활용 ○ 대피시간중에는 청소년 생활민방위 분야 교육·훈련 실시 ※ 세부내용은 학교훈련 분야 참조
○ 고속도로 운행차량·철도·선박 등 교통수단	○ 운행중인 경우 미통제 ○ 출발전인 경우는 출발통제 ※ 운수관련협회(단체) 등에 훈련일정 통보
○ 생산공장	○ 생산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훈련참여

분 야 별	행 동 요 령
○ 사무실 등에서 근무중인 직장·단체	○ 업무의 특성과 기술적 측면을 고려하여 필수요원 1-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자는 모두 훈련에 참여
※ 각급 직장·단체 등에서 회의중일 때	○ 회의와 집회중이라도 훈련에 참여 ○ 다만 훈련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회의일정 시간조정
○ 전기·통신·소방·의료 기관	○ 소방·응급복구·긴급구조방비 및 인원 적극 참여 ○ 훈련참여 직원외 인원·장비는 비상대기
○ 위험물 취급업소 예) 염소·포스겐·가스업소 등	○ 필수요원제외·종사원 대피훈련 참여 ○ 직장민방위대원 직장사주경계 ○ 관련 시설물 안전점검
○ 은행·증권·보험 등 각종 금융기관	○ 일상업무 중단·훈련참여 ○ 입·출금 중지 및 고객 안전대피
○ 공사장·건설현장	○ 정상적으로 작업계속 수행 ○ 다만 종사원·장비의 도로 주행은 통제

분 야 별	행 동 요 령
○ 군 부대	○ 주요 군작전로 교통통제(대상지정) ○ 훈련공습경보중에는 가상적기 출동 ○ 사태수습훈련시 제독차·장갑차등 기동장비 출동, 지역단위 훈련지원
○ 경 찰	○ 주민 및 교통통제, 주요시설경비 강화, 장비지원, 출입통제
○ 다중집합장소 예) 역·터미널·백화점·호텔·다방·음식점	○ 훈련기본원칙에 따라 건물지하나 가까운 대피소로 신속대피 ○ 대표(업주)는 정부 훈련실황방송을 청취하도록 유도 ○ 훈련지도요원 집중배치(시군)
○ 개인업소 예) 노래방·단란주점·도서관 등	○ 종사원·고객 신속대피 ○ 자체 안전점검 강화 (화재·유독가스 대비)
○ 위락시설단지 예) 공원·골프장 등	○ 운영중인 각종 위락시설 운행중단 ○ 입장객의 안전대피 유도 ○ 매표작업 중지 및 입장객 출입통제

□ 協調事項

○ 직장·단체별 업무계획 수립시 훈련계획 반영, 매 훈련시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현실감있는 훈련실시(사태수습훈련, 방재훈련)

○ 직장·단체별 대피시설, 안내표지, 방송청취시설 등을 자체 정비하여 원만한 훈련운영이 되도록 조치

○ 분야별 행동요령에 의한 실질적 대피훈련으로 지역단위 훈련분위기 조성과 파급확산에 선도적 역할 수행

○ 입간판, 현수막 개첨, 훈련안내·실황방송 청취 및 홍보강화

○ 인근주민, 민방위대원 훈련참관 유도, 안보·안전 인식공유

사. 民防衛隊員 非常召集訓練

○ 평소응소능력 점검으로 유사시 비상대비태세 확립

○ 제대별 임무고지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등 대응력 배양

〈方　針〉

○ 비상소집 기간확대, 지역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 대원편의를 도모하면서 응소율 제고등 훈련효과 거양

〈推進計劃〉

□ 實施基準

○ 주　　관 : 시장 · 군수(읍 · 면 · 동장)

○ 대상 · 회수 : 전민방위대원 대상 연1회(불참자 보충교육 실시)

○ 소 집 시 기 : 2월 중순, 시군별 또는 지역·직장대별 실시

• 일시 소집으로 인한 대원과 출근시민들의 차량불편 해소

○ 소 집 방 법 : 예고훈련, 필요시 불시훈련 가능

□ 訓練時間 運營

○ 발령시간 : 오전7시를 전후하여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가 발령하되 실정에 맞게 탄력적 운영

○ 응소시간

• 지역민방위대　　: 발령시간후 30분 이내

• 직장 · 기술지원대 :　〃　　60분 이내

□ 訓練內容(應召訓練)

○ 비상소집발령후 전민방위대원은 응소시간내 지정된 장소에 응소

○ 출석확인 및 대원의 제대편성 확인, 임무 · 역할 등 교육

○ 거주지 대피소별로 분할응소하여 대피시설확인, 점검정비

○ 각종 재난시 국민행동요령, 생활민방위관련 정보제공 등

※ 대리참석자 근절 : 신분증 대조확인, 사전홍보 강화

□ 召集 및 訓練場所

○ 지역민방위대 : 유휴지, 회관, 학교운동장, 대피소 등

○ 직장민방위대 : 직장내 회의실, 강당, 운동장, 대피소 등

○ 기술지원대 : 시·군 회의실, 강당, 운동장 등

□ 訓練計劃樹立 및 指導監督

○ 지역민방위대 : 시장·군수(읍·면·동장)

○ 직장민방위대 : 시장·군수(직장민방위대장 협조)

○ 기술지원대 : 시장·군수(기술지원대장)

□ 召集單位 및 運營主管

대 별	운 영 주 관
통·리민방위대	통·리 민방위대장
직장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	기술지원대장(시장·군수)

□ 召集通報方法(豫告召集)

○ 지역민방위대 : 공공게시판·아파트단지입구 게시판·마을앰프 등을 이용, 사전예고

○ 직장민방위대 : 구내게시판 · 방송 · 공문 등을 통하여 사전예고

• 소집시간, 장소등을 정확히 예고, 훈련소집통지서 발부는 금함

※ 불시소집 훈련실시 필요시 비상소집연락체계, 신고망, 전화등 이용

□ 訓練不參者 補充召集訓練(2回 運營)

○ 1차 보충소집훈련 : 읍면동단위 소집훈련(당초훈련 불참자)

○ 2차 보충소집훈련 : 시군 단위 소집훈련(1차훈련 불참자)

※ 2차소집 불응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확행

5－4 民防衛訓練 效率性 提高施策

가. 民防衛訓練의 評價機能 强化

○ 훈련상황을 불시 현지확인 점검하여 시책 평가에 반영
○ 훈련결과를 종합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보완대책 강구

〈方　　針〉

○ 훈련상황 현지 불시점검은 훈련당일 운영실태 중점확인

○ 훈련결과 평가는 훈련종료후 종합평가·분석

〈推進計劃〉

□ 民防衛의 날 訓練 不時點檢

○ 점검일시 : 매월 민방위의날 훈련

○ 대상지역 : 시군훈련현장

○ 점검방법

- 과·계장 및 실무자로 점검반 편성운영
- 각종 훈련종목별 평가표에 의거 훈련현장 확인점검
- 지방은 중앙계획에 준하여 자체계획에 의거 운영

○ 평가관리

- 연중 훈련결과를 평가하여 시군별 연말 종합평가에 반영
- 훈련실시결과 문제점 집중발굴 차기훈련에 개선반영

• 우수사례는 여타 시군에 파급 확산하여 훈련의 질적향상 도모
• 훈련실적이 탁월하다고 평가되는 지역대 및 직장은 표창상신

□ 民防衛訓練 實施結果 評價

○ 매월 민방위의 날 훈련 실시 결과를 평가·분석
○ 도출된 문제점 개선, 차기훈련에 반영등 지속적인 발전방안 강구

나. 民防衛訓練 弘報 强化

○ 훈련내용과 국민행동요령등에 대한 다양한 홍보·계도활동 전개
○ 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써 훈련분위기 조성 및 훈련효과 제고

〈方　　針〉

○ 중앙단위 홍보는 훈련안내·실황·평가방송 등 기획홍보 중점
○ 지방단위 홍보는 지역매스콤등 활용 훈련분위기 조성에 중점

〈推進計劃〉

□ 民防衛의 날 訓練企劃放送

(1) 訓練放送 區分

— 전국단위(공통) 방송과 지방단위방송으로 구분 운영 —

○ 전국단위방송 : 내무부 주관

- 민방공훈련시 안내, 실황, 평가방송등 총체적 운영
- 방재훈련시 안내 평가방송

○ 지방단위방송 : 도에서 협의하여 주관

- 방재훈련시 현지실황방송

※ KBS 대전방송총국 자체 실황방송 운영

(2) 訓練放送 實施

○ 훈련안내방송 : 내무부 교육훈련과장(전국단위방송)

- 대상방송 : TV(KBS, MBC, SBS), 라디오 방송사
- 방송일시 : 훈련하루전 방송사별로 방송(3~5분 정도)
- 제작방법
  - 라디오(녹음) : KBS라디오(MBC, SBS, CBS에 복사 배부)
  - TV(녹화) : TV 3사 순번녹화
- 방송내용 : 훈련시간, 경보전파, 훈련종목, 행동요령, 협조사항

○ 훈련실황방송

① 민방공훈련 : 내무부 교육훈련과장, 관계전문가(전국단위방송)

- 대상방송 : 전 라디오 생방송(8개 방송사)
- 방송시간 : 훈련당일 경보발령중(20분간)
- 방송내용 : 주요 훈련내용, 행동요령, 조치사항 등
- 방송방법 : KBS-R 실황, 여타 방송국 KBS-R 수신방송

② 방재훈련 : 주관 방송국별 도 관계관 등 (지역단위방송)

- 지역별 방송국과 도가 협의하여 운영

○ 훈련평가방송 : 내무부 훈련담당(전국단위방송)

- 대상방송 : KBS 등 5개 라디오 방송사

- 제작방법 : 훈련후 KBS-R에서 녹음, 각 방송사 테-잎배부
- 방송일시 : 훈련후 방송사별로 방송(4~5분 정도)
- 방송내용 : 훈련결과 잘된점, 개선사항, 수범사례 등

※ 지역단위 방송시 방송주관 시·도 및 해당방송국

지 역 별	방 송 주 관	주 관 방 송 국
중 부 권 (충 남)	시·도별 순번제 운영	KBS 대전방송총국

(3) 訓練放送 一覽表

구 분	안 내		실황(라디오 방송)		평 가
	TV	라디오	전국단위방송	지방단위방송	(라디오녹음)
훈련시기 (월)			3, 6, 8, 11월	4, 5, 9, 10월	
훈련종목	민방공·방재		민방공훈련	방재 훈련	민방공·방재
방송일자	훈련 전일		훈련당일(14 : 00~14 : 20)		당일 훈련후
내 용	훈련 사전 안내		생방송(내용·현장중계)		성과분석·평가
방송지역	전 국	KBS, MBC SBS, CBS	전 국	지역KBS수신 중계	KBS, MBC, SBS CBS, TBS

※ 8월 불시훈련은 을지연습 기간중에 실시하고, 시간은 미지정

□ 地域·機關別 多樣한 弘報對策 講究

(1) 地域·機關別 弘報計劃 樹立 持續的 弘報 啓導

○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

- 홍보매체 : 라디오, TV, 신문, 유선방송, 마을앰프, 반상회보, 각종 게시판 등
- 계도사항 : 훈련일시 및 훈련내용, 훈련시간중 주민·가정·직장에서 해야할 일

○ 훈련참여분위기 제고 : 민방위 표상 등 적극 활용

- 지역순회 가두방송과 아파트구내방송 실시
- 전직장 입간판 설치 — "오늘은 민방위의 날"
- 민방위기 게양 : 도심지 주요가로변과 훈련장 인근지역

(2) 民防衛訓練 指導 및 統制强化

○ 훈련지도, 안전점검요원 복장 : 민방위복·모자 착용

○ 시설별 훈련지도담당자 지정운영

- 대상업소 : 다방, 음식점, 유흥장, 숙박업소, 복합건물 등
- 지도담당자 : 읍·면·동 및 보건소 공무원
- 지도내용 : 훈련시간중 훈련방송청취 지도, 고객대피안내 등

○ 협회·단체를 통한 계통별 자체지도

다. 訓練指導要員 活性化

○ 활동성이 미약한 요원은 기동성있는 요원으로 교체·정예화 도모

○ 사전소집교육후 대피 취약지역에 전담배치, 효과적인 대피유도

〈方　針〉

○ 요원의 임명 및 관리철저(개인별 카드화 관리등)

○ 시장·주택가·이면도로등 취약지역 전담지정 배치

〈推進計劃〉

□ 要員의 質的水準 向上

(1) 訓練指導要員의 精銳化

○ 지　역

• 임　명

– 읍·면·동장이 관내 민방위대원중 지도력있는 대원임명

– 훈련에 소극적이거나 지도활동이 미약한 대원교체

• 교　육 : 읍·면·동장 책임실시, 배치지역·임무 고지

○ 직　장

• 임　명 : 시장, 군수

• 대　상 : 직장대가 편성된 직장

• 지도구역 : 직장반경 300m 이내

(2) 名譽誘導要員 委囑活用

○ 위　촉 : 시장, 군수

○ 위촉대상 : 지하대피시설소유자 또는 관리인, 아파트경비원, 주차장관리인, 건물경비원, 통·반장등

○ 활　용 : 읍·면·동장 책임하에 근무지, 거주지에서 주민통제

□ 要員의 管理徹底

(1) 訓練指導要員

○ 배치계획의 합리적 조정운영

• 읍·면·동별 배치도 및 개인별 카드제작 활용

• 지도활동이 가능하도록 거주지 인근지역에 배치

• 시장·주택가 뒷골목등 취약지 중심배치

○ 훈련지도요원 근무상황 지도점검반 편성운영

• 시·군 간부공무원 훈련상황 점검시 불시점검

• 읍·면·동장의 순회지도

○ 출석관리 근무상황 감독철저

• 대피훈련시는 훈련실시 30분전 소집교육 실시

(2) 職場訓練指導要員, 名譽誘導要員

○ 활동지역·임무 고지

○ 요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격려, 간담회

○ 직장장이 관심을 갖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 要員의 士氣昂揚

○ 우수요원을 선발, 정기표창 및 부상지급

○ 민방위선진지 시찰 – 안정감 부여

라. 有關機關·團體間 協調體制 强化

○ 훈련유관기관·단체간의 긴밀한 협조·공조체제 유지
○ 역할·기능분담을 통한 일사불란한 훈련운영 도모

〈方　　針〉

○ 매훈련시 훈련계획 협의등 원만한 협조체제 유지
○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태수습 및 방재훈련 실시

〈推進計劃〉

□ 共通事項

○ 산하기관·단체·업체훈련의 계통별 지도지원, 협조, 독려, 평가
○ 민방위의 날 훈련과 중첩되지 않도록 각종 행사 일정 조정
○ 재난상습지역과 대형재난 예상지역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직장 민방위대가 참여하여 사전예찰·신고 및 비상동원체계 확립

□ 有關機關·團體別 協調事項

(1) 忠淸南道 敎育廳

○ 초·중·고에 대한 장학지도 부서에서 전담지도
○ 경보발령과 동시 실제대피(학년별 윤번제 대피)토록 지시
○ 대피시간중에는 안보·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육 운영 협조

○ 학생들의 학습과제에 민방위 포스터·글짓기·표어 포함

○ 민방위훈련 시범학교 지정운영 협조

○ 초·중·고 대피전담교사 지정, 훈련시 실제 대피유도

○ 기타 학교민방위훈련 홍보강화

(2) 忠淸南道 地方警察廳

○ 민방위의 날 훈련시 각급 경찰관서는 주민·차량통제 및 지도

○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지원 및 항·포구내 선발출입 통제

○ 어선·선박 대피훈련 협조

(3) 陸軍 제2162部隊

○ 민방위의 날 훈련 충청남도 주요훈련장 헬기 지원

○ 유독가스등 화생방 방호훈련시 군부대 제독전문요원 파견

○ 훈련시간중 전투기 발진 : 48개 주요도시에 기상적기 운용

- 전투기 발진은 공군작전사령부 계획에 의함

○ 지역 및 직장민방위훈련시 협조

- 시·군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 지역 및 직장방호훈련에 참여
- 각종 화생방 장비지원, 실제감 있는 훈련실시

(4) 韓國通信 忠南事業本部

○ 한국통신 충남사업본부 산하기관의 자체 특성훈련 지도

○ 통신두절 대비훈련 적극 참여

(5) 公報官室

○ 민방위의 날 훈련 안내

○ 지역신문·방송사를 통한 방송의뢰 등 홍보 협조

(6) 文化體育課

○ 각종 운동경기장 훈련참여 협조

○ 경보 및 훈련 실황방송 관중에게 전파

○ 유사시에 대비하여 운동장 관중 대피계획 수립 비치

(7) 保健課, 衛生課

○ 각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피훈련 지도

○ 산하 보건의료기관·단체등의 지역·직장 인명구조훈련 참여

○ 다중 집합장소 대피 훈련 참여 협조 : 다방, 식당, 이·미용업소 등

(8) 山林課, 海洋水産課

○ 민방위의 날 산불진화훈련 주관

○ 어선 대피훈련 주관 및 훈련 홍보 계도

(9) 交通行政課

○ 민방위의 날 대형교통사고 대비훈련 주관

○ 도내 각급 운수회사에 대한 훈련 계도 홍보

(10) 水資源課

○ 민방위의 날 풍수해 대비훈련 주관

○ 풍수해대책법에 의한 훈련 민방위의 날에 병행 실시

(11) 防護課

○ 민방위의 날 화재진압훈련 주관

○ 산불진화훈련시 소방대 참여

(12) 其他 有關機關

○ 소관사항과 관련되는 분야에서 각 지역·직장훈련 실시 및 산하 기관·단체 지시, 훈련협조 유도

5-5 行 政 事 項

□ 市郡別 '97年 訓練計劃 樹立·推進

○ 시·군별 특성에 맞는 자체훈련계획 마련·운영

○ 시·군별 계획을 '97. 2. 5까지 도에 보고

□ 月別 訓練實施計劃(結果) 報告

○ 연간 기본계획과 매 훈련시 시달되는 도 지침에 따라 월별 계획 마련·운영

- 실시계획 : 훈련실시 14일전까지
- 요약보고 : 훈련당일, FAX(3819) 보고
- 실시결과 : 훈련실시 3일까지(사진10매, 홍보사항 별첨)

□ 地域單位 有關機關·團體와의 協調體制 强化

○ 자치단체장의 솔선참여로 각급기관·단체장의 적극참여 유도

○ 학교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장학 지도기관(관련부서)과 다각적으로 협조·지원

○ 지역단위 직장·단체 훈련의 선도적운영을 위한 분위기 조성 방안 강구

○ 도단위 시범훈련의 참관확대 및 훈련상황 파급을 위한 제반 조치사항 차질없이 추진

〈報告書式〉

□ '97 訓練計劃

1. 民防空訓練

가. 민방공대피훈련 지도요원 - 계 명

훈련지도요원 (민방위대원)	명예유도요원 (통·반장)	안전점검요원	경 찰	행 정 공무원	비 고

나. 사태수습훈련 (단위 : 개소)

구 분	3 월	6 월	8월(야간등화)	11 월
계				
지 역 직 장				

2. 防災訓練(地域特性訓練)

월 별	중 점 훈 련	실 시 지 역		
		시 군	읍면동	지역수
		개시군	개읍면동	개소
4 월	○ 지진대비훈련			
5 월	○ 풍수해·해일대비훈련			
9 월	○ 건축물 및 교량붕괴, 대형교통사고 등			
10 월	○ 화재, 산불, 설해, 유독가스 대비훈련			

□ **月別訓練計劃 및 實績**

1. 月別 民防衛의 날 訓練計劃

가. 민방공대피훈련

○ 대피훈련통제요원 － 명 참여

－ 지도요원, 명예유도요원, 안전점검요원, 경찰, 기타로 구분

나. 사태수습·방재훈련

○ 실시지역 － 총 개 시군소, 개소

계		소 방		풍 수 해		○ ○ ○	
시군소	개 소	시군소	개 소	시군소	개 소	시군소	개 소

○ 참여인원

계	민방위	소 방	경 찰	군부대	기관·단체	주민등
명						

○ 동원장비

계	헬 기	소방차	구급차	전기·통신차	경찰차	○○○
	대					

다. 주요지역(직장) 훈련계획

※ 시군소별로 1개소를 선정하여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별지작성

라. 시장, 군수 훈련 참석 여부(참여, 불참)

2. 月別 民防衛의 날 訓練 實施結果

가. 훈련총평(성과)

나. 향후개선, 발전사항

다. 수범(특기) 사항

라. 주요지역(직장) 훈련내용

※ 시군소 1개소 주요훈련실적을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별지 작성

마. 홍보실적

※ 주요 홍보물 제작배포 실적등

바. 훈련장면 사진

※ 크기 5″×7″, 훈련지역과 장면설정 10매이상 제출

〈별첨1〉

乘車待機 許容地域

市郡別	地域 또는 道路名稱	距離(km)	備考
5 시	20개소	30.3	
천안시 (10)	민방위 02408－571('92. 9. 2) 호로 지정 대흥로(부성파출소－천안주유소－온양나들이－남부파출소)	4.5	
	천안대로(대흥(주)－한전 천안전력소)	3.7	
	중앙로(천안주유소－김명준외과－남부파출소)	2.1	
	충무로(터미널－교보－집합주유소－남부파출소 쌍용 지하도)	4.5	
	봉정로(순천향병원 입구－선정사거리)	1.7	
	백석로(천안주유소－성정사거리－천광주유소)	1.3	
	신부동(삼거리주유소－터미널－천안주유소)	0.9	
	대흥동(온양나들이－쌍용지하도)	1.2	
	원성동(김명준외과－교보－천안대로)	1.0	
	구성동(집합주유소－천안대로)	0.4	
공주시 (1)	민방위 13760－280('93. 6. 9)호로 추가지정 신관동 강변로(금강대교－공주대교 앞)	1.5	
보령시 (3)	역전로(대천역－현대상가)	0.4	
	중앙로(대림상사－명문당 사거리)	0.4	
	한내로(대천역－파래스 여관－한내대교)	0.7	
아산시 (3)	중앙로(동신국교－온양역－온양고)	1.3	
	충무로(온양역－충무교)	1.5	
	온양역－아산고－터미널	1.7	
서산시 (3)	시청－터미널	0.8	
	1호 광장－대림혼다	0.3	
	서부파출소－충청은행	0.4	

6. 民防衛施設·裝備 擴充 補强

6－1 民防衛 非常給水施設

6－2 民防衛 非常待避施設

6－3 民防衛裝備 擴充

6－4 民防衛 警報施設運營 管理

6－5 民防衛 警報施設의 擴充 및 現代化

6－6 民防衛 警報運營能力 培養

민방위로 뭉친마을

재난없는 우리사회

6. 民防衛施設·裝備 擴充 補強

6－1 民防衛 非常給水施設

〔方　　針〕

○ 상습 한해지역, 식수난 우심지역 등에 우선 설치

○ 비상시 대비를 기본목표로 하되 평상시에는 지역주민에게 깨끗한 지하수제공 등 평시 활용성과 연계하여 설치

○ 그라우팅, 케이싱 등 지하수오염 방지대책을 갖춘 시설 설치

〔推進計劃〕

가. 事業概要

○ 사업량 : 18개사업(국비1, 교부세 17)

○ 사업비 : 1,080백만원(보조 317, 지방비 763)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시·군별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국비	교부세	도비	시·군비	
계	18개소	1,080,000	11,000	306,000	381,500	381,500	
천안시	1	60,000		18,000	21,000	21,000	
공주시	1	60,000		18,000	21,000	21,000	
보령시	2	120,000		36,000	42,000	42,000	
아산시	1	60,000		18,000	21,000	21,000	
서산시	1	60,000		18,000	21,000	21,000	
논산시	1	60,000		18,000	21,000	21,000	
계룡출장소							
금산군	1	60,000		18,000	21,000	21,000	
연기군	1	60,000		18,000	21,000	21,000	
부여군	2	120,000		36,000	42,000	42,000	
서천군	1	60,000		18,000	21,000	21,000	
청양군	1	60,000		18,000	21,000	21,000	
홍성군	1	60,000		18,000	21,000	21,000	
예산군	2	120,000	11,000	18,000	45,500	45,500	국비 1 교부 1
태안군	1	60,000		18,000	21,000	21,000	
당진군	1	60,000		18,000	21,000	21,000	

나. 施設 設置基準

○ 규　　모 : 1일 100톤이상 생산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함

○ 부대시설

- 자가발전기 등 필수시설은 반드시 설치
- 지역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음수대 등은 실정에 맞게 설치

다. 事業推進時 留意事項

○ 지방비를 조기에 확보하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함. 사업예산 확보가 늦어 겨울철 시공 및 완공은 부실공사가 우려됨.

○ 장소선정시 오염원이 인근지역에 있는지 여부 등 주변여건을 신중히 고려하여 결정

라. 行政事項

○ 추진상황보고 : 매분기말

○ 보 고 서 식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및 유지관리지침에 의함 (서식 10)

6－2 民防衛 非常待避施設

〔方　　針〕

○ 시·군의 지휘용대피소, 충무시설 등으로 활용하면서 화생방 방호까지 가능토록하여 시범시설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건립

〔推進計劃〕

가. 事業概要

○ 사업량 : 논산시 200평(661m²)

○ 사업비 : 432,300천원(국비 129,688, 지방비 302,612)

나. 施設 設置基準

○ 사업별 200평(661m²)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함.

○ 전체구조

- 화생방 방호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
- 화장실, 세면장, 취사장, 공기여과기, 방독시설 등 구비

※ 세부사항은「민방위시설·장비확충및유지관리지침」참고

다. 行政事項

○ 추진사황보고 : 매분기말

○ 보 고 서 식 : 민방위시설장비확충 및 유지관리지침의「서식10」에 의함

6－3 民防衛裝備 擴充

〔方　　針〕

○ 민방위대를 기준으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장비품목 선정
○ 기관별 꼭 필요한 장비 우선순위에 의거 신규 구입

〔推進計劃〕

가. 事業概要

○ 대　　상 : 15개 시·군
○ 사 업 비 : 8,000천원(국비 2,400, 지방비 5,600)

〈시·군별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분 / 시·군	사업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계	8,000	2,400	2,800	2,800
천안시	533	160	187	186
공주시	533	160	186	187
보령시	533	160	187	186
아산시	533	160	186	187
서산시	533	160	187	186
논산시	534	160	186	188
금산군	533	160	187	186
연기군	534	160	186	188
부여군	533	160	187	186
서천군	534	160	186	188
청양군	533	160	187	186
홍성군	534	160	187	187
예산군	533	160	187	186
태안군	534	160	187	187
당진군	533	160	187	186

나. 購入對象裝備 選定方法

○ 시·군 또는 읍·면·동별 취약요인에 대비할 수 있는 장비 선정

○ 지금까지 일부품목을 지정 구입하였으나 당해 기관별 필수장비 위주로 구입

다. 其 他

○ 시·군에서는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부족한 장비에 대하여는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 확보

6－4 民防衛 警報施設運營 管理

〔方　　針〕

○ 민방위사태대비 상시 상황유지 관리체제 확립

○ 경보시설 정기점검, 보안유지 등 완벽한 경보망 관리운영

○ 민방위의 날 훈련경보 운영 철저

〔推進計劃〕

가. 運營管理要員의 狀況維持 管理體制 確立

○ 상황유지반 편성운영 24시간 상황유지

- 도 경보통제소 : 3명 3개반 주·야 교대근무
- 시·군 분배단말 : 주간 2, 야간 1(주간 1명은 장비점검정비)

○ 정비반 편성 정기점검 및 고장발생장비 현장점검 응급조치

- 통제소별 3명이상을 정비반으로 편성 시설장비 정기점검 및 고장 발생시 신속한 보수완료

○ 경찰청, 방송사, 군부대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수시점검

나. 警報사이렌 施設維持 管理 및 定期豫防點檢 强化

○ 경보시설별 유지관리 담당제 확행

- 시·군별 담당자를 지정 일상점검
- 경보단말 시설 이력카드 비치 시설관리에 적극 활용

○ 시·군 경보사이렌 시설 정기점검 철저

- 도 통제소 경보요원 월 1회 이상 현장점검

○ 장비이상 발생시 신속한 조치계획 수립시행

- 고장빈발 부위에 대한 예비부품 확보(민방공경보망 운영관리 지침 참고)
- 시·군별 예비품 목록 비치 고장시 상호대역 활용

○ 경보시설이력카드 및 사이렌점검결과 보고(서면보고, 별첨 1, 2 서식)

- 민방위경보 단말시설 이력카드 : '97. 3월까지(시군→도 경보통제소) (신설 및 교체로 인한 변동사항 일제 정리후 제출)
- 민방위경보사이렌 점검결과 : 매월 13~14일(시·군→도 경보통제소)

다. 警報施設에 대한 保安對策講究

○ 시설보안책임자 지정운영

- 도(정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부 : 경보통제소장)
- 시·군(정 :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부 : 민방위계장)

○ 단말의 보호구역 설정, 경보시설의 차단 및 엄호시설 설치

○ 시설보안 정기점검 기록유지 : 월 1회이상

라. 民防衛의 날 訓練時 警報運營 徹底

○ 훈련일시 : 훈련계획 지침참조

○ 취명주관

• 사이렌 경보 – 중앙단위 훈련 : 내무부(경보통제소)

– 지역단위 훈련 : 도(경보통제소)

• 경보방송 : 내무부(경보통제소)

○ 취명방법(사이렌)

• 중앙, 시·도 통제소에서 유·무선 자동취명을 원칙으로 하되

• 자동경보 미취명시는 시·군에서 직접 수동으로 경보취명

○ 장비점검 : 훈련실시 5일전 완료

• 경보사이렌 전체에 대한 일제 현지출장 점검

※ 점검결과 보고는 경보사이렌 점검결과(별첨 2서식)로 대체

○ 경보사이렌 취명결과 보고(시·군 → 도경보 통제소)

• 보고일시 : 훈련당일 15시까지

• 보고내용 : 서면보고(별첨 3서식)

– 수동·자동취명, 미취명원인, 조치계획 등 경보취명결과

6－5 民防衛警報施設의 擴充 및 現代化

〔方　　針〕

○ 최첨단 경보망 구성을 위한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추진

○ 경보운용시간 연장 등 사이렌기능 개선

○ 신도시 등 도시화지역에 경보사이렌 시설 확충

〔推進計劃〕

가. 警報사이렌施設 擴充

(1) 老朽警報사이렌施設 交替

○ 교체대상 : '90년이전 설치 노후된 경보사이렌

○ 교체보강 : 구동 모타사이렌→전자 앰프사이렌

○ 재　　원 : 중앙지원(지원 30%, 지방비 70%)

※ 특별·광역시는 지방비 예산으로 사업추진

○ 사 업 량 : 7개시군 12대

○ 사 업 비 : 240백만원

• 중앙지원 72백만원, 지방비 168백만원

(2) 警報사이렌施設 新·增設

○ 설치기준

• 읍이상 도시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 시·구지역에는 인구밀도에 따라 인구기준 6~8만명마다 사이렌 1대 증설

○ 설치대상 : 신도시 등 경보가청율 저하지역 및 읍신설 지역

○ 재　　원 : 중앙지원 30%, 지방비 70%

○ 사 업 량 : 6대(5개시군, 1출장소)

○ 사 업 비 : 300백만원

- 중앙지원 90백만원, 지방비 210백만원

(3) 行政事項

○ 계　　약 : 도(계룡출장소, 시·군)

○ 시방서 작성 및 기술감독 : 도 경보통제소

- 시방서에 수동재난경보 발령, 평시 앰프방송활용 등 기능보강

○ 기　　타

- '97 본 예산 미확보 시·군은 1회 추경에 반드시 확보
- 사업추진의 편의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조달 발주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도에서 일괄 발주 추진

시·군별 민방공경보 사이렌 확충내역

○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량		사업비	사 업 비				비 고
		신 설	교 체		국 비	교부세	도 비	시군비	
계	18	6	12	540,000	114,000	48,000	206,500	171,500	〈단가〉 신설 ·50백만원 교체 ·20백만원
국 비	13	4	9	380,000	114,000		133,000	133,000	
교부세	5	2	3	160,000		48,000	73,500	38,500	

○ 국비 시·군별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량		사업비	사 업 비			비 고
		신 설	교 체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13	4	9	380,000	114,000	133,000	133,000	
천안시	7	2	5	200,000	60,000	70,000	70,000	
공주시	2	−	2	40,000	12,000	14,000	14,000	
보령시	1	−	1	20,000	6,000	7,000	7,000	
서산시	1	1	−	50,000	15,000	17,500	17,500	
논산시	1	1	−	50,000	15,000	17,500	17,500	
연기군	1	−	1	20,000	6,000	7,000	7,000	

○ 교부세 시·군별 내역

(단위 : 천원)

시군별	사업량	사 업 량		사업비	사 업 비			비 고
		신 설	교 체		국 비	도 비	시군비	
계	5	2	3	160,000	48,000	73,500	38,500	
아산시	1	1	−	50,000	15,000	17,500	17,500	
계룡출장소	1	1	−	50,000	15,000	35,000		
부여군	1	−	1	20,000	6,000	7,000	7,000	
서천군	2	−	2	40,000	12,000	14,000	14,000	

※ 교부세 지원 예산은 시·군별로 1회 추경에 확보해야 함

나. 警報施設 現代化用役 事業推進

(1) 用役範圍

○ 민방위경보시스템 개념설계 · 목표설정

○ 현 시스템 정보통신기술환경 분석, 개선방안 설정

○ 유 · 무선, 위성통신망 설계 검토

○ 시스템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표준시방 작성

• 공정계획, 공사비내역, 자재구매계획 및 H/W, S/W설계

– 중앙경보시스템(통제소장비, 중앙방송사 및 주요기관경보장비)

– 지방경보시스템(통제소장비, 지방방송사, 중계 · 수신장비 및 경보사이렌 신설)

○ 시스템구축 비용산정, 추진일정 및 보고서 제출

(2) 事業主管 : 內務部

(3) 所要豫算 : 501백만원

(4) 用役期間 : 6개월('97. 3월 ~ 9월)

○ 유선분야 통신망 및 시스템 구축 표준설계, 시방서 작성

○ 무선분야 통신망 및 시스템 구축 표준설계, 시방서 작성

(5) 推進日程

○ 『용역개발추진단』 구성 및 과업지시서 작성('97. 1월)

○ 발주의뢰, 입찰공고 및 계약 ('97. 2~3월)

○ 연구용역 개발 ('97. 3~9월)

○ 용역개발 성과품 검수('97. 10월)

6－6 民防衛警報運營能力 培養

〔方　　針〕

○ 최신 정보통신기술 습득 및 경보운영능력 향상
○ 민방위경보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연찬

〔推進計劃〕

가. 警報要員 專門教育實施

(1) 中央單位 專門教育

○ 대　　상 : 중앙 및 시도 통제소 및 시·군 경보장비 담당자 통신기술 6급이하
○ 주　　관 : 지방행정연수원 민방위교육관
○ 기　　간 : 1주(비합숙)
○ 인　　원 : 7명(도 1명, 시·군 : 6명)
○ 내　　용 : 소양 및 직무관련 전문과목
  • 정보통신 네트워크, 데이타통신망 관리, 전파기술의 기초등
○ 행정사항
  • 교육 대상자 선발시 '96 교육 이수자 제외

(2) 市·道單位 수시教育

○ 대　　상 : 시·군·구·읍·면·동· 경보담당 공무원
○ 주　　관 : 도 경보통제소
○ 시　　기 : 상·하반기 2회이상(자체지정)

○ 기　　간 : 1일

○ 내　　용 : 수동경보전달 등 경보사이렌 관리요령

○ 행정사항

• 인사이동시 신규담당공무원 소집교육 실시

(3) 專門機關 委託敎育

○ 대　　상 : 통신기술 6·7급

○ 교육기관 : 정보통신관련 전문기관

○ 과　　정 : 정보통신기술, 위성통신 등 전문교육과정

○ 기　　간 : 1~4주

○ 내　　용 : 경보망운영을 위한 전문기술 교육

나. 民防衛警報業務 硏鑽會 開催

○ 개최시기 : '97. 6

○ 참석대상 : 경보담당 공무원(시·도별 2~3명)

○ 연구과제 : 유·무선 방송등 경보현대화 사업추진 방안

○ 과제발표 : 중앙 및 시·도 경보통제소장

○ 운영일정(2일간)

• 1일차 : 정보통신정책 특강 및 연구발표 토론

• 2일차 : 연구발표 토론 및 건의 사항 수렴

○ 행정사항

• '97. 2월중 시·도별 발표주제 선정 등 세부운영계획 시달

〈별첨 1〉

민방위경보단말시설 이력카드

①번 호	ADDRESS NO				④관리책임	. 정 :			
②단 말 명						. 부 :			
③경보전달책임						. 부 :			
⑤현설치장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설치위치 : 단독·부속/지상·지하( )층·옥상)								
⑥단말이전 년월일					⑦이전 사유				
⑧앰프출력	W	⑨혼스피커 출력	dB (5m이내측정)		⑩혼스피커 수	개	⑪가청거리	반경 km	
장 비 이 력									
⑫내 역	⑬규격	⑭가격	⑮제작사	⑯취득년월일	⑰교체년월일				
사이렌(AC, DC, 전자) 유선수신기 무선수신기 기 타									
⑱거주인구 (가청권인구)	명	⑲가청인구	명	⑳가청율	%				
㉑위치도									

관 리 책 임 이 관 내 역

이 관 ㉒ 연 월 일	이 관 ㉓ 근 거	관리전환한 ㉔관 서 및 물품관리관	이 관 ㉕ 연 월 일	이 관 ㉖ 근 거	관리전환한 ㉗관 서 및 물품관리관	관리전환받 ㉘은관서 및 물품관리관

수 리 및 운 용 내 역

㉙일자	적 요 ㉚(수리 내역)	수리및 ㉛ 운용처	㉜금액	㉝비고	㉞일자	적 요 ㉟(수리 내역)	수리및 ㊱ 운용처	㊲금액	㊳비고

〈별첨 2〉

'97. ( )월 민방위경보사이렌점검결과

□ 고장발생 총괄

(단위 : 회/분)

시·군별	대 상	장비상태		비상장비수리		고장원인 및 조치	비고
계	대						
○○시 ○○군 。 。							

□ 고장발생원인 및 조치

〈회선고장〉

(단위 : 회/분)

시·군별	고 장 발 생 원 인						4시간 이상 고장	회선료 반납	
	계	KTA 공사	회선 고장	선로 시험	교환기 고장	기타		반납	미반납
계	대								
○○시 ○○군 。 。									

※ 60분 이내 회선단절 제외

〈장비고장〉 (단위 : 회/분)

시·군별	설치 대수	고장발생원인						4시간 이상 고장	수리내용		
		계	모뎀	MCU	사이렌	전원	기타		자체	관내 업체	서울 업체
계									회	회	회
○○시 ○○군											

※ 60분이내 장비고장 제외

〈별첨 3〉

민방위의 날 훈련시 경보사이렌취명결과

(단위 : 회/분)

시·군별	수신 장치 번호	유선자동취명		무선자동취명		수동취명		미취명	
		공습	경계	공습	경계	공습	경계	사이렌	프리터
계									
○○시 ○○군									

※ 해당란에 "○"

※ 미취명 장비조치

○ 취명전 장비점검

• 점검일시 및 점검자

○ 미취명 원인

○ 조치내용(계획)

7. 化生放 防護態勢 確立

7－1 化生放 防護組織의 精銳化

7－2 防護裝備·物資普及 및 效率的 管理

7－3 化生放 敎育訓練의 內實化

7－4 化生放災難 防災對策 强化

민방위대 앞선나라
재난관리 선진조국

7. 化生放 防護態勢 確立

〔目　　標〕

○ 유사시에 대비한 화생방 방호역량 강화

○ 유독가스 누출사고등에 대비한 주민보호대책 강구

화생방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만전

〔方　　針〕

○ 화생방 방호조직의 정예화

- 화생방분대 조직을 지역의 취약정도에 따라 적정편성
- 행정기관의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및 협조체제 구축
- 화생방 담당공무원 및 분대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 방호장비·물자보급 및 효율적 관리

- 화생방 재난취약지역에 방호장비·물자 우선보급
- 보관관리 철저 및 유사시 대비 즉각 활용태세 유지
- 비상대피시설의 화생방 방호기능 보강

○ 화생방 교육훈련의 내실화

- 화생방 사태발생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강화
- 지역재난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교육·훈련실시
- 지역단위 제방위요소 합동참여 훈련실시로 대응역량 강화

○ 화생방재난 방재대책 강화

- 화생방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예방활동 강화
- 유사시 취약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7－1 化生放 防護組織의 精銳化

가. 民放衛隊 化生放分隊 編成

(1) 編成基準

○ 화학공단, 주요군사지역, 대도시지역 등 화생방 재난 취약지역은 증가편성, 농어촌·산간지역은 감소편성

○ 민방위대별 편성규모

• 기술지원대

– 시군 출장소 단위로 1개분대이상 편성

– 재난취약지역은 2개분대이상 편성

• 지역민방위대

– 동단위로 20개통당 1개분대 편성

– 재난취약지역은 10개통·리당 1개분대이상 편성

• 직장민방위대

– 대원수의 10%를 화생방분대로 편성

– 재난취약시설은 대원수의 20%이상을 화생방분대로 편성

○ 화학공단(석유화학단지)지역에 화생방기동대를 조직, 시범적 육성

• 대　　상 : 서산시(석유화학단지소재)

• 내　　용

– 기동대장은 화생방 담당공무원을 임명하고 일반대원은 시 본청 민방위대원중 관련자격을 갖춘 40세이하 젊은층으로 편성(1개대 12명)

– 유사시 즉각 출동가능토록 사태수습용 장비

(K－1 방독면, 보호의, 공기호흡기, 탐지・측정장비 등)를 통합 보관하고 출동차량 준비

- 운　　영 : 사고발생시 현장에 출동하여 주민안전 대피유도 등 보호조치

(2) 編　制

○ 1개 화생방분대는 12명 기준으로 편성(대원규모에 따라 조정)

○ 1개 분대는 통제, 탐측, 제독반을 두고 반별인원은 3 : 4 : 5의 비율로 편성－분대인원이 7명이하인 경우 화생방반으로 편성

○ 1개 화생방소대(중대)는 3개 분대(소대)규모로 편성하되 1, 2, 3, 분대(소대)로 편성하거나 통제, 탐측, 제독등 기능별로 편성

(3) 編成對象 資源管理

○ 화생방분대원은 화생방관련 기술, 기능소지자 군화학병과 또는 관련학과 출신자를 최대 발굴 우선 편성하여 요원을 정예화

- 기술지원대의 경우 읍・면・동장 또는 직장민방위대장으로 부터 관련분야 기술, 기능소지자 및 유경력자를 추천받아 전대원을 자격소지자로 편성하여 전문성 제고
- 통・리 및 직장민방위대의 경우 자체대원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편성

○ 화생방분대 편성자원이 전출시는 주민등록표의 "민방위란"에 화생방분대 편성 및 교육이수현황을 기록하고 전입지에서는 화생방분대원으로 재편성하여 요원을 정예화

나. 行政機關 化生放 防護機能 强化

(1) 關聯 中央部處

○ 화생방 방호기능에 따라 소관 부처별로 자체계획수립 추진

- 화생방방호(주민보호대책 분야)－내무부
- 생물학전 방호 －보건복지부
- 방사능전 방호 －과학기술처

○ 기타 관련부처의 협조지원을 받아 화생방방호 기능을 강화

- 유독가스탐지, 방사능 오염측정 지원(환경부, 과기처)
- 화생방 오염환자 치료 및 수용대책(보건복지부)
- 화생방 방호장비, 물자보급 지원(통상산업부, 보건복지부)
- 화생방 재난발새시 사태수습 지원(국방부)

(2) 地方自治團體

○ 대도시와 화학공단 소재지 인접지역 등 재난취약지역에 화생방 방호조직 및 인력을 우선보강

○ 화생방전문요원이 미배치된 시군 출장소는 가급적 화생방분야 유경력자를 화생방업무 담당자로 배치

(3) 協助體制 維持

○ 지역군부대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화생방업무 전반에 대하여 전문지식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체제유지

○ 지방자치단체의 방호기능을 관련부서별로 분담하여 추진하되 유사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한 지원협조체제 강화

- 보건연구원 및 보건소 : 오염환자치료 및 전염병 예방수습
- 소방관서 : 오염지역제독 및 긴급 구조·구급
- 경찰관서 : 화생방 오염지역 주민통제 등

○ 기타 화생방 업무관련 유관기관과 지원협조체제 강화

다. 化生放業務 擔當公務員 實務能力 提高

(1) 化生放 專擔公務員 研鑽會 開催

○ 목　　적

- 민방위 화생방담당 공무원의 연구연찬을 통한 화생방업무발전과 시책개발 도모
- 국방부, 과기처, 가스안전공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화생방방호에 대한 새로운 교리를 제공받아 담당공무원에게 파급

○ 추진계획

- 시　　기 : '97. 5월경(2일간)
- 장　　소 : 별도결정
- 참석범위 : 79명(시도, 시군구 화생방업무담당자 74, 내무부 3, 민방위교육관 2)
- 행사내용 : 연구과제발표, 초빙강의, 간담회, 수범사례 발표
- 결과조치 : 민방위 화생방시책에 반영

(2) 原電·化學工團地域 實務討論會 開催

○ 개　　요

- 원전, 화학공단 소재지 시군을 대상으로 화생방방재대책 추진상황 실무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

○ 추진계획

- 시　　기 : '97. 11월중
- 장　　소 : 별도결정
- 참석범위 : 원전·화학공단소재 시도, 시군 화생방요원
- 내　　용 : 화생방 재난 방재대책 토의, 문제점 개선

(3) 化生放災難 豫防 및 住民保護對策 册子発刊

○ 개　　요

- 방사능, 유독가스누출사고 등 화생방관련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시 수습요령에 대한 책자를 발간, 시·군에 배포하여 화생방 재난 방재능력을 제고

○ 추진계획

- 제작기간 : '97. 4월중
- 제작부수 : 300부
- 배포기관 : 도, 시군 출장소

(4) 化生放 時事資料集 発刊

○ 개　　요

- 화생방과 관련하여 각종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여 책자를 발간 일선에 배포, 화생방교육 및 홍보용으로 활용

○ 추진계획

- 제작기간 : '97. 8월중
- 제작부수 : 300부
- 배포기관 : 도, 시군출장소

7－2 化生放 防護裝備·物資普及 및 效率的 管理

가. 化生放裝備, 物資普及 3次5個年 計劃

(1) 槪　　要

화생방전에 대비하고 유독가스 취급시설등에서의 누출사고 등 화생방 재난발생에 대처하기 위하여

- 1차 5개년 보급계획('86~'90)으로 정부기관과 방위산업체 등 주요 직장민방위대에 화생방장비 물자를 보급
- 2차5개년 보급계획('92~'96)으로 화학공단등 화생방재난취약지 지역민방위대를 대상으로 보급

'96까지 2차보급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97부터 3차보급계획 추진

① 화학공단지역 민방위대용 방호장비 확대 보급

② 기존에 보급된 장비중 시효경과로 성능이 저하된 장비교체

(2) 細部推進計劃

○ 추진기간 : ;97~2001(5개년계획)

○ 보급대상

- 화학공단 주변지역, 도시지역 민방위대
- 1, 2차 보급된 장비중 시효경과품 보유 민방위대

○ 보급 목표량

- 방독면 : 4,655개
  - 화학공단 2,705개, 도시지역 1,950개
- 분대장비 : 408조(도시지역 화생방분대 보급)

• 시효경과품교체(기술지원대 및 지역민방위대 장비)

- 정화통 2,705개
- 해독제 810키트
- 제독제 540키트
- 탐지지 90개

나. '97 化生放 防護裝備 普及

(1) 地域民防衛隊

○ 지역민방위대 장비보급은 년차계획에 의거('97~2001)추진

• 화학공단지역 민방위대와 도시지역의 취약지 민방위대의 사태 수습 활동을 위한 방독면 및 분대장비 보급

• 지역민방위대 기술지원대에 보급된 장비중 시효기간(5~10년)이 경과되어 성능이 저하된 제품에 대해 년차적으로 교체

○ 보급대상별 '97 보급계획량

장 비 명	계	화학공단 지역민방위대	도시지역취약지 민 방 위 대	시효경과품 교 체
방 독 면 (개)	931	541	390	
분대장비 (조)	81		81	
정 화 통 (개)	541			541
해 독 제 (킷)	162			162
제 독 제 (킷)	108			108
탐 지 지 (개)	18			18

• '97 시군별 보급계획량 : 별첨 1참조

• 보급기준 : 별첨 2 참조

(2) 技術支援隊

○ 기술지원대용 화생방 방호장비를 보급기준에 의거 최우선 확보

○ 유사시 유독가스시설 인근지역 주민보호를 위해 유독가스 탐지기 등을 확보

• 유독가스 취급시설지역 시군당 유독가스탐지기 1대

(3) 職場民防衛隊

○ 기보급 장비중 내구년한 경과 또는 훼손등으로 교체보급이 필요한 추가 소요장비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하여 조치토록 행정지도

○ 신규편성된 직장민방위대는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되 대원규모와 여건에 따라 년차 계획으로 추진

○ 직장대장 교육시 화생방 장비 보급,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관심도 제고 및 보급 촉진

(4) 政府機關(国家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

○ 각급 정부기관은 방독면 소요량(정원1인당 1개)이 전량 확보될 수 있도록 기관별 자체계획에 의거 보급

○ 경찰, 소방은 자체 임무고려 적정 화생방 방호장비 확보

(5) 毒가스테러 脆弱施設의 防護裝備 普及

○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자체계획에 의거 방독면, 해독제, 제독제등을 확보 비치

○ 확보기준은 별첨기준을 참고하여 적정보급

(6) 一般住民

○ 민방위교육훈련을 통하여 방독면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계도하고 자율확보토록 권장

○ 화학공단지역은 업체별 유해물질 생산량에 따라 일정비율을 부

담토록하여 년차계획에 의거 주민보호용 방호장비 보급

○ 유독가스업주변 주민보호용 방호장비는 가스종류에 따라 방호가 가능한 적정 방독면 선정보급

○ 일반주민이 구입시 읍면동을 통한 구매제도 홍보 및 도단위로 1개소이상 판매소를 설치 구입편의 제공

○ 공직자, 사회저명인사 가족등에 대한 보급권장 및 각종 시상시에 부상으로 방독면을 수여하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

(7) 化生放 裝備·物資 普及 豫算 確保

○ 제1~2차 화생방 장비 물자보급 5개년 계획에 따른 미확보된 량은 조기예산 확보후 조치

○ 제3차 화생방 장비·물자 보급 5개년 계획중 보급 소요예산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년차별 구분없이 가능한 조기 보급('97)마무리

(8) 普及實績把握 및 現況維持

○ 시군·출장소는 관내 보급대상별 확보현황을 반기별 파악관리

○ 반기(6, 12월)말 기준 장비확보현황을 익월 5일한 파악보고

다. 代替裝備物資 普及

(1) 確保 및 活用

○ 기본방호장비가 없는 민방위대원 및 일반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체장비물자 확보 및 활용요령 홍보

○ 화생방재난시 긴급대체활용이 가능한 장비물자현황을 파악하여 유사시 즉각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

• 대체장비물자 : 산업용방독면, 일반우의, 고무장갑·장화, 카라민용액, 농업용분무기 등

(2) 代替裝備普及 및 弘報

○ 대　　상 : 민방위대원 및 주민

○ 보급장비 : 방독면비닐주머니, 비닐옷 등

○ 보급방법

- 시군출장소에서 규격품을 제작 민방위교육 강사, 시범훈련참가자 등에게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전대원에게 파급
- 취약지역 민방위대원은 시군출장소에서 민방위 교육훈련시 실습용으로 제작하여 제작요령 및 활용요령 계도

○ 홍　　보

- 일반대원 및 주민에게는 대체장비의 방호효과 및 제작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율확보토록 권장
- 매스컴, 유인물등을 이용 대체장비물자의 필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화생방재난 대비 인식의 생활화

라. 化生放裝備 · 物資 管理 및 性能維持

(1) 管保管理

○ 평시 화생방재난 우려가 많은 유독가스취급시설 주변지역등은 방독면을 사용자 가까이에 보관하여 유사시 즉각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지역은 장기간 보간관리를 위하여 보급당시의 포장된 상태로 집중 보관

○ 가급적 지상창고에 보관하고 지상창고의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지하창고에 보관시에는 환풍기시설을 갖추어 습기로 인한 장비훼손 방지

○ 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개를 포개쌓아 장

기간 경과할 경우 방독면의 형태가 찌그러지는 점에 유의

○ 비축중인 방독면정화통은 외부노출시 습기, 먼지에 의거 훼손되므로 밀봉된 포장을 개봉하지 말것

○ 박스단위로 쌓아둔 방독면은 분기 1회 상하로 치환작업 실시

(2) 點檢 및 整備

○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인 점검으로 상시가용상태 유지

○ 매분기 1회 장비별 점검표에 의거 관리기관 자체점검, 정비

○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 부품구입 교환, 수선 등 정비 실시

○ 자체정비가 곤란한것은 중앙단위 순회정비시 정비될 수 있도록 별도구분 관리

※ 전시, 평시를 막론하고 유독가스에 노출되어 오염된 방독면의 안면부는 세척을 철저히 하고 정화통은 지하에 매몰처리

• 화생방방비·물자 보관·관리 및 점검·정비등 상세한 내용은 화생방 업무편람(내무부 '96. 4월) 및 화생방장비, 물자보관 및 관리요령(충청남도, '97. 2월) 책자참조.

(3) 使用時期

○ 화생방 장비물자는 관리책임자 통제하에 사용

○ 평시사용

• 화생방재난발생시

• 민방위 교육훈련시(교육훈련용장비 사용)

• 각종 산업활동에 보호가능한 유독물질취급시

○ 전　　시

• 충무2종사태시 개인별로 지급

– 방독면은 개인지급

– 분대장비는 화생방분대 단위로 지급

(4) 化生放裝備·物資 性能檢査

○ 목적 : 각급민방위대에 보급된 화생방장비, 물자를 표본수집하여 성능검사후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강구

○ 시기 : '97. 7월중

○ 대상품목 : 방독면, 분대장비

○ 검사기관 : 육군31화학실험소, 삼공물산

(5) 化生放裝備 巡廻整備

○ 목적 : 각급민방위대에 보급된 방독면을 생산업체의 지원을 받아 순회정비를 실시하여 장비의 상시가용상태 유지

○ 시기 : 년1회(10월중)

○ 대상품목 : 방독면

○ 정비방법

- 일정별 도에서 정한장소에서 실시
- 기술검사후 정비가능 품목은 현장에서 정비실시
- 정비와 병행하여 정화통 성능검사 실시

마. 裝備의 購入節次

(1) 政府機關 및 政府投資機關

○ 저장품의 경우

- 조달청이나 조달지청을 통하여 구입

○ 비 저장품의 경우

- 시중 민방위장비 판매소를 통하여 구입

(2) 一般住民 및 職場民放衛隊

○ 각 지역별 민방위장비 판매소에서 구입

○ 구입량이 많을 경우 시군 출장소에 협의 조달구입 가능

(3) 民放衛裝備 購入處 및 品目

○ KS규격품을 구입하고 특히 유사품, 비규격품, 시효기간 경과품, 군부대 유출품 등의 제품구입 금지

바. 非常待避施設의 化生放防護機能 補強

(1) 国家保安目標등 主要施設

○ 기존 일반대피시설을 전시에도 계속 사용하는 경우 화생방 방호가 가능하도록 가스여과기설치 또는 출입문 완전밀폐 대책강구

○ 충무시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화생방방호가 가능하도록 기능보강－관련 실과에 협조추진

• '97년은 시설보유 기관별 자체점검을 통하여 보강계획 수립

○ 신축 공공대피시설은 화생방방호가 가능하도록 행정조치
('97 설치계획은 "민방위시설, 장비의 확충보강지침" 참조)

○ 화생방방호시설이 없는 일반건물의 경우 지상건물 1개층 (최소 3층이상)을 지정하여 유사시 이용할 수 있도록 외부와 밀폐대책 강구

○ 화생방방호시설 표준설계 및 감리감독은 국방부 등 전문기관과 협의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강구

(2) 一般待避施設

○ 각종 대규모시설물 신축시 지하시설을 화생방방호가 가능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 행정지도

○ 기존대피시설, 소규모건물 및 주택은 유사시 화생방방호시설로 응급 활용하는 방법을 평시 각종교육을 통하여 홍보 계도

※ 한국과학기술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에 문의, 공인된 가스입자여과기를 구입 설치
(비공인된 제품의 경우 성능발휘 의문, A/S결여)

7－3 化生放教育訓練의 內實化

가. 化生放專門教育

(1) 民放衛實務者 課程

○ 대　　상 : 도, 시, 군, 출장소 6급이하 화생방담당공무원

○ 시　　기 : 5월

○ 기　　간 : 1주(비합숙)

○ 교육기관 : 민방위교육관

○ 교육중점

- 화생방 담당 공무원으로서 직무수행 능력함양과 전문성제고
- 민방위기능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행정실무능력 향상

(2) 機動隊長課程

○ 대　　상 : 화생방 기동대장

○ 시　　기 : 9월

○ 기　　간 : 3일 (합숙)

○ 교육기관 : 민방위교육관

○ 교육중점

- 화생방 기동대장의 임무숙지 및 전문기술향상
- 지역단위 민방위사태의 예방 및 유사시 초동대처 수습능력 향상

(3) 有毒物質 管理者 教育

○ 대　　상 : 화학공단지역 화생방 실무공무원

○ 시　　기 : 12월

○ 기　　간 : 1주(1개기)

○ 교육기관 : 환경부 공무원교육원

○ 교육중점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안전관리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수습조치

(4) 化生放分隊員 敎育

○ 대　　상 : 화생방분대원(기술지원대, 지역·직장민방위대)

○ 주　　관 : 도지사 책임하 실시

○ 교육시간 : 1회 8시간

○ 교육방법 : 강의, 시청각(VTR) 및 실기실습

○ 교과목운영

- 소양교육 : 2시간("민방위교육지침" 참조)
- 화생방전문교육 : 6시간

과　　목	시　간	비　고
화생방 개요	1	
화생방방호장비 사용요령	1	지역실정 감안
화생방 응급치료 및 제독	1	적정 조정 실시
화생방재난대비(지역특성)	3	

※ 지역별 특성과목

- 유독가스업체주변지역－유독가스누출사고대비
- 농촌지역－농약중독 사고방지
- 도시지역－각종 위해가스 누출사고대비

○ 학급반편성

- 일반대원과 구분하여 별도학급 편성 교육실시

• 가급적 100~200명 수준으로 실기실습이 가능 하도록 편성

○ 교관운영

• 교육강사는 화생방전담요원, 군부대, 관계전문가, 위촉강사등 다양하게 편성 운영

• 사전 교육내용 통보로 충분한 연구 및 관련자료준비

• 전문기관 강사초빙 및 관련 교육자료 활용

– 가스안전공사 : 유독가스방재

○ 실습장비 및 교재활용

• 화생방교재는 1인당 1권씩 배부

• 교재내용은 당해년도 교과목 위주로하되 도에서 교과내용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

• 교재내용을 기본교육내용과 실생활에 유익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 대원에게 흥미를 유발토록 제작

• 실기·실습용 장비는 시군 교육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

• 시청각교재는 기 보급교재 또는 가급적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최신제작품 활용

※ 지역군부대 화생방실습장을 민방위 화생방분대원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또는 군부대 위탁교육 실시

(6) 各級機關 自體敎育

○ 실시기관 : 각급 교육기관(학교, 공무원교육, 직능단체교육)

○ 방　　법 : 교육과정의 공통과목으로 편성 또는 민방위의 날 훈련 활용

○ 내　　용

• 화생방전대비 필요성 및 방호행동요령

• 화생방 개인방호장비 사용법

○ 교　　재

• 화생방 시청각교재

• 기본공통과목 교재편집시 화생방방호내용 포함

나. 化生放 防護訓練

(1) 災難 脆弱地域 防災訓練

○ 대　　상 : 직장민방위대, 화생방취약지역 민방위대

○ 시　　기 : 민방위의 날 훈련시

○ 방　　법 : 지역내 가용자원 합동참여 실제훈련 실시

○ 참가기관 : 민방위대, 인근주민, 경찰, 소방, 의료기관, 군부대 등

○ 훈련중점

• 화생방경보전파 및 개인보호

• 화학작용제 탐지식별 및 오염지역 표시

• 오염지역 주민 및 차량통제

• 오염환자 치료 및 사상자 처리

• 오염지역 및 시설·장비 제독

※ 훈련종료후 장비사용법 소개 및 대체장비물자 활용요령 홍보

7－4 化生放災難 防災對策 强化

가. 部處別 關聯法 및 業務分野

부 처 별	관 련 법	분 야
내 무 부	민방위기본법 (제10조, 동시행령 제11조) 재난관리법 (제11, 20, 22조)	· 주민보호차원의 예방, 통제, 보호조치 · 재난의 예방, 수습, 긴급 구조구난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 환 경 부	원자력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관련시설 내부안전관리 · 인 · 허가, 유통, 취급관리등 ·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

나. 平時 災難豫防活動 强化

(1) 危險要素에 대한 重點 安全管理

○ 위해업체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관리카드 작성비치 (업소, 도, 시 · 군)

- 위해업체 : 유독가스 취급시설
- 지정대상 : 사고발생시 주민피해 예상인원 100명이상인 업소

○ 관리담당책임자를 지정, 주기적인 안전예방활동 강화

- 점검주기 : 분기1회
- 내　　용 : 위해시설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지도

(2) 多衆利用施設에서의 毒가스事故 對備

○ 역, 터미널, 항만, 백화점, 극장 등 시설근무자에 대한 사고발생시 조치요령 교육

○ 사고발생시 이용객 안전, 대피유도를 위한 방송문안 준비

○ 시설별 자체방호장비 및 물자준비(보급기준 : 별첨3)

• 직원수 고려 방독면 확보, 시설단위로 해독제·제독제 비치

(3) 危險施設 周邊地域 住民防護力量 强化

○ 취약요소별(유독가스 종류별) 방호장비·물자보급

○ 주민에 대한 방호행동요령 교육, 유인물·책자 배포

○ 사태발생시 주민긴급대피 및 행동요령 계도를 위한 준비

• 주민대피 등 계도용 경보망 보강(중점관리대상지역)

• 방송문안 비치, 방송요원 사전 지정

(4) 化生放災難 發生時 行動要領 弘報

〈民放衛의 날 訓練時〉

○ 방 법 : 대담방송 및 훈련현지 실황방송

○ 내 용

• 대담방송시

– 화생방재난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 화생방재난 발생시 행동요령

– 방호장비, 물자 확보 계도

• 현지 훈련실황 방송시

– 화생방 경보전파와 대피행동요령

– 오염환자 치료 및 제독요령 등

〈各種 言論媒體를 통한 啓導〉

○ 각종 홍보매체 활용

• TV, 라디오, 신문, 반상회보등 대중홍보매체 이용

• 화생방 재난대비의 필요성 및 유사시 방호행동요령 등

○ 유선방송 활용

• 대 상 : 관내 유선방송업체

• 시 기 : 민방위의 날 훈련시간중

• 방 법 : 도, 시군에서 화생방관련 VTR 자료제공

〈多衆集合場所에서의 弘報〉

○ 방 법 : 버스터미널, 역대합실 등에서 화생방관련 VTR방영

○ 시 기 : 민방위의 날 훈련 또는 적정시기 선정

〈各種 弘報物 製作·配布〉

○ 종 류 : 팜프렛, 리후렛 등

○ 방 법 : 도, 시군, 출장소 단위로 1종이상 제작

○ 수록내용

• 화생방전시 국민행동요령(공통)

• 유독가스누출사고시 대처요령(화학공단지역)

다. 事態收拾能力 强化

(1) 地域單位 應急防災體制 構築

○ 재난사고시 신속한 신고체제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인근주민, 위험물 취급업소, 민방위대원에게 사고발생 신고요령 교육
- 위험물취급업소, 가스안전공사, 군부대, 소방, 경찰 등과 상호 비상연락체제 구축

○ 재난 유형별로 유관기관의 지원협조사항을 사전 임무고지

○ 유사시 지역내 유관기관 긴급동원체제 구축

- 민방위대 보유장비의 즉각 활용태세 유지
- 군부대, 관련업소, 유관기관의 가용장비·물자 사전파악 관리

(2) 地域別 災難類型別로 구분 實效性있는 防災計劃樹立

○ 행정기관, 유관기관, 관련업소 방재계획을 상호 연계성있게 보완

○ 사태단계별, 규모별 구체적 주민보호대책을 수립 실효성 제고

○ 재난유형별 가상시나리오 작성, 유관기관 합동방재훈련 실시

〈별첨 1〉

化生放裝備 普及計劃

○ 총 괄 ('97~2001)

구분 / 시·군별	방독면 (개)	분대장비 (조)	정화통 (개)	해독제 (키트)	제독제 (키트)	탐지지 (개)
계	4,655	408	2,705	810	540	90
천 안 시	660	106	445	138	93	17
공 주 시	251	60	225	75	50	9
보 령 시	556	52	309	59	38	6
아 산 시	798	65	195	53	34	6
서 산 시	809	52	413	58	38	6
논 산 시	597	73	230	70	47	8
계룡출장소	0					
금 산 군	0			39	26	5
연 기 군	109		212	51	34	6
부 여 군	18		149	47	32	6
서 천 군	28		87	39	26	4
청 양 군	28		36	26	18	3
홍 성 군	40		52	39	26	4
예 산 군	0		110	45	31	5
태 안 군	447		215	26	17	0
당 진 군	314		27	45	30	5

○ '97 보급계획

구분 / 시·군별	보급계획량						예산소요 (천원)
	방독면 (개)	분대장비 (조)	정화통 (개)	해독제 (킷)	제독제 (킷)	탐지지 (개)	
계	931	81	541	162	108	18	45,614
천안시	139	21	60	28	18		9,777
공주시	57	12	45	15	10		5,304
보령시	111	10	62	12	8		5,424
아산시	160	13	39	10	7		7,009
서산시	162	11	83	11	8		6,572
논산시	119	14	46	14	9		6,852
계룡출장소							0
금산군				8	6		116
연기군	22		42	10	7		643
부여군			29	9	6		258
서천군			43	7	5	4	323
청양군	8			6	3		195
홍성군				8	5	4	141
예산군			22	9	6	5	263
태안군	90		43	6	4		1,556
당진군	63		27	9	6	5	1,181

※ 방독면(14,200원), 분대장비(340,000원), 정화통(4,500원), 해독제(11,330원), 제독제(4,190원), 탐지지(7,300원) 기준

〈별첨 2〉

化生放裝備 普及對象 및 基準

○ 방독면 보급대상

종 류	보 급 대 상
일반방독면	○ 일반민방위대원 ┐ ○ 전국민 ┘ 보급권장 ○ 화생방분대원 ○ 취약지역 민방위대원
K-1 방 독 면	○ 민방위대 간부요원 ○ 화생방분대장 이상 ○ 기타 사태수습 지휘요원

○ 분대장비 1조의 품목별 보급기준(1개 분대 기준)

구분 / 품목	일반지역	취약지역	기술지원대	비 고
분대장비 계	34 점	58 점	73 점	
보호의 세트	12	12	12	하의는 바지로 된 것 일반우의로 대체가능
탐지장비 탐지키트			1	KM 256
탐지장비 탐 지 지	1	1		KM 9
해 독 제	3	9	12	MK-1
피부제독제	3	6	12	KM 258 A1
오염표지판	3	6	12	
휴대용제독기	2	4	4	일반분무기로 대체시 휴대용제독기 2대당 1대
DS_2 용액	10	20	20	

- 취약지역 : 유독가스시설 주변지역, 다중이용시설
- 일반지역 : 취약지역 이외의 기타지역

* 유독가스 탐지기 : 화학공단소재 시군당 2개

〈별첨 3〉

多衆利用施設의 化生放裝備 普及基準

품 명		보 급 기 준
방독면	일 반	• 1일 동시 근무인원당 1개
	K － 1	• 간부요원당 1개
분대장비	보 호 의	• 1일 동시 근무인원당 1벌
	해 독 제	• 규모에 따라 10～30세트
	제 독 제	〃
	오염물수거용 비 닐 봉 지	• 20개
	휴대용제독기 또는분무기	• 2대
	DS_2 제 독 제	• 10～20통
	오 염 표 지 판	• 6조

8. 人力動員 態勢의 强化

8－1 人力資源의 完璧한 管理

8－2 人力動員計劃의 合理的 樹立

8－3 人力動員訓練의 內實化 推進

8－4 人力動員業務 推進力 補强

생활 속의 민방위
재난없는 우리마을

8. 人力動員 態勢의 强化

8－1 人力資源의 完璧한 管理

〔方　　針〕

○ 산업사회 여건 변화추세에 부합하는 관리직종의 조정

○ 인력동원대상 자원의 정확한 조사·관리방안 강구

〔推進計劃〕

가. 管理對象 人力資源 職種의 整備

(1) 整備對象 : 제2종자원(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

(2) 整備內容 : 유사·쇠퇴 직종의 통폐·합, 신규 필요직종의 추가, 기술등급·종목의 단일화 등

(3) 整備方法 : 관계법령 정비결과 조정·보완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노동부 소관)

○ 내무부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시행규칙(내무부령) 개정

(4) 整備時期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완료시 "내무부령" 개정 추진

나. 人力動員資源의 一齊調査

(1) 調査期間 : '97. 7. 1 ~ 7. 31 (1개월간)

(2) 調査對象 : 제2종사원(158개 직종, 440개 자격·면허)

(3) 調査方法 : 전수조사(서면 및 현지조사 병행)

(4) 調査節次

① 자원조사 : 조사서 작성→서면 및 현지조사→관리대상자 결정

② 연명부작성 : 직종별 연명부 작성→지정순위 결정→결과보고

※ '97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 지침 : '97. 6월초 별도 시달

다. 人力動員資源의 效率的 管理

(1) 資源管理臺帳 등 整備徹底

(가) 對象 資源

○ 자격·면허 발급기관에서 통보한 자

○ 전출·입자

○ 신분 변동자(자격·면허 상실·중지자, 면제·보류자) 등

(나) 整理對象 帳標등

○ 전산관리대상 : 인력자원연명부, 자격·면허통보사항접수대장
인력자원 결산대장

○ 장표관리대상 : 중점관리대상인력관리대장, 과학기술자관리대장, 인력동원영장등관리부

○ 전산 및 장표 동시 관리대상 : 개인별 주민등록표(인력동원란)

(다) 推進事項

○ 인력동원자원 관리부 및 대장등 기록유지 철저

○ 중점관리대상 인력자원의 관리철저

• 중점관리대상자 지정시 지정원칙 준수

• 변동자원의 신속한 정리 및 대체보충 확행

– 지정내용 통보, 신분변동시 대체자원 보충

– 희귀직종 관리대상 확보대책 강구 등

(라) 推進時期 : 수시(관리대상 인력자원 변동사항 발생 즉시)

(2) 人力資源의 決算 確行

(가) 對象資源

○ 전출·입자, 자격·면허발급기관에서 통보한 자

○ 중점관리대상업체 종사자

○ 제2국민역 편입자와 병역의무 면제자, 61세되는 자 등

(나) 資源 決算 및 整備期間 設定·運營

○ 「자원결산의 날」 지정·운영

구 분	주 관	시 기	방 법
자원결산의 날	읍·면·동	매주 금요일	·주간 자원변동상황 파악 ·자원결산후 각종 공부정리등
중점관리대상자 확인의날	시·군	매월 마지막 금요일	·전출입자, 신분 변동자 정리 및 자원 보충 ·부족자원 대체보충 실시등

○ 자원 일제 정비기간 설정·운영

- 추진사항 : 자치단체별 자체계획 수립 시행
- 추진시기 : 2회(상반기 : 시·군 주관, 하반기 : 도주관)

(3) 重點管理對象業體의 人力管理 能力 提高(主管 : 市·郡)

(가) 人力現況表 提出 指導

○ 추진사항 : 현황표 작성 안내문 발송, 인력관리요령교육등

○ 추진시기 : 년2회(상·하반기별 1회)

(나) 人力管理實態 確認 및 指導

○ 추진사항 : 연명부작성 및 관리실태, 관리대상인력통보 상황 등

○ 추진시기 : 반기 1회이상

8－2 人力動員計劃의 合理的 樹立

〔方　　針〕

○ 인력동원 자원의 소요판단 및 배분의 합리성 추구

○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인력동원제도의 개선·보완

○ 각급 인력동원계획(안)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推進計劃〕

가. 人力資源 所要判斷 및 配分原則 遵守

(1) 人力所要判斷

○ 소요는 평시 고용인력으로 전시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의 부족 인력에 한하여 판단

○ 사용기관별, 직종별, 단계별로 구분 판단

(2) 人力配分原則

○ 인력배분은 도내 자체자원중에서 동일직종으로 우선 배분

○ 배분자원부족시 도내 자체자원중 임무수행이 가능한 유사 직종으로 배분

○ 도내 자체자원 부족시 "대도시권역" 내 동일직종으로 배분

〈대도시권역 설정 내역〉

- 서울권－서울, 인천, 경기, 강원
- 부산권－부산, 경남
- 대구권－대구, 경북
- 광주권－광주, 전북, 전남
- 대전권－대전, 충북, 충남
- 단독권역－제주

※ 보류자 추가 책정·관리대상 : 기혼여성(20～55세),
고령자(56세이상 남·여)

(3) 時期 및 節次

○ 군·관수('97. 8) : 인력 소요부처 → 내무부(시·도 사전협의)

○ 민　　수('97. 8) : 중점관리대상업체 → 도(시·군 경유)

나. '98人力動員計劃의 改善·補完

(1) 計劃의 種類

소 관 별	계획의 종류	수 립 시 기
· 내 무 부	집 행 계 획	'97. 9. 30
· 도	시 행 계 획	'97. 10. 30
· 시·군	실 시 계 획	'97. 11. 30

(2) 補完對象

○ 인력동원 관련 상·하위계획간 또는 다른 계획과의 연계성이 미흡한 부분

○ 현행 인력동원계획 내용중 유사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부분

○ 구체적인 실천계획 수립이 필요한 부분 등

(3) 補完方法別 推進事項

(가) 人力動員關係法令 整備時 變更內容 補完(內務部)

○ 통합법안 제정(비상대비자원관리법＋전시자원동원에관한법률안)

○ 내무부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시행규칙 개정

(나) 人力動員 實際訓練時 導出된 問題點 改善·補完(共通)

○ 소집·점검훈련(7개시·도) : '97정부을지연습기간중

○ 실제훈련(8개시·도) : '97. 10월중

(다) 各級人力動員計劃(案) 審査承認時 導出된 問題點 是正 指導

○ 내무부 : 시·도 시행계획(안) — '97. 11월중

○ 도 : 시·군 실시계획(안) — '97. 12월중

8－3 人力動員訓練의 內實化 推進

〔方　　針〕

○ '97 인력동원계획의 실효성 점검
○ 훈련시 도출된 문제점은 차기계획에 개선 반영
○ 시·도간 교체평가 실시 및 강평회 개최

〔推進計劃〕

가. '97人力動員訓練 槪要

(1) 召集·點檢 訓練
○ 시　　기 : '97정부을지연습기간중
○ 지　　역 : 16개 시·군·출장소
○ 인　　원 : 100명
○ 실시요령 : 시·군·출장소 단위로 소집·점검, 의무고지 및 교육 실시

(2) 實際訓練
○ 시　　기 : '97. 10월경
○ 지　　역 : 8개시·도(부산, 대구, 인천, 광주, 충북, 전남, 경북, 경남)
○ 인　　원 : 1,980명
○ 실시요령 : 사용기관에 응소, 임무고지 및 실기실습교육 등

나. 人力動員訓練 評價班 編成·運營

○ 평가반 구성 : 훈련 미실시 시·도 공무원(시·도별 2명)
○ 평가반 운영 : 시·도별 훈련상황 현지점검 및 강평회 개최
○ 평가결과조치 : '98인력동원계획에 반영, 시·도별 시정·보완사항 시달

8－4 人力動員業務 推進力 補強

〔方　　針〕

○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력 제고를 위한 각종 연찬기회의 부여
○ 인력자원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 해설집 제작·배포
○ 업무의 능률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조 강화

〔推進計劃〕

가. 人力動員業務 擔當公務員 敎育實施

(1) 內務部 主管 敎育

○ 시　　기 : '97. 2 ～3월경(1박2일 정도)
○ 참석대상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
○ 교육방법 : 시·도별 순회집합교육
○ 교육내용
  • 인력동원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교육
  • 연구과제 발표회 개최(시·도당 5명정도)
○ 우수과제에 대한 조치
  • 우수발표자에 대한 시상, 전방시찰 기회 부여
  • 우수연구과제는 시책자료로 활용 등

(2) 道 主管 敎育

○ 시　　기 : '97하반기중
○ 참석대상 : 시·군 및 읍·면·동 신규담당공무원 중심
○ 교육내용 : 자원관리 및 충무계획수립 요령 등

나.「人力動員 業務便覽」 発刊

○ 주　　관 : 내무부
○ 시　　기 : '97. 10월경(인력동원 관계법령 제정완료시)
○ 발간부수 : 4,200부 정도(각급기관당 1부)
○ 수록내용 : 인력동원 관계법령 및 기타 관련제도 전반
○ 배 부 처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

다. 有關機關과의 協調體制 構築

○ 주　　관 : 시장·군수
○ 시　　기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 대　　상 : 중점관리대상업체 및 사용기관 관계자 등
○ 주요 행사내용

〈간담회 개최〉

- 인력동원업무 소개 및 관련정보의 교환
- 기관간 협조사항 및 문제점 토의 등

〈업무추진요령 교육실시〉

- 인력현황표 작성 및 보고요령
- 소요인력 판단 및 인력 변동사항 통보 절차
-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

라. 人力動員業務 推進實態 指導點檢 實施

○　도　: 분기별 1회, 시·군당 5개 읍·면·동이상 순회지도
○ 시·군 : 반기별 1회, 지도대상 읍·면·동수는 시·군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의 책정

'97 민방위업무추진지침

1997년 1월 일 발행

발 행 : 충 청 남 도

편 집 : 민방위재난관리국
민방위비상대책과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287
(042) 220－3811

CHUNG CHEONG NAM – DO
AM006887